
대학안전관리계획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박현주(동국대학교)

2024.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rehensive School-Safety

목 차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및 계획

II. 2024년 대학별 대학안전관리계획 실태 분석

1.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 실태 분석
 - (1)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 (2) 안전사고(대학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연구실사고)
 - (3) 감염병 확산
 - (4) 범죄(일반범죄, 성범죄)
 - (5) 산업재해
 - (6) 중대재해 및 비상사태
 - (7) 기타
 - (8) 요약 및 정리
2.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부분 실태 분석
 - (1) 재난안전훈련
 -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4) 연구실 안전 교육
 - (5) 감염병 예방 교육
 - (6) 성범죄 예방 교육
 - (7) 비상대비 교육 훈련
 - (8) 기타
 - (9) 요약 및 정리

목 차

Ⅲ. 안전관리계획 작성 실무자 심층면담 분석

1. 수도권 사립 A대 담당자 심층 면담 분석
2. 수도권 사립 B대 담당자 심층 면담 분석
3. 지역 국립 C대 담당자 심층 면담 분석

Ⅳ. 해외 주요 국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사례 분석

1. 일본 사례 분석
2. 미국 사례 분석
3. 독일 사례 분석

Ⅴ.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 방안

1. 'Ⅱ.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 내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 조정
2. 'Ⅱ.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 내 세부 항목 예시 서식 및 내용 변경
3.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부분 수정

Ⅵ. 개선방안을 반영한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고등교육법을 개정(20. 12. 개정, 21. 6. 시행)하여, 각 대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각 대학은 2022년부터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등에 대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교육부는 각 대학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각 대학이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그 간의 안전관리계획은 전년도 계획을 답습하는 등 형식적 수립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3년간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실태 및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필요.

2. 연구의 주요내용

- 3년간의(2022년~2024년) 대학별 안전관리계획 실태 분석(문제점, 성과 등)
- 해외 주요 국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사례 분석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방안
 -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 방식(표준안, 체크리스트 등)
 - 필요시 법령 개정사항 포함
- 개선방안을 반영한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마련

3. 연구방법

(1)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실태 분석

○ 연구 대상: 전국 각 권역별 국·공립대 및 사립대 1개씩 선정

- 국·공립대: 서울시립대(수도권), 강릉원주대(강원권), 충남대(충청권), 경북대(경상권), 전북대(전라권)

- 사립대: 동국대(수도권), 연세대 미래캠퍼스(강원권), 한남대(충청권), 경남대(경상권), 조선대(전라권)

○ 연구 방법: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안전관리 예시(안)을 토대로, 각 대학에서 게시한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실태를 재난 유형별로 분석

(2) 대학안전관리계획 담당자 심층 면담

○ 연구 대상: 수도권 사립대학 (A대, B대) 및 지역 국립대학 (C대)

○ 연구 방법: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각 대학별 대학안전관리계획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 실시

(3) 해외사례 연구

○ 연구 대상: 미국, 독일, 일본 사례

○ 연구 방법: 국가별 2~3개 대학 선정 후, 각 대학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사례 번역, 분석 및 국내 사례와의 비교 후 시사점 도출

II. 2024년 대학별 대학안전관리계획 실태 분석

1.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 실태 분석

(1)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1) 사례 1: 지역 사립 H대

1 자연재난, 사회재난

1. 주관부서

담당 부서	담당 업무	비고
총무인사팀	1. 교직원 재난안전교육 실시 2. 재난 상황 전파(교내 전구성원) 3. 종합안전사고 상황실 기능 수행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팀 구매관제팀	1. 재난취약지구 예방활동 및 보수 2. 사고 현장 통제 및 복구 지원	
학생복지팀 국제교류팀	1. 학생, 유학생 재난관련 상황 전파 2. 재난안전교육 실시 3. 학사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협조부서

2.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계절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 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건물 붕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급수 및 가스공급 중단
- 화재·폭발**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3. 예방·대응 계획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및 시설, 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4. 대응 매뉴얼(자연재난)

사고발생		1. 자연 재난 발생 (태풍, 호우, 대설, 지진) 2. 교내 신고 전화 및 재난방송, 재난 안전문자 수신	
단계	구분	담당부서	대응 방법
사고 발생 단계	사고상황 전파	총무인사팀	1. 종합안전사고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망 가동) 2. 사고 상황 전파 및 보고 3. 유관 기관 보고(교육부)
		총무인사팀	1. 재난현장 부서별 인력 지원 지시 2. 유관 기관 협조 요청(소방서, 경찰서)
		시설안전관리팀	1. 사고 현장 통제 실시 2. 인원 대피 및 구조 활동 실시 3. 재난 확대 방지 조치 실시 - 태풍 : 나뭇가지 및 붕괴, 낙하물 위험지역 통제 - 호우 : 침수 지역 통제 및 배수로 정비 - 대설 : 차량 주 통행로 재설 작업 - 지진 : 학교 구성원 비상 대피 집결지 이동 지원
사고 대응 단계	대응	학생복지팀 국제교류팀	1. 학생 재난 관련 문자 발송 (행동요령 안내) 2. 학생 구호 활동 실시 3. 피해자 응급조치 실시 및 병원 후송업무 지원
		시설안전관리팀	1. 재난 피해 지역 복구 실시 2. 각 건물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 3. 사고 피해액 산정(시설) 4. 추후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 방안 대책 마련
		구매관제팀	1. 사고 피해액 조사 (집기,비품) 2. 시설 복구 지원
사고 수습 단계	복구 및 예방	학생복지팀 국제교류팀	1. 피해 학생 관리 및 지원 2. 재난 및 시설복구로 인한 학생의 수업권 확보

-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안전관리 예시(안)에 따르면, 대학안전관리계획은 각 재난유형별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피해현황’, ‘원인분석’,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지역 사립 H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유형별로 H대학의 ‘피해현황’, ‘원인분석’,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최근 H대에서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현황과 원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투자 현황 등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주관부서’ 및 ‘대응 매뉴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과 ‘예방·대응 계획’ 부분은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 예시(안) 과 동일함.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각각의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사례 2: 지역 국립 C대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 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원인분석 : 해당없음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해당없음(내진보강 사업 2019년 완료)

- 지역 국립 C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C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 H대와 달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음.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음.
 - 재난 피해 발생 이전에, 각 대학별 자체적인 예방활동 계획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은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 예시(안)과 동일함.

3) 사례 3: 지역 국립 J대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1	1	-	-	0.4
재산피해(백만원)	-	128	-	-	-	25.6
인명피 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화재·폭발)** 학교시설 화재 및 폭발의 대표적인 원인은 전기요인*이며 그 외 부주의로 인한 화재, 대학실험실 폭발 및 방화가 원인
* 단락, 누전, 합선, 과부하 등
- **(건물붕괴)** 노후화된 교육시설 및 지진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 존재
- **(미세먼지)** 학교시설에서 자체 배출하는 미세먼지 보다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및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 등 외부 요인이 다수
- **(방사능사고)** 피해발생 내역은 없으나, 방사선발생장치(실험)사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등의 원인으로 인적 사고 초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75개동 내진보강 추진, 54개동 치장벽돌 보강 공사 추진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방사능사고)** 방사선관리구역 관리 강화 및 방사성물질·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자에 대한 교육·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한 감시체계 확립

- 지역 국립 J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J대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건씩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하지만 재난 피해 원인 분석 부분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 현황과는 무관한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과 동일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음.
 - 어떠한 원인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도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 예시(안)과 동일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음.
 - 과거에 각각 어떠한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미 발생한 사회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일한 사회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각 대학에서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등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사례 4: 지역 국립 K대

□ 원인분석

○ (2020. 9. 3. 태풍) 시설과 현장조사 결과 및 조치

<p>태풍 이동경로</p>	<p>재난 현장 사진(인재원 인근 구룡포)</p>

- 04:00~ 10:00까지 대구·경북지방을 관통한 제9호태풍 마이삭(최대풍속 62m/s, 최대강수량 1,004mm)으로 인해 대구캠퍼스 경북 인재원에 지붕 파손, 누수 등의 피해를 입음
-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2021. 1. 한파) 시설과 현장조사 결과 및 조치

<p>물탱크 지시관 동파</p>	<p>옥상 홈스크러버 공급 급수배관 동파</p>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속된 한파로 인해 대구·경북 권역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시설중 일부가 동파 및 동파로 인한 천장 누수, 수전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음
- 한파상황 지속 시 건물관리기관에 사전점검 및 방한대책을 마련하도록 계획 수립

○ (2021. 7. 12. 강풍 및 집중호우) 시설과 현장조사 결과 및 조치



- 18:50 - 19:10 발생한 강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대구캠퍼스 일부 시설이 파손되고 학내 도로 일부가 침수되었음
-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2021. 8. 23. ~ 24. 태풍) 시설과 현장조사 결과 및 조치



- 2021.8.23.-8.24. 대구·경북지방을 관통한 제12호태풍 오미스(최대풍속 26m/s, 최대강수량 159mm)로 인해 대구캠퍼스, 포항인재원, 군위농장, 청송학술림에 토사유출, 시설물 파손, 천장 누수 등의 피해들 입음
-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1	3	-	-	0.8
재산피해(백만원)	-	81	97	-	-	35.6
인명피해 (명)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건축물 내진보강	5,118	-		5,118	시설과
건축물 적벽돌 보강	2,011	-		2,011	
안전인프라 구축	1,836	1,680	1,500	5,016	
계	8,965	1,680	1,500	12,145	

- 지역 국립 K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K대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총 4건 발생하였음.
- 사진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재난 피해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도 각각의 피해 현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진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직접 보여주고, 재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각의 피해 현황별로 재난 피해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도 각각의 대책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재난 피해 현황 및 원인분석에 따라, 대학의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5) 사례 5: 지역 국립 K대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명)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자체 조사결과 특별한 재난은 없었으나,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 필요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
 - 재난대비 취약분야 중심의 대응능력 향상 및 훈련 강화
 - 실제 재난상황과 유사한 훈련실시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구성 및 운영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계	
소방시설 관리용역	357	357	357	1,071	시설과
노후불량 소방시설 보수	200	200	200	600	
건축물 내진보강	5,118	-	-	5,118	
건축물 적벽돌 보강	2,011	-	-	2,011	
건축물 석면 제거	4,000	856	1,500	6,356	
안전인프라 구축	1,836	1,680	1,500	5,016	
계	13,522	3,093	3,557	20,172	

- 지역 국립 K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K대에서는 최근 5년 간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그럼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계획 및 구성도를 제시하면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재난예방활동 계획(재난 대비 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하면서,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각 대학의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안전사고(대학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연구실사고)

1) 사례 1: 수도권 사립 D대

□ 피해현황 (※) 2023년 사망 1명 : 2022년 이태원 참사(보험처리 기준)

구 분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7	17	28	17.3
재산피해(백만원)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1	0.3
	부상	7	17	27	17.3
	계	7	17	28	17.3

□ 원인분석

○ 자체 조사 결과

-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 발생, 고위험지역 자주 발생하는 장소 우선 적용하여 환경개선 시행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에 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 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해당 연도 학교경영자배상보험 계약 금액

사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30	38	28	96	
계	30	38	28	96	

- 해당 연도 보험금액

사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11	19	35	65	
계	11	19	35	65	

- 수도권 사립 D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D대에서는 최근 3년간 총 52건의 대학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 다수의 대학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각 사고별 상세한 피해현황과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칙적으로 각 사고별로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어떠한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어느 장소가 고위험지역인지 등, 각 사고별로 상세한 사고 현황 및 사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하지만 52건의 모든 안전사고 현황과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이 경우 최소한 사고 유형별로 구분해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현황과 원인 분석 정도는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대학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은 교육부의 안전관리계획 예시안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 즉, 각 사고별 재발방지 대책과 환경 개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각 사고별 상세한 현황 및 원인 분석 이후에, 각각의 사고와 관련된 대학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및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산투자 및 현황 부분에도 대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 비용은 제시되지 않은 채,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액수만 제시되어 있음.
 - 환경 및 시설 개선 비용 등 대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예산 투자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사례 2: 지역 국립 C대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1	2	1	-	-	0.8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 해 (명)	사망(실종)	-	-	-	-	-	-
	부상	1	2	1	-	-	0.8
	계	1	2	1	-	-	0.8

원인분석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원 점검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상황 해제에 따른 연구실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필요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관련 매뉴얼 : [별첨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6,800	3,610	820	11,230	

- 지역 국립 C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4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도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 예시(안)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

3) 사례 3: 지역 국립 J대

□ **피해현황** [경영자책임보험 접수 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32	7	11	17	17	16.8
재산피해(백만원)		35	11	7	0	10	17.6
인명 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32	7	11	17	17	16.8
	계	32	7	11	17	17	16.8

□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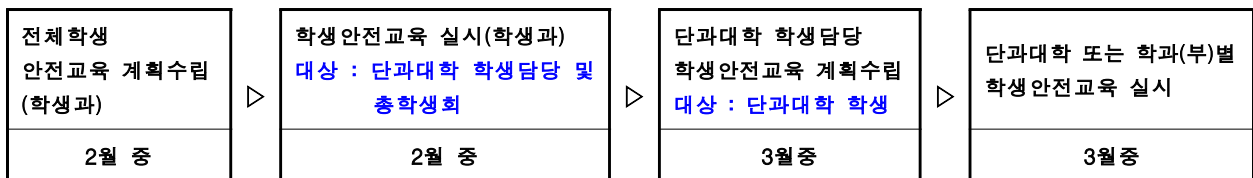
- 체육대회, 대동제, 농촌봉사활동 등 교내 행사 중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
 - 코로나19로 인한 교내·외 행사 감소,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학생 안전사고는 일시적으로 감소 하였으나,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으로 학생 집단활동 증가 가능성이 높아,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목적)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기본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 및 단과대학은 학기 초 학생회 간부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및 학생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안전교육 실시)



- (제도화) 학생지원과와 총학생회 협력 하에 '학생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제도화하고, 학생안전관리 지침을 신설하여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비요령을 체계화함

※ 학생안전사고 예방캠페인단 구성 : 학생지원과(주관 및 기획), 총학생회(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업무프로세스 구축)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 구축

〈학생 집단행사 운영 안전 매뉴얼〉

1.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MT, 농활 등) 관련

1.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 안전 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결과

나.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다.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자제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검토

2.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가.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차량 보험증권 사본 및 차량보유 현황표

※ 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행사 당일에는 배차된 차량이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나.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 차량 계약 시 해당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확인 등

3.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가.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배상) 범위 등 확인

나.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검토(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다양한 방안 강구)

4. 행사 전 답사

가.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 확인

나.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로, 인근 소방서, 병원, 지자체 등과의 연락 체계

다.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5.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가. 음주,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실시

나. 행사장 도착 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6. 교직원 동행

가. 대학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이거나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시 교직원이 반드시 동행

7. 기타

가.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후, 숙박·버스 등의 계약에 대한 일정 연기, 취소 등 결정

II.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1. 대학 주관 오리엔테이션 원칙

가. 입학 전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진행

※ 입학 전 중학생회 주관 오리엔테이션 금지

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1일 내에 완료토록하고,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교직원 및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여 지도·감독

다. 대학 오리엔테이션 비용 중 숙박비 지원은 지양

2.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진행 중 사고 발생 시 엄정히 대처

가.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 →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대처 및 재발 방지

3. 사전교육 실시 강화

가. 학생 대상 행사시 행사대상자에게 행사 전 음주,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성폭력(성희롱), 가혹(폭력) 행위 등에 대한 예방 조치 강구

4.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가.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 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운영

○ 지역 국립 J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J대에서 2019년 이후 발생한 대학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교내외 학생 집단 활동(체육대회, 대동제, 농촌봉사 활동 등)에서 발생하였음.

- 최근에 발생한 대학 안전사고의 원인을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하였음.

○ 자주 발생하는 대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집단행사 운영 안전 매뉴얼을 제정하였음.

-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내외 학생 집단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만큼, J대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 집단행사 관련 매뉴얼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4) 사례 4: 수도권 공립 S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사업명(주관부서)	연도별 예산(백만원)			
	2022	2023	2024	합계
신입생 OT(학생과)	2.5	2.5	2.5	7.5
학생 포상식(학생과)	1	1	1	3
동아리 홍보문화제(학생과)	1	1	1	3
대동제(학생과)	1	1	1	13
학위수여식(교무과)	10	10	10	30
약품및의류소모품 구입보상	0.5	0.5	0.5	1.5
외국인유학생 OT(국제교류과)	16	16	13.8	45.8
종강행사(국제교류과)	3	3	3.5	9.5
외국인학생 문화체험(국제교류과)	2	2	2.8	6.8
현장실습안전(대학혁신과)	2	2	3	7
계	39	39	39.1	117.1

○ 타 대학과 비교하여, 수도권 공립 S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대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이 각 행사별로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어있음.

- 각 행사별로 대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사례 5: 지역 사립 Y대 캠퍼스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1	1	0	1	0.6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1	2	0	1
	계	0	1	2	0	1
						0.8

□ 원인분석

- **임상병리학과 연구실 사고(2020.4.27.)**
 - 사건 당시 조직 박절기에 고정되어 있는 조직 블록을 제거하려던 중 손의 방향에 힘을 잘못주어 블록은 박절기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박절기 내에 고정되어 있는 칼날쪽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이 베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 함.
- **환경에너지공학부 연구실 사고(2021.10.21.)**
 - 학생들이 외부 연구과제 수행 기관에서 톱밥을 플랜트 1층에 설치된 스크류에 투입하는 유증기가 발생하여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안전사고가 발생 함.
- **의공학부 연구실 사고(2023.11.7.)**
 - 전자회로와 디지털시스템 관련 각종 의료시스템에서 중요한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에 대한 실습 중에 조교가 지급하지 않은 잔여 부품(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조작 시 스파크와 함께 사고가 발생 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임상병리학과 연구실 사고(2020.4.27.)**
 - 학부 실험 중 동일 실험에 대하여 실험기구의 사용법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동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
- **환경에너지공학부 연구실 사고(2021.10.21.)**
 - 연구실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교육 실시 및 연구실 안전점검 개선사항에 충실히 이행, 실험을 수행할 때, 유해인자에 맞는 안전보호구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실험 종류에 적합한 휴게시간을 규정하여 지키도록 안내
- **의공학부 연구실 사고(2023.11.7.)**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실험 교과목 사용 장비·부품의 사전 점검 의무화
- **연구실 사고(공통)**
 -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보험료	15	10	1	26	
안전관련 자료 구입비	7	6	5	18	
교육·훈련비/포상비	7	8	9	24	
건강검진비	10	13	14	37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24	14	54	92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비	41	50	93	18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16	16	16	48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12	15	0	27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2	4	47	53	
수수료	42	35	35	112	
여비 및 회의비	1	2	2	5	
설비 안전검사비	0	0	0	0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0	0	0	0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비용	0	0	0	0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41	44	0	85	
안전관리 시스템 비용	25	26	25	76	
기타	7	8	11	26	
계	218	251	312	813	

- 지역 사립 Y대 캠퍼스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최근 5년 내에 발생했던 총 3건의 연구실 사고 원인이 각각의 사고 별로 상세하게 분석되어있음. 이에 따라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고 내용의 파악이 가능함.
- 각각의 사고 원인에 대한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각 사고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각각의 연구실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6) 사례 6: 지역 국립 K대

□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사고분석 결과

NO	사고유형	건수	내용
1	화학물질 노출	13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사고
2	찢림	3	실험기구, 주사바늘 등에 의한 사고
3	이상온도 접촉	5	고저온 증기 또는 액체에 의한 사고
4	베임	17	실험기구에 베임
5	화재폭발	2	화학물질 반응에 의한 사고
6	절단	1	실험장비에 의한 사고
합계		41	

- 실험 시 **부주의**에 의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13건(32%)**
- 실험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부주의**에 의한 **유리, 주사바늘 등에 자상 17건(41%)**
- 유형별 사고에 의하면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실험시 안전보호구(실험복, 보안경, 보호장갑 등) 필히 착용**하여 사고발생 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함

○ 최근 5년간 재해유형별 사고분석

NO	재해유형	건수	내용
1	화상	20	화학물질, 고저온 장비 및 물질에 의한 화상
2	자상	17	날카로운 실험기구에 의하여 자상
3	찢림	3	실험기구, 주사바늘 등에 의한 사고
4	절단	1	실험장비에 의한 사고
합계		41	

- 재해유형별 분석결과 **90% 사고가 화상 또는 자상**으로 연구실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
- 화상, 자상 사고 유형은 대부분 **안전보호구 미착용, 개인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
-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식 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 연구실책임자는 반드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

○ 최근 5년간 기인물별 사고분석

NO	기인물	건수	비고
1	실험도구	21	유리로 된 실험도구 파손에 의해 사고
2	화학물질	13	화학물질 노출 반응에 의한 사고
3	실험기기	5	가열된 실험기기에 의한 사고
4	화재폭발	2	반응된 화학물이 터짐에 의한 사고
합계		41	

- 최근 5년간 사고발생 기인물 분석결과 실험도구에 의한 사고 51%,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32% 차지함
-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은 기인물에 있어 다른 업종과 차이가 있으며, 화학물질, 실험기기 및 도구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 연구실 안전관리 시 **화학물질 및 실험과정에 초점을 맞춰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사고분석**

NO	시간	건수	비고
1	09시 이전	0	
2	09시~12시	5	
3	12시~13시	0	
4	13시~15시	9	
5	15시~18시	19	최다 발생 시간대
6	18시 이후	8	
	합계	41	

- 시간대별 사고분석 결과 15시-18시 사이 19건(46%)의 최다 안전사고가 발생
- 13시-15시 사이 9건(22%) 안전사고가 발생
- 식사 시간 이후 오후시간대 안전사고가 **68% 차지**
- **연구활동 시간중 집중력이 가장 저하될 수 있는 시간대에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관련 매뉴얼 : [별첨1] 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경북대학교 안전사고 실무 매뉴얼**

※ 관련 매뉴얼 : [별첨2] 1. 경북대학교 안전사고 실무 매뉴얼(경북대학교)

○ **2019년 화학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계획**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2020. 12. 29. 규정 제2400호)」 개정
단과대학 관리감독 강화, 연구실책임자 의무 강화, 연구활동종사자 의무 구체적 명시, 제제조항 신설, 화학물질관리방안 신설

- 산단회계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 배정 지침 개정
 ‘간접비 지출 및 집행 매뉴얼’ 개정을 통하여 보조관리기관(연구소 등)에 배정되는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배정하여 총괄적으로 안전관리 사업 수행
- 4단계 두뇌한국사업(BK21) 대학원 혁신역량사업에 안전관리분야 반영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컨설팅 “ 실시
 화학폐기물 취급 연구실에 내화학 안전장비 구입 및 배부
 고압가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KNU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평가 기준 마련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연구실 안전관리 지수를 산정·평가하여 우수연구실에 대한 포상 및 일정 점수 이하 연구실에 대한 제재들 통하여 전체 연구실의 안전의식 및 안전지수 향상 도모
- 안전교육 의무화 및 사전교육 기능 강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위한 교수업적평가 지침 개정 (안전교육 미이수시 감점)
 학업성적처리 규정 개정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에 대한 안전교육 성적 반영)
 수업관리지침 개정 (실험실습과목 강의계획서에 안전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명시)
 안전교육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시행하여 사전교육으로서의 기능 강화
 우리 대학에 맞는 특성화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시행
 체험형 VR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
- 안전점검 강화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기한을 단축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안전한 연구실 상태 유지
 화학관 사고연구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시행 (‘20. 12. 24.)
- 실험폐기물 관리 방법 개선
 지정(화학)폐기물 수집분류 방법 개선
 화학폐기물 배출 건물 출입구에 혼재불가 화학물질 경고스티커 건물별 배치
 퇴임 연구실 연구점사용 폐시약 처리 절차 개선 (퇴직 교원 안전점검표 작성)
 유해인자별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연구실에 대한 설치검사를 통한 안전점검 절차 신설
 연구실 별 고압가스 신고 및 허가제도를 시행하여 연구실 내 가스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가스캐비닛 등 안전시설 확충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신고 및 완성검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시 교원업적평가 가점 부여

- 연구실 안전보험 제도 개선
연구실 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요양급여 5천만원 한도에서 20억원으로 상향)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중점 추진과제 반영 (2023학년도 중점 추진과제)

- 연구실 안전교육 개선
- 정기점검 / 정밀안전진단 및 후속조치 강화
-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신규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 실험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컨설팅 실시
- 안전문화 확산
- 사고 발생 연구실 특별관리 강화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

○ 지역 국립 K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K대에서는 최근 5년간 총 41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음. 전체 연구실 사고의 원인을 각각 사고유형별, 재해유형별, 기인물별, 시간대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면서, 최근에 발생한 연구실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다수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양한 기준을 활용한 현황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연구실 사고의 전반적인 원인을 분석한 이후, 각각의 원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을 대학 자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고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다시 말해, 구체적인 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감염병 확산

1) 사례 1: 수도권 사립 D대

① 감염병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계절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식중독, 인플루엔자 등

□ 피해현황(코로나-19)

구 분	2021	2022	2023	평균
감염자 수	28	1,150	18	398.6
인명피해(사망)	0	0	0	0

□ 원인분석

질병관리청, 중구보건소 조사 결과

- 교내 학생,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은 증대추세이며, 감염원인은 해외입국과 밀집시설 이용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교육·관리강화 필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사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코로나	259	20	0	279	
계	259	20	0	279	

○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대학안전관리계획은 과거 코로나-19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에만 집중되어 있음(양식 재검토 필요).

- 다른 종류의 감염병(식중독, 인플루엔자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각 대학별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코로나 이외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투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범죄(일반범죄, 성범죄)

1) 사례 1: 지역 사립 Y대 캠퍼스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2024	합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운영비	1,348	1,073	1,144	1,102.2	4,667.2	보안원
계	1,348	1,073	1,144	1,102.2	4,667.2	용역비

- 지역 사립 Y대 캠퍼스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Y대에서는 최근 5년 간 일반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최근 일반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원인분석이 생략되어 있으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은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 예시(안)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
 - 일반 범죄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 대학별 자체적인 예방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사례 2: 지역 사립 C대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12	12	2	11	3	8
피해자 수	0	2	0	1	0	0.6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 발생 시 원인 분석	
○ 일반범죄 자체 조사 결과 분석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도난범죄 및 개물림사고등 여러 범죄상황으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CCTV 추가설치, 방범 경비 순찰 횟수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 사립 C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C대에서는 최근 5년 간 일반범죄로 인한 피해가 총 40건 발생하였음.
- 다수의 일반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각각의 사고별 상세한 피해 현황과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반범죄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음.
 - 범죄 피해 현황과 범죄 원인 전부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범죄 유형 및 원인별 구분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범죄 피해의 현황과 원인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은 교육부의 안전관리계획 예시안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
 - 최근 발생했던 범죄 피해 현황 및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이후에, 각 대학별 재발 방지 대책 및 환경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사례 3: 지역 국립 K대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2	3	2	1	1	1.8
피해자 수	2	1	2	0	0	1

□ 원인분석

-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및 CCTV카메라, 비상벨 설치 등으로 캠퍼스내 일반범죄와 위협 요소가 낮은 수준임
- 개별실(연구실, 강의실, 사무실 등)부재 시 보안시스템 필수 작동으로 도난 및 범죄 예방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사고 유형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무단침입	▪ 건물 출입통제 및 순찰 철저, 거수자, 배회자 발견시 상황 전파
불법도촬	▪ 화장실 비상벨 설치, 정기 불법촬영장비 점검
위협사고	▪ 비상벨 등 긴급신호 발생시 긴급 출동 대처
보안사고	▪ 사업장내 보안사고(정보&기밀유출 등) 발생 시 의심이 가는 자를 임의동행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후, 담당자의 지시를 따른다. 단, 그러한 조치 직후에 보고 체계에 의거하여 보고 조치
각종 사건 사고 (침입, 절도 등)	▪ 출동대원은 신속하게 경찰서 및 책임자, 상황실에 보고 후, 지원 요청 및 지원 SE가 현장 도착 시까지 계속 관찰 ▪ 사건 사고 발생시 범인(가해자)을 자극하는 언동 자제 범인 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 특징 등을 관찰하고 대응방안 강구 ▪ 시간을 다투는 긴급상황인 경우, 현장에서는 보고체계를 생략하고 관련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은 누구라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현행범이란? :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 자 ▪ 범인을 잡을 목적으로 가스총, 진압 도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폭행사건	▪ 112 신고 및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상황 대처
거동수상자 발견시	▪ 외모, 행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즉시 상황보고 ▪ 언변에 주의하여 내방목적과 관계 여부 ▪ 관계없는 사람일 경우, 신원확인 후 출문 조치 필요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조치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무인전자경비시스템용역사업	2,048	2,064	2,800	6,912	
계	2,048	2,064	2,800	6,912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자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출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관련 매뉴얼 : [별첨1] 12. 제4차('22~' 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불법도촬 예방 혁신제품(불법촬영카메라 탐지시스템) 시범사용 및 운영

- 제 품: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시스템(주식회사 이너트론)
- 설치장소: 복지관, 글로벌플라자, 백호관, 청룡관, 도서관, IT대학 1호관, 미래융합과학관
- 설치대수: 60대
- 사용예산: 설치비(제품비 포함) 6,600천원, 통신료 132천원(개당 2,200원)
- 기대효과
 - 불법카메라에서 송출되는 영상 사전 차단으로 2차 피해 예방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문자 알림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 지역 국립 K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범죄 유형별(무단침입, 불법도촬, 위협사고, 보안사고, 침입/절도 등 각종 사건 사고, 폭행사건, 거동수상자 발견시 등)로 상세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있음.
 - 대학 내 일반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만큼, 범죄 유형에 따라 상세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불법도촬 예방 혁신제품(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시스템 시범사용 및 운영’ 계획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제시하면서, 불법도촬 예방을 위한 K대만의 자체적인 노력을 제시하였음.
 - 각 대학 자체적으로 계획 및 실행 중인 범죄 예방 활동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사례 4: 수도권 공립 S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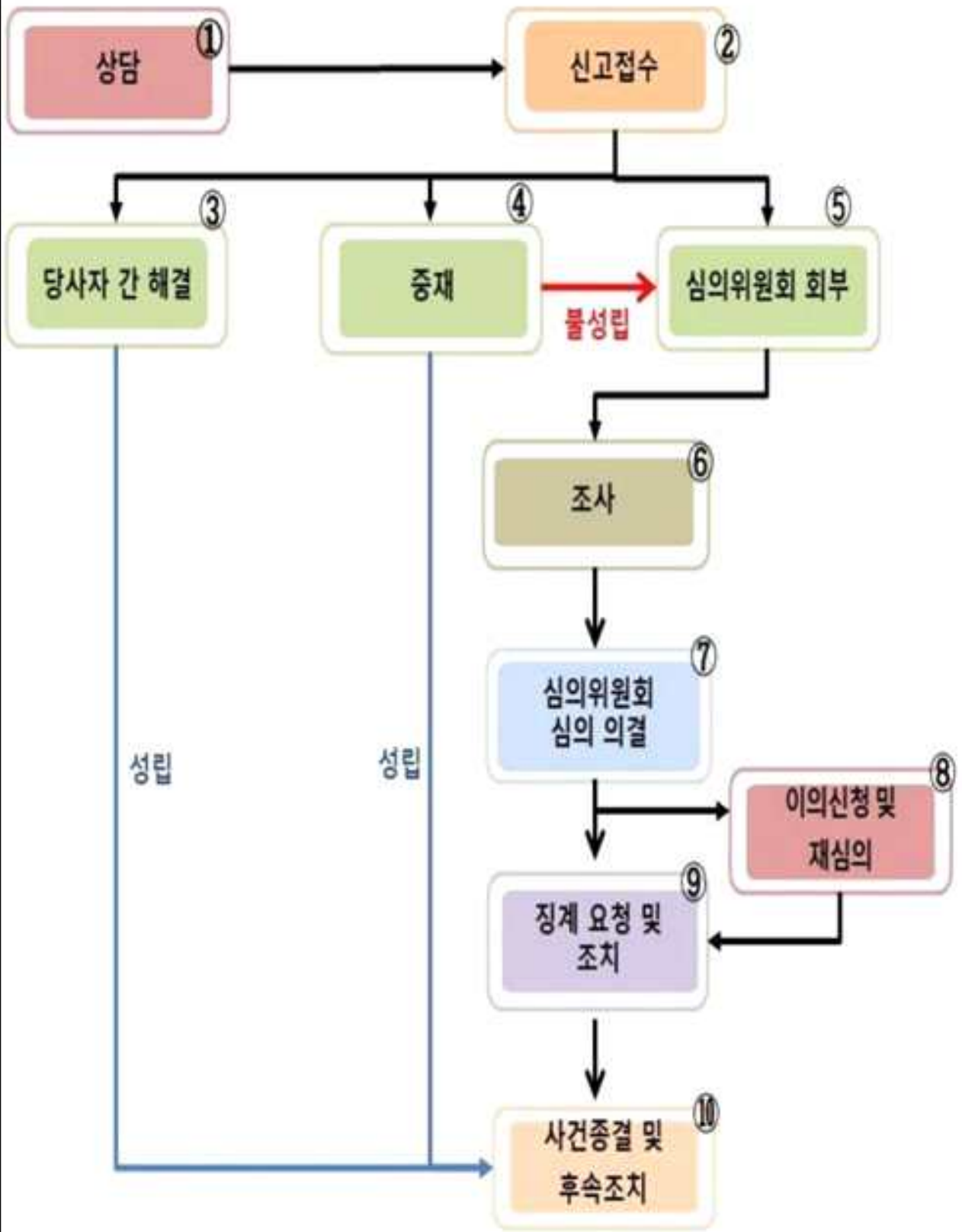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인권센터 안내서/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서 등 배부, 매년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및 수시로) 시행
- 다양한 문화 사업(캠페인, 특강, 전시회 등) 시행으로 인권·성평등 이슈에 관한 학내 구성원의 주의 환기, 인식 전환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사건처리 단계별 주요사항>

	단계	주요사항
①	상담 (제24조)	- 전화·e-mai ▶ ·내방 상담신청 후 대면상담 실시
②	신고접수 (제24조)	- 상담(요구사항 확인, 처리절차 안내 등) 후 신고서 접수 ▶ 신고가능인 :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 및 단체 ▶ 신고가능기한 : 성희롱·성폭력 10년, 인권침해 6년 - 신고의 각하 : 신고가 불가한 경우(인적요건, 기한요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센터의 참여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
③	당사자 간 해결 (제27조)	- 당사자가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센터에 확인 청구 → ⑩번 - 추수 지도·감독
④	중재 (제28조)	- 피해자가 심의위원회 회부(행위자의 징계절차)를 요청하지 않고, 기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 차원에서 중재 ▶ 중재 성립 → ⑩번 ▶ 중재 불성립 → ⑤번(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
⑤	심의위원회 회부 (제29조)	- 피해자가 행위자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 - 센터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의결
⑥	조사 (제30~31조)	- 당사자가 교직원일 경우 반드시 조사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 개시(당사자 서면 고지 및 안내) ▶ 조사방법 : (피해자, 행위자,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사실 또는 정보조회, 자료 제출, 현장조사 등 ▶ 조사기한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
⑦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33조)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필요 및 조치에 대한 심의·의결 ▶ 신고의 기각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결과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⑧	징계요청 및 조치(제34조)	- ⑧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심의(제35조)
⑩	사건종결 및 후속조치	- 사건종결 및 추수지도·감독 - 관행개선 권고 등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건)	성희롱	9	5	6	6.6
	성폭력	5	8	8	7.0
	기타	2	3	1	2.0
	계	16	16	15	15.6
피해자 수 (명)	성희롱	9	5	6	6.6
	성폭력	5	8	8	7.0
	기타	2	3	1	2.0
	계	16	16	15	15.6

- 수도권 공립 S대는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성범죄 피해 현황을 유형별(성희롱, 성폭력, 기타 등)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음.
- 특히 ‘인권센터 사건처리 단계별 주요사항’ 및 ‘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를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제시하면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명료하게 제시하였음.
- 타 대학의 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제시되어 있는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가 많음.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범죄 사건 처리 절차 혹은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5) 산업재해

1) 사례 1: 지역 국립 C대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3	2	3	2	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 해	사망(실종)	0	0	0	1	0	0.2
	부상	0	3	2	2	2	1.8
	계	0	3	2	3	2	2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의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흡·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국립 C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5년 간 총 10건의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1명의 사망(실종)자와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다수의 산업재해 피해와 1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음에도, 각각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나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 예시(안)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 각각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2) 사례 2: 지역 국립 K대

□ 최근 5년간 재해 발생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3	2	1	3	4	2.6
재산피해(백만원)	-	-	-	-	-	0.0
인명피해 (명)	사망(실종)	-	-	-	-	0.0
	부상	3	2	1	3	2.6
	계	3	2	1	3	2.6

□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발생형태별 사고분석 결과

NO	발생형태	건수	내용
1	넘어짐	8	미끄러짐, 보도블럭이나 조경석에 걸려 넘어짐, 빗길 미끄러짐 등 ⇒ 골절, 탈골, 뇌진탕 등
2	이상온도접촉	1	커피포트 사용 중 이상온도 접촉 ⇒ 화상
3	건강장해	1	어지러움을 느끼며 실신 ⇒ 뇌내출혈
4	맞음	1	제초기 칼날과 폐기물 마찰 후 비산 ⇒ 찔림
5	기타	2	
합계		13	

- 넘어짐 사고가 다수(62%). 개인부주의, 건강, 작업특성, 작업환경 등의 요인으로 사고 발생
-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사고발생 시 재해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례 배포 중
-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히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안전의식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지역 국립 K대 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최근 5년 간 발생한 총 13건의 산업 재해 피해 현황과 원인이 발생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 산업 재해 피해 현황과 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사례 3: 수도권 공립 S대

□ 원인분석

- 시설청소원의 근무중 넘어짐 사고(2건), 날카로운 물체에 찢리는 사고(1건), 근골격계 질환(2건) 발생 건은 충분한 안전작업에 대한 교육 및 작업전 충분한 스트레칭 의무실시 등이 필요
- 복지회 주방조리원의 작업중 넘어짐 사고(1건)은 작업장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진 것으로 파악되며, 주방안전메뉴얼 및 교육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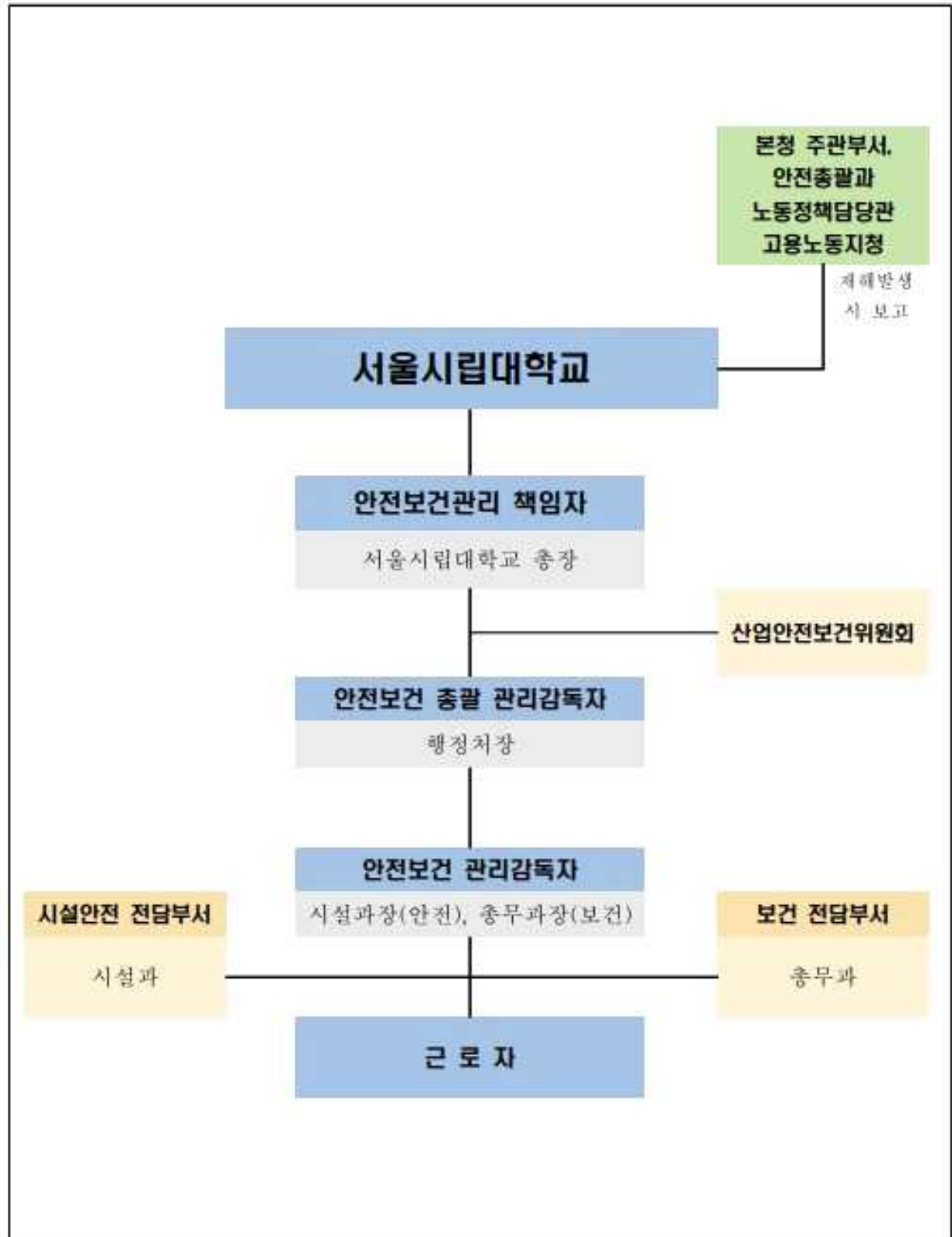
○ 서울시립대학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교육대상별 이행계획)
-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 근로자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규정 게시 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비상조치계획 수립
- 평가 및 개선계획
-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현황(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관리, 점검, 교육 등)

○ 서울시립대학교 중대재해 대응추진 안전보건관리체계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신규	보수	
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화상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근로자	·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 반기6~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 채용(신규) 교육	· 1~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2시간 이상
유해·위험 작업자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직무 스트레스 예방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 서울시립대학교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 수도권 공립 S대 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산업재해의 피해 현황 및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한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서울시립대학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 내용, 서울시립대학교 중대재해 대응추진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서울시립대학교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제시된 재발방지 대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근에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원인 분석을 토대로 대학 자체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6) 중대재해 및 비상사태

-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총 10개 대학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모든 대학에서 최근 5년 간 중대재해 및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0개 대학의 안전관리계획 내에서 공통적으로 원인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은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활용하였음.
- 중대재해 및 비상사태의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한 피해 예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국방부와 관련되어 있는 비상사태 관련 내용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제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기타

1) 사례 1: 지역 국립 J대

2) 식품안전사고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별표 4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생활관	팀장	박윤희	063-270-3627, parkyh@jbnu.ac.kr	주관부서
팀장	학생지원과	학생지원팀장	송완상	063-270-2123, song@jbnu.ac.kr	협조부서

□ 위험요인

-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와 길어지는 여름날씨로 고온다습한 미생물 서식환경 구축이 쉬워짐에 따라 취급 식재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높은 기온 및 더운 날씨에는 식재료의 품질 저하 및 변질 다수 발생
-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의 과정에서 교차오염이나 이물질 혼입 등으로 식품 오염가능성이 높은 상황
 - 위해 물질 식품 혼입 또는 오염으로 학내 구성원 생명·건강·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 원인분석

- 급식소 내 식중독 사고 발생 건수는 없으나, 점점 길어지고 있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대비 식재료 오염 원인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 및 관리하고, 온도에 따른 품질 저하나 변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식재의 사용 자제와 더불어 주기적인 위생·안전점검 실시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시설 점검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 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위생 점검 실시
 -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1년마다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식재료 안전성 점검
 -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급적 가열조리 식단으로 운영하고, 식재료 검수 시 식재료 상태 확인 철저(부패 및 보관상태, 유통기한 등)
 - 식재료 변질이 의심되거나 보관기간이 경과된 경우 선 폐기(조리된 음식 포함) 후 사후 보고(폐기 수량 등)
 - 식재료 검수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 검수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2016)」에 적합한 품질 및 신선도와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
- 급식 관계자 대상으로 위생·안전교육 강화
 - 급식 조리종사자 위생·안전교육 실시(월 1회 이상)
 - 조리종사자 및 영양사 대상으로 주기적인 식품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대응체계 확립
 -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
 -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환자치료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치 강구

2) 사례 2: 지역 국립 K대

2 자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상담센터	행정주사	박성배	053-950-6540, anybiz@knu.ac.kr	주관부서
팀원		상담전문직	홍준연	053-950-6545, jyhong@knu.ac.kr	
			서영숙	053-950-8190, daffodil@knu.ac.kr	
팀원	학생과	조교	채상훈	053-950-2095, nabulgom@knu.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과	행정주사보	이풍현	053-950-2513, punghyun@knu.ac.kr	
팀장	교무과	행정주사	안재홍	053-950-2032 jhan77@knu.ac.kr	

□ 위험요인

- **(정신과적문제)** 심각한 정신질환을 포함하여 낮은 자존감, 만성화된 가족문제, 대학생 활 스트레스 등 우울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코로나 영향 우울, 불안 지수가 증가)
- **(심리사회적요인)** 대입 이전에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서열중심 체제안에서 수동적인 발달과업을 수행했다면 대학이라는 자율적 환경에서 오는 혼란감, 진로 및 학업, 대인관계 등 자발적인 탐색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 가중됨
- **(사회경제적요인)**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은 1위로 최고 수준이지만 취업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청년 실업률은 가속화되는 상황
- **(개인적요인)** 등록금, 학업, 취업, 장래에 대한 압박 및 불안감 등 정신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
- **(교내 현황)** 최근 5년간 교내 자살 사망 학생 수가 7명에 이르고(교내에서 일어난 자살사건 수, 자취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조사에서 제외) 신입생 설문조사에서 자살사고 및 충동 경험이 지속적으로 보고됨

※ 신입생 자살사고 및 충동경험: '21년 5.7%(210명) → '22년 3.7%(123명) → '23년 6.6%(275명)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학부	1	1	1	3	1	1.40
	대학원	-	-	-	-	-	
계		1	1	1	3	1	1.40

□ 원인분석

○ 자체조사 결과

- 자살 사후에는 자살에 대한 원인분석이 어려우나 상담센터 내방 학생 중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 이력이 있는 학생들의 고민을 토대로 살펴보면,
- 가정문제, 정신질환, 경제적인 문제, 학업 부담 및 취업문제 등 한가지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이유로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으로 인해 자살 시도하는 경향
- 대학생의 자살 시도를 촉발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우울감인 만큼 고위험군 학생 발견이 시급하며 고위험군 학생 발굴과 이들의 치료, 심리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 뿐만 아니라 대학내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살을 예방하는 다양한 캠페인, 특강,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자살예방) 자살 및 위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 가. 학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조성을 위한 교육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생명존중 교육
 - 생활관생 대상 자살예방 특강
 - 위기개입 행동지침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위기에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상담, 교육, 특강) 확대
- 나. 또래 서포터즈 양성을 통한 정신건강 지식 홍보 및 생명존중 캠페인
 - 24시간 자살예방상담 홍보(109)
 - 길거리 및 SNS 정신건강 캠페인
- 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스크리닝 강화
 - 신입생(학부, 대학원생) 대상 전수조사를 통한 심리지원 필요군 선별
 - 자취(기숙사)생 심리검사를 통한 자살위기 학생 선별

라. 지도교수 면담시 위기 학생 발견 및 연계

- 학생 면담시 위기 징후 발견 및 학생상담센터 의뢰

※ 관련 매뉴얼 : [별첨1] 12. 제4차('22~' 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별첨1] 13. 2023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여성가족부, 2023)

[별첨1] 1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2)

[별첨2] 5. 인권침해 피해 구제 절차 안내서(경북대학교 인권센터, 2023)

○ (자살대응)위기상황 조치

가. 학생의 자살 암시 신호 확인

※ 자살 예측 신호

언어적 단서	행동적 단서	상황적 맥락
자졌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더 이상 사는 것은 의미없어 불안해서 잠이 안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도망치고 싶어 내가 없는게 나을수도 있어 희망이 하나도 없어	유서 작성 SNS에 죽음을 암시하는 글 작성 구체적인 자살계획 알콜 의존/중독 행동 증가 소유물 나누어 줌 외모에 대한 무관심 자살관련 도구 모음(수면제, 김기약 등) 자살방법에 묻거나 검색함	따돌림, 괴롭힘, 폭행 등 사건 경험 가족분화, 폭력 심각한 경제적 빈곤 인간관계의 상실(이별, 사별) 중대한 신체적 질병이나 손상 성과(학업등)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 과거 자살시도 경험 최근 심한 스트레스 사건(시험, 취업실패 등)

나. 자살위험 수준* 판단 및 대응

낮음	자살생각은 있으나 자살계획은 없음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심리상담 권유 24시간 전화 안내(109)
보통 위험	막연한 자살계획을 가지고 있음. 자살도구가 구체적이지 않음.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심리상담 권유 24시간 전화 안내(109)
높은 위험	자살계획이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편임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보호자 연락, 병원진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약물치료 병행 상담 안내 24시간 전화 안내(109)
아주 높은 위험	매우 치명적이며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갖고 있음 자살할 것이라고 말함	→ 보호자 연락, 병원진료 강력 권고 (필요시 112)

*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위기 대응 안내서 [자살위기자의 특징 및 징후 중 자살위험 수준]

다. 교내외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 24시간 응급서비스 전화(109)

· 교내 학생상담센터 및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학생상담센터 (053-950-6546~8),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1) (053-353-3631~2)

라. 아주 높은 위험의 경우, 보호자 연락 및 112 호출

○ (자살시도 발생 시) 학생의 자살 시도 상황이 실제 발생한 경우

가. 긴급 신고(최초 발견자가 즉각 신고, 대상자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

- 119 신고 : 자살시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거나(악물복용, 손목자상 등) 상해 위험이 높은 경우
- 112 신고 : 자살시도가 우려되지만 학생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

나. 학생과 및 해당학과 연락

○ (자살사후 대응)

- 헬프라인(1899-4567)을 통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신청
- 주변 친구, 학과 학생, 룸메이트 등 자살 관련 직간접 목적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상담 지원(해당학과, 기관 공조하에)

○ (교내외 협력 및 연계) 고위험군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교내외 기관간 협력

- 지도교수 면담시 학생지도 및 상담연계를 위해 심리지원 필요군 명단 학과 발송
- 자살 위험군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내 유관기관 MOU 구축 및 협업(대구 자살예방센터, 대구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내 인근 병원 등)
- 대학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사업 활용(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대학생 정신건강지원 사업	440	438	-	878	

3) 사례 3: 지역 국립 K대

③ 사이버 위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팀장	정보화본부	전산주사	서영숙	053-950-8675, ysseo@knu.ac.kr	주관부서
팀원	정보화본부	전산직	구승모	053-950-8677, koo@knu.ac.kr	
팀원	정보화본부	전산직	박상길	053-950-8676, fifi20@knu.ac.kr	
팀장	총무과	행정주사	김창근	053-950-2512, kimcg@knu.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과	행정서기	권재현	053-950-2514, cjwo5648@knu.ac.kr	
팀원	교무과	행정주사보	한영빈	053-950-2033, 2008013027@knu.ac.kr	

□ 적용범위

- 사이버공격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대학 차원의 총괄·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해킹, 워·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우리 대학 정보통신망의 마비, 기밀·중요자료 유출 등 사이버위기 상황 발생 시 우리 대학의 사이버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위험요인

- 인터넷을 통해 학내 전산망에 직접 침투
 - 전산망 교란 및 제침투를 위한 백도어 설치
- 홈페이지·메신저·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악성코드 유포
 - 저장된 데이터 조작·과과·은닉·절취 및 탈취
- 대규모 봇넷(Botnet)구축, 광범위한 서비스거부공격
 - 대량 데이터전송·부정명령 등으로 시스템 정상동작 방해

□ 피해현황

- 학사·행정·교육·연구 등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마비, 학내혼란 조장 및 물적·재정적 타격
- 중요자료·학교기밀 유출, 보안 공백 및 대외적 이미지 실추
- 민원·행정서비스 마비, 교직원·학생 생활 불편 및 학교 불신 초래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 균
발생건수	-	-	-	1	-	0.2
재산피해(백만원)	-	-	-	-	-	-

□ 원인분석

○ 대응훈련 결과

- 대학(교육·연구기관)에 대한 대규모 해킹·DDoS 공격·웜·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 사고 발생은 없었으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한 업무 실시 및 비상계획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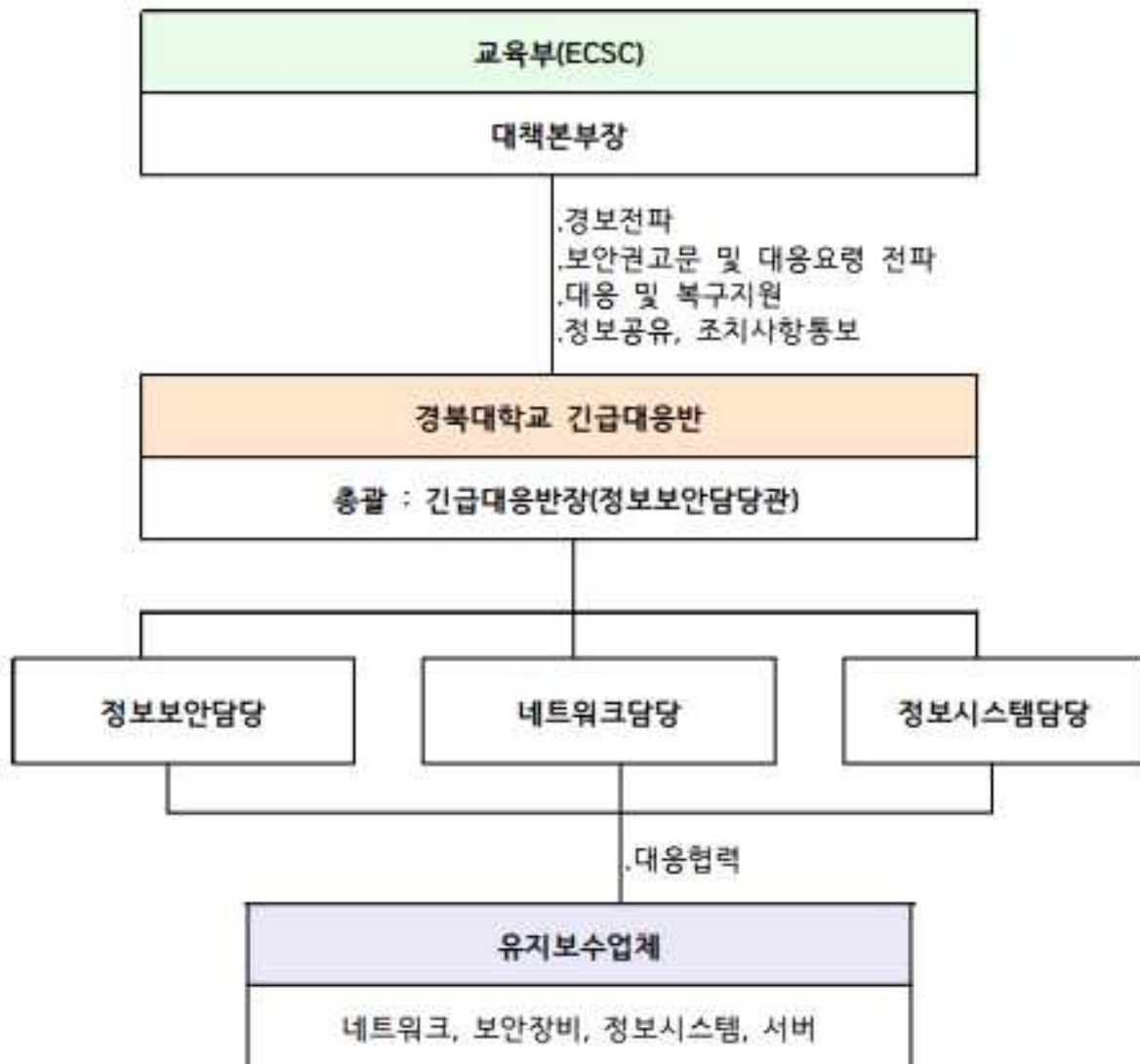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해킹, 웜·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히 위협받거나 학교 기능이 **지역적·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대학교의 **사이버분야 위기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
- (위기경보)

구 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서비스거부공격, 악성코드, 취약점 및 해킹기법 출현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 우려 ▪ 침해사고가 일부기관에서 발생 ▪ 국내·외 정치·군사적 위기상황 조성 등 사이버위협 가능성 증가 	위기 징후 감시 강화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장애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 국내·외 정치·군사적 위기발생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고조 	협조 체제 가동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망·기간통신망 장애 발생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즉각대응 태세돌입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주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대규모 장애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 발생 	대응 역량 충동원

※ 위험 정도가 낮은 웜·바이러스, 해킹기법,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는 위기경보 이전 단계인 **정상(Green)** 수준으로 간주

- 교육부(ECSC)로부터 정보 접수 시 전부서로 정보발령 사실을 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속히 전파
 - '주의' 이상의 사이버위기 정보가 발령되는 경우 자체「긴급대응반」 구성·운영
 - '심각' 수준의 위기정보 발령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정보화본부장을 긴급대응반장으로 하고 교육부 「사이버 위기 대책본부」와 유기적 업무 협조
- **(비상조직)**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 등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구 분	구성시기	운영기간	비 고
관심 (Blue)	필요시	▪ 긴급대응반 구성·운영 준비	위기징후 감시강화
주의 (Yellow)	의무	▪ 긴급대응반 구성·운영 ▪ 필요시 비상 근무 실시 ▪ 24시간 비상연락망체제 운영	협조체제가동
경계 (Orange)	의무	▪ 필요시 비상근무 실시 ▪ 24시간 비상연락망체제 운영	즉각대응 태세돌입
심각 (Red)	의무	▪ 필요시 비상근무 대비태세 강화	대응역량 총동원

- ‘주의’ 이상의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긴급대응반」 구성 및 운영
- 「긴급대응반」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긴급대응반장으로 하고, 네트워크담당자, 정보시스템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긴급대응반」을 편성하되, 유지보수업체를 포함하여 편성
- 「긴급대응반」 편성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은 정보화본부 비상연락망으로 대체·유지
- 「긴급대응본부」의 운영 장소 :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 (대응절차)

- 경북대학교 긴급대응반은 침해사고 발견, 탐지 시 업무관리시스템, 전화, 이메일 등 구축된 상황전파 체계를 활용, 침해사고가 발생한 부서에 신속히 통보
- 침해사고 탐지 및 발견 시 교육부(ECSC)에 유선으로 즉각 통보하여야하며 정보공유시스템(cyber.ecsc.go.kr)을 통해 사고 발생 이후 24시간 이내 초동조치 완료 후 신고
- 일반 침해사고(악성코드 감염 등)의 경우 5일, 주요 침해사고(웹 해킹)은 2일 이내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교육부(ECSC)에 보고
- 긴급침해사고는 탐지 시 즉각 초동 조치 및 교육부(ECSC) 유선 신고를 실시

구 분	긴급침해사고	주요침해사고	일반침해사고	조치권고
초동조치 및 신고	인지 시 즉각	24시간 이내		자체 처리 실시
대응결과보고서	현장점검 이후 (지정된 기간)	2일 이내	5일 이내	

※ 침해사고 신고 방법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신고

○ (대응조치)

- (1) 공격 탐지규칙 적용, 백신 및 탐지규칙 배포 설치
 -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는 트래픽 특성과 도구를 탐지하기 위한 탐지규칙을 교육부(ECSC)로부터 제공받아 보안관제시스템에 적용
 - 교육부(ECSC) 등으로부터 전용 백신프로그램을 수령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 (2) 변종 워미바이러스 출현 및 추가공격 대비 보안관제 강화
 - 관제인력 증원 및 신규 탐지규칙 적용 등 보안 관제 강화
 - 각 분야·부문별 관제센터 등 유지보수업체와 수시 연락하여 위협 동향 실시간 파악
 - 교육부(ECSC)와 협력하여 보안관제 업무 수행
- (3) 기술관리-물리적 보안대책 강화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점검 및 위기징후 탐지 강화
 - 새로운 보안취약점 및 해킹수법에 대비, 보안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 실시
 -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포트 차단, 위험 최소화
 -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접근 차단 설정 점검
 - 종합분석시스템(ESM), IPS를 통한 침입차단 및 침입방지 정책 설정
 - 웹방화벽을 통한 웹 공격 차단 등 보안 강화

○ (피해복구 및 후속조치)

- 대학 전체 피해복구 추진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복구가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 「긴급대응반」에서 지원
- 침해사고 경과 및 결과 종합 보고 실시
- 기술-관리-물리적 보안대책 시행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정보보안시스템강화	55	1,050	220	1,325	2)
계	55	1,050	220	1,325	

2) 2022년 : 대학혁신지원사업 55
 2023년 : 산단회계 600, 정보통신(ICT)고도화사업 450
 2024년 : 정보통신(ICT)고도화사업 190, 사이버위협 탐지장비 구축 30

3) 사례 4: 지역 국립 C대

2) 기숙사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원	학생생활관		전영희	042-821-6185, yhjun02@cnu.ac.kr	기숙사
팀원	학생생활관		김규태	042-821-6184, gyou3411@cnu.ac.kr	
팀원	학생생활관		이에나	042-821-6174, yena@cnu.ac.kr	

□ 위험요인

- (기숙사) 기숙시설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과 화재대피 훈련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대응관리 체계 구축
- 학생생활관의 운영에 있어 화재, 도난, 외부인 침입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잇는 추세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운영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 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자체조사 결과
- 2018년 관실내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선풍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피해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소방계획 등에 따른 연간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화재발생시 비상행동요령, 화재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응급조치 등 비상시 효율적인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시설물 사전점검과 화재대피 훈련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이 대응관리 체계 구축)
- **(안전 및 응급상황 매뉴얼 운영)** 평상시 소방점검 및 화재대피훈련을 통하여 화재 시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학생생활관 안전관리매뉴얼 운영)
- **(교육·훈련)**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연 2회 이상 대피훈련 실시, 소방관서 지원, 건물내 전 관생 참여,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화활동 참여 및 교육)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소방시설 보완사업	5.7	3	5	13.7	
안전사고 예방사업	13	14	10	37	
계	18.7	17	15	50.7	

-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안)에 제시되어 있는 기존의 재난·재해 유형 이외에 지역 국립 J대, 지역 국립 K대, 지역 국립 C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각각 식품안전사고, 자살, 사이버 위기, 기숙사 재난 유형의 피해 현황과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예산투자 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기타 재난·재해 유형들을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요약 및 정리

- 모든 재난 및 사고 유형별로 대학의 피해현황, 원인분석,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등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전혀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함. 이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해당 대학의 재발 방지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투자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 각 대학에서 발생한 재난 및 사고 피해현황, 원인분석,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재난 및 사고로 인한 대학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대학별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거나, 심지어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존재함.
 -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 대학별 자체적인 활동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학생 집단행사 등 특정한 사례에 대한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 매뉴얼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도 있음.
- 재난 및 사고 피해 현황을 숫자로 제시하기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거나,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존재함.
 - 각 재난 및 사고 피해 현황과 피해 원인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대학별로 상세하게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소한 사고 유형별로 구분해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현황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제시되어 있는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한

피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진을 활용하여 각각의 피해 현황과 원인 분석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권고할 필요도 있음.

○ 재난 및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함.

- 예산투자 유형(대책명)별로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대학 자체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한 각각의 재난 및 사고 피해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각 대학별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각 대학별로 재난 및 사고 피해 현황 제시,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등 네 가지의 항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현재 대학안전관리계획은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코로나-19 피해 현황과 원인 분석,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만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다른 종류의 감염병(식중독, 인플루엔자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 계획, 그리고 예산투자 현황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우에 따라 감염병 항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관련 항목을 대학안전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반범죄 및 성범죄 피해의 상세한 현황과 원인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사례가 많음.

- 대학 자체적으로 일반범죄 및 성범죄 현황과 피해 원인,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최근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한 범죄 유형별 재발방지 대책이나 범죄 피해 발생 시 처리 매뉴얼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성범죄 항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범죄 관련 항목을 대학안전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을 각 대학별로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대학에서 중대재해 및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해 현황 및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은 다소 미흡하게 제시되었거나,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많음.
- 중대재해 및 비상사태 영역의 경우 피해 현황 및 원인분석 항목보다는, 예방 대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비상사태 항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사태 관련 항목을 대학안전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항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비상사태 항목을 대학안전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대학안전관리계획이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대학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연구실 사고), 범죄(일반범죄, 성범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영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사고, 자살, 사이버 위기, 기숙사 등 기타 유형 중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식품안전사고와 기숙사 영역은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부분 실태 분석

(1) 재난안전훈련

1) 사례 1: 지역 국립 C대

<input type="checkbox"/>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비고
학생	11. 2.	1일	총학생회	안전한국훈련
교직원	10.31.~11.3.	3일	전체	안전한국훈련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재난 유형별 매년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대학 캠퍼스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input type="checkbox"/>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비고
학생	-	-	-	안전한국훈련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교직원	매년 11월(예정)	1시간	전체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재난 유형별 매년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대학 캠퍼스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지역 국립 C대 추진개요 부분에서는 교육시간이 일별(1일, 3일)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인원 역시 “총학생회”, “전체” 등 구체적인 수치 없이 다소 포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음.

○ 지역 국립 C대 추진내용 부분은 교육부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

2) 사례 2: 지역 국립 K대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명)	예산
교직원	'23. 6. 21.	2시간	75	780천원
교직원	'23. 11. 3.	2시간	64	780천원
교직원	'23. 3. 1. ~ 11.30.	3시간	1,152	
교직원	'23. 3. 1. ~ 11.30.	1시간	327	
학생	'23. 3. 10. ~ 4.18.	2시간	1,833	
학생	'23. 3. 10. ~ 4.18.	2시간	1,691	
학생	'23. 9. 12. ~ 10.31.	2시간	2,001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2023년 합동소방훈련 및 승강기감험사고 대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3.06.21.(금) 14:00 ~ 16:00 ▪ 훈련주관: 대구북부소방서, 대현119안전센터, 경북대학교 ▪ 훈련참가: 경북대학교 75명, 북부소방서 5명, 대현119안전센터 5명,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명 ▪ 훈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감험사고 대응방법 안내 - 응급상황시 대피 요령 안내 - 화재발생 집합장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점검 및 관리방법 -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진화 방법 교육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23년 소방관서합동 및 자위소방대 대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3.11.3.(금) 10:00 ~ 12:00 ▪ 훈련주관: 대현119안전센터, 경북대학교 ▪ 훈련참가: 경북대학교 64명, 대현119안전센터 6명, 경북대어린이집 원아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시 자위소방대 대응 방법 - 응급상황시 대피 요령 안내 - 화재발생 집합장소 안내 - 소화기 점검 및 관리방법 -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진화 방법 교육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23년 소방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23.3.2.(목) ~ 11.30.(목) ▪ 교육주관: 경북대학교(자료제공: 서울소방 youtube) ▪ 교육대상: 경북대학교 교직원 전체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대응-대비 교육 - 심정지 발생상황을 대비한 CPR교육 - 지진발생 대응-대비 교육 - 화상의 종류 및 상황별 대처법 - 출혈,골절 상황 시 대처법 - 겨울철 화재안전 대비 - 안전한 캠핑을 위한 필수장비 및 교육
2023년 자위소방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23.3.2.(목) ~ 11.30.(목) ▪ 교육주관: 경북대학교(자료제공: 광주소방 youtube) ▪ 교육대상: 경북대학교 자위소방대원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대응-대비 교육 - 자위소방대 상황별 대처법
상반기 기숙사 화재 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23.3.10.(금) ~ 4.18.(화) ▪ 교육주관: 경북대학교 생활관 ▪ 교육대상: 생활관 입소생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시 대피훈련 - 지진발생 대응-대비 교육
하반기 기숙사 화재 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23.9.12.(화) ~ 10.31.(화) ▪ 교육주관: 경북대학교 생활관 ▪ 교육대상: 생활관 입소생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시 대피훈련 - 지진발생 대응-대비 교육
상반기 기숙사 지진대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23.3.10.(금) ~ 4.18.(화) ▪ 교육주관: 경북대학교 생활관 ▪ 교육대상: 생활관 입소생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지진 발생시 대피훈련 - 지진발생 대응-대비 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비고
학생 및 교직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기간 [5일간]	
생활관 입소생	상·하반기 화재대피 훈련	
교직원	합동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 대응 훈련	
교직원	소방안전교육	
자위소방대원	자위소방대 화재대응 교육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소집훈련 : 가상 재난 상황 공무원 등 비상소집 사고대응 상황훈련 : 사고수습 가상 훈련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 전기관 대상 현장 훈련 재난대비 태세점검 : 연구·실험실 안전 훈련 합동소방훈련 : 화재 발생에 따른 합동소방훈련, 중요자료 보호 훈련 ※ 주관기관(행정안전부) 일정에 따라 상세 추진 내용(추가, 변경, 일정 등) 반영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기관: 생활관 시행빈도: 반기당 1회 시행방법: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시행 시행시기: 교육부가 지정한 기간 내 시행 행정사항: 훈련시행 후 총무과로 결과보고 후 교육부 제출 ※ 시행기관 일정에 따라 상세 추진 내용(추가, 변경, 일정 등) 반영
합동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 대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기관: 소방안전관리자(대구, 상주, 의대, 치대 등)가 연간 1회 이상 시행빈도: 연간 1회 이상 시행방법: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시행 시행시기: 안전한국훈련 기간 등 행정사항: 훈련시행 후 총무과로 결과 보고 ※ 시행기관 일정에 따라 상세 추진 내용(추가, 변경, 일정 등) 반영
소방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간: '24. 3. 1.(금) ~ 11.30.(토) 교육대상: 전체 교직원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3H) (자료제공: 서울소방 youtube)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대응·대비 교육 - 심정지 발생상황을 대비한 CPR교육 등
자위소방대 화재대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간: '24. 3. 1.(금) ~ 11.30.(토) 교육대상: 자위소방대 대원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1H) (자료제공: 광주소방 youtube)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대응·대비 교육 - 소방기구 사용방법 및 대피방법

- 지역 국립 K대 추진개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교육시간과 인원, 예산 등이 제시되어 있음.
 - 교육·훈련시간과 참여 인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소요된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 국립 K대 추진내용 부분에서는 각각의 교육·훈련별로 일자, 시간, 주관, 교육대상, 교육(훈련) 내용 등 매우 상세한 추진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C 대학의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서 2023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훈련이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2024년에 어떠한 교육·훈련이 실시될 예정인지 파악될 수 없음.
 - 이와 비교하여, K 대학의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2023년에 실시되었던 교육·훈련과 2024년에 실시될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될 수 있음.
 - 따라서 K대의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교육·훈련 추진 내용(시행기관, 시행빈도, 시행방법, 시행시기, 교육내용 등)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1) 사례 1: 지역 국립 K대

<input type="checkbox"/>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3.3.7.	1	전교생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운영 지침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운영 지침 제정 후 구성원에게 알림(2021.11.24.일자) 공문 시행 			
<input type="checkbox"/>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4.3.6. 예정	1	전교생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운영 지침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운영 지침 구성원에게 알림 공문 시행 			

○ 지역 국립 K대에서는 2023년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단 한 차례, 1시간만 실시되었음.

○ 지역 국립 K대에서는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운영 지침 제정 후 구성원에게 알림(2021.11.24.일자) 공문 시행” 을 2023년에 실시한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사례로 제시하였음. 하지만 운영 지침 제정 후 알림 공문 시행 자체만을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2) 사례 2: 수도권 공립 S대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월	240분	29명	580천원
	4월	30분	77명	-
	5월	30분	40명	-
	6월	270분	97명	940천원
	7월	30분	44명	-
	8월	270분	98명	420천원
	10월	1시간 30분	179명	-
	11월	2시간	200명	-
	12월	270분	118명	460천원
교직원	10월	1시간	100명	-
	11월	1시간	10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해외 탐방 안전교육	· 방학기간 중 해외 단기탐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금연, 절주, 코로나 감염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내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 교육	· 동아리 홍보문화제 개최 등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각종 안전사고 예방, 코로나 감염 예방 교육 등)
논술고사, 학생부종합전형, 편입학 필답고사 안전 교육	· 논술고사, 학생부종합전형, 편입학 필답고사 안전사고 예방교육 - 시설물 안전점검 - 고사장 내·외부 질서유지 - 주차 및 보행자 교통 안전관리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안전 교육	·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안전사고 예방교육 - 시설물 안전점검 - 안전관리 유관기관 연락 체계 구축 - 주차 및 보행자 교통 안전관리 - 고사장 내·외부 질서유지 - 응급환자 처치 및 관리 방법 등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성폭력 인권교육	· 외국인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 국내 범죄관련 예방교육 · 성폭력, 인권교육 등 외국인 학생 대상 인권교육
현장실습 실시 전 직장 안전교육	· 산관학협력현장실습 선발학생 대상으로 직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4.1월	2시간	200명	
	24.2월	300분	121명	420천원
	24.3월	30분	1,800명	
	24.4월	30분	200명	
	24.5월	30분	100명	
	24.6월	300분	290명	2,250천원
	24.8월	300분	140명	1,080천원
	24.10월	1시간 30분	200명	
	24.11월	1시간	200명	
	24.12월	270분	240명	2,250천원
교직원	24.7월	1시간	100명	
	24.10월	1시간	100명	
	24.11월	1시간	100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국내 단기탐방 안전교육	· 방학기간 중 국내 단기탐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금연, 절주, 코로나 감염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내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 교육	· 신입생 환영 선물 키트 배부 및 OT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 동아리 홍보문화제 개최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 대동제, 전농체전 등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각종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코로나 감염 예방 교육 등)
논술고사, 학생부종합전형, 편입학 필답고사 안전 교육	· 논술고사, 학생부종합전형, 편입학 필답고사 안전사고 예방교육 - 시설물 안전점검 - 고사장 내·외부 질서유지 - 주차 및 보행자 교통 안전관리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안전 교육	·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안전사고 예방교육 - 시설물 안전점검 - 안전관리 유관기관 연락 체계 구축 - 주차 및 보행자 교통 안전관리 - 고사장 내·외부 질서유지 - 응급환자 처치 및 관리 방법 등
방학기간 중 안전교육	· 방학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교육 (코로나 감염예방, 안전유의 등)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 외국인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 국내 범죄관련 예방교육
성폭력 인권교육	· 성폭력, 인권교육 등 외국인 학생 대상 인권교육
현장실습 실시 전 직장 안전교육	· 산관학협력현장실습 선발학생 대상으로 직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 수도권 공립 S대에서는 2023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9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2회가 실시되었음.
- 수도권 공립 S대에서는 교내 주요 행사(해외 탐방, 동아리 홍보문화제, 논술고사, 예체능 계열 실시고사, 대학 축제 등) 때마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 행사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S대의 사례처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대학안전교육 사례를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양한 행사가 많은 대학의 특성상, 교내 주요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사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K대와 비교하여, S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2024년에 실시될 교육·훈련 계획도 각각의 교육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1) 사례 1: 수도권 사립 D대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명)	예산
현업종사자	매 분기별	12	190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명)	예산
현업종사자	매 분기별	12	180	3,4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 수도권 사립 D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구체적인 안전보건교육 대상, 인원, 예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 “현업종사자”,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의 형태로 매우 포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음.

○ 특히 교육·훈련의 추진 내용이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 으로 제시되어 있어,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2) 사례 2: 지역 국립 J대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관리감독자	2023년 내	연간 16시간 이상	12명	708,000원
현업업무종사자	분기 1회 (총4회 실시)	24시간/년	1분기: 242명 2분기: 266명 3분기: 248명 4분기: 263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 우편교육 : 대학안전교육협회 - 과정명 : 사업시설관리 및 기타업 16시간 과정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1분기</td> <td>위험성평가 교육 및 설문 조사 등</td> </tr> <tr> <td>2분기</td> <td>하임리히법 교육 등</td> </tr> <tr> <td>3분기</td> <td>근골격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등</td> </tr> <tr> <td>4분기</td> <td>직무스트레스 예방에 관한 교육 등</td> </tr> </table>	1분기	위험성평가 교육 및 설문 조사 등	2분기	하임리히법 교육 등	3분기	근골격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등	4분기	직무스트레스 예방에 관한 교육 등
1분기	위험성평가 교육 및 설문 조사 등								
2분기	하임리히법 교육 등								
3분기	근골격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등								
4분기	직무스트레스 예방에 관한 교육 등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관리감독자	2024년도	연간 16시간 이상	32명	
현업업무종사자(정기교육)	매분기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시 재산정	
현업업무종사자(채용시교육)	발생시	8시간 이상	(발생시)	
현업업무종사자(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발생시	2시간 이상	(발생시)	
현업업무종사자(특별교육)	발생시	2시간 이상	(발생시)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교육 종료로 인하여 집체교육 진행 예정 - 교육시간 : 16시간 / 년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p>(1분기)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2024.02.23. / 2024.02.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병예방, 응급처치 실습교육 진행 - 산업안전 및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p>(2분기~4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안전 - 작업장 조명과 안전 - 전기의 위험성과 감전 - 기계설비의 위험성 - 위험예지훈련 - 여름철 건강관리 - 안전작업 및 통행 - 산업재해 필수 안전수칙 - 화학물질 취급방법 및 누출시 대응방안 - 운반작업 안전 <p>※ 교육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집체교육 미수료자는 온라인교육 실시</p>

- 지역 국립 J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대상(관리감독자, 현업업무종사자 등), 인원,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특히 지역 국립 J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추진 내용이 각 교육 훈련별로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교육·훈련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결과 및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연구실 안전교육

1) 사례 1: 지역 국립 C대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이수시간
신규교육훈련	신규 발생시	발생시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실험실 유형별 이수기준 차등 적용
정기교육훈련	상반기/하반기	반기별 1회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연구실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안전 교육 이수 ▪ 연구실책임자 주관 자체안전교육 이수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이수시간
신규교육훈련	신규 발생시	발생시	2시간 이상
정기교육훈련	상반기/하반기	반기별 1회	6시간 이상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본부 주관 집체 안전교육 이수 ▪ 연구실책임자 주관 자체안전교육 이수
정기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 국가연구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 지역 국립 C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교육 대상자 수, 이수자 수, 이수율, 예산 등 연구실 안전교육 결과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음. 연구실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서 C대 연구실 안전교육의 결과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움.

2) 사례 2: 지역 국립 J대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대상	이수자	이수율	예산(천원)
신규교육	상반기	1	2,842	2,187	76.95%	2,986
정기교육	상반기	1	9,027	5,034	55.77%	
신규교육	하반기	1	321	209	65.11%	
정기교육	하반기	1	6,857	4,487	65.44%	

※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및 연구실 자체교육 실시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안전법 ▪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 기본실험 안전수칙 ▪ 연구실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정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의식 ▪ 사고 유형별 대응 ▪ 화학, 생물, 가스, 전기 등 각 분야별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 3D 프린팅 안전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천원)
신규교육	상반기	2	2,861	4,000
정기교육	상반기	1	9,212	
신규교육	하반기	2	1,812	
정기교육	하반기	1	7,866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안전법 ▪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 기본실험 안전수칙 ▪ 연구실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정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의식 ▪ 사고 유형별 대응 ▪ 화학, 생물, 가스, 전기 등 각 분야별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 3D 프린팅 안전교육

- 지역 국립 J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교육 대상자 수, 이수자 수, 이수율, 예산 등 2023년 연구실 안전교육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음.
 - J대의 사례처럼 연구실 안전교육 결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국립 J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신규교육의 추진내용(연구실 안전법, 기본실험 안전수칙, 연구실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과 정기교육의 추진내용(연구실 안전의식,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사고 유형별 대응 등)을 교육 주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J대의 사례처럼 연구실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실 안전교육 결과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교육 추진 내용을 제시하여,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연구실 안전교육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감염병 예방교육

1) 사례 1: 수도권 사립 D대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	-	-	-
감염병 진료 및 보호	-	-	-	-
감염병 예방 수칙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교육			

○ 수도권 사립 D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2023년 감염병 예방 교육·훈련 결과 및 2024년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데이터(교육 과정, 횟수, 인원, 예산 등)가 전혀 제시되지 않음.

○ 교육·훈련 추진 내용 부분도 포괄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으로만 제시되어 있음.

2) 사례 2: 지역 국립 J대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수칙 및 정보 안내(총무과)	감염병 관련 지침 및 정보 안내(공문발송)			-
감염병 예방 수칙 (보건진료소)	홈페이지 게시, 보건진료소 방문자 감염병 관련 동영상 시청	100회	4,000	-
방역물품 제공 (보건진료소)	호흡기 질환 진료 환자에게 방역물품 제공하며 예방수칙 안내	1회	3,000	4,000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안내 및 제공(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방문한 검사자에게 사용법 안내 및 제공	300회	300	3,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 교육	· 감염병 정보 및 예방 수칙 홈페이지 게시 · 보건진료소 방문자 감염병 관련 동영상 시청 교육
방역물품 제공	· 호흡기 질환 진료 환자에게 마스크 제공, 예방수칙 교육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교육	· 자가진단키트 검사자에게 사용법 교육 및 예방 수칙 안내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교육 (총무과)	전북대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1,000	
감염병 예방	홈페이지 게시, 보건진료소 방문자 감염병 관련 동영상 시청 교육	100회	4,000	
방역물품 제공 및 예방수칙 안내	방역물품 제공(마스크 및 소독제 등) 하며 예방 수칙 교육	1회	4,000	7,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온라인교육	· 전북대학교 나라배움터를 활용한 (감염병)감염관리 실무 교육
감염병 예방	·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감염병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 · 보건진료소 방문자 감염병 관련 동영상 시청 교육
방역물품 제공 및 예방수칙 안내	· 호흡기 질환 진료 환자 및 감염병 관련 물품 제공 및 예방수칙 안내

- 지방 국립 J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2023년 감염병 예방 교육·훈련 결과 및 2024년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데이터(교육 과정, 횟수, 인원, 예산 등)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감염병 예방 교육 추진 내용도 각각의 교육 과정에 따라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지역 국립 J대의 사례와 같이 감염병 예방 교육의 결과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 유행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성범죄 예방교육

1) 사례 1: 지역 사립 Y대

<input type="checkbox"/>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명)	예산(원)
교직원	2023. 3. 1. ~ 2023. 12. 30.	5	2,416	340,000
주) 성범죄 예방교육은 온라인 교육 이수결과이며, 수료 인원은 해당 과목을 이수한 모든 인원임. (*22.12.30.기준)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4대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명)	예산(원)
교직원	1	1	2,539	3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4대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 지역 사립 Y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2023년에 실시된 성범죄 예방 교육·훈련 일정과 교육시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특히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육 결과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육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 지역 사립 Y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성범죄 예방 교육의 내용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음.

2) 사례 2: 지역 사립 K대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재학생 및 유학생	2023.3.21.	120분	234	0.5
재학생	2023.5.9.	120분	42	0.3
	2023.5.23.	120분	104	0.6
	2023.9.26.	120분	349	0.3
	2023.11.28	120분	29	0.3
	2023.3.2.-12.31	120분	2,554	0
총장 및 보직교수 (고위직)	2023.10.17	120분	21	0.3
	2023.12.21	120분	19	0.3
교직원	2023.3.2.-12.31	240분	986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 대면 교육 각 1시간(총 2시간)
재학생 대상 비대면 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각 1시간(총 2시간)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대면 교육 각 1시간(총 4시간)
교직원 대상 비대면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각 1시간(총 4시간)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대면	8회	800	3.0
학생	비대면	1회	3,000	0
고위직 교직원	대면	2회	20	0.6
교직원	비대면	1회	960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 대면 교육 각 1시간(총 2시간)
재학생 대상 비대면 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각 1시간(총 2시간)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대면 교육 각 1시간(총 4시간)
교직원 대상 비대면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각 1시간(총 4시간)

- 지역 사립 K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2023년에 실시된 성범죄 예방 교육·훈련 일정과 교육시간, 인원, 예산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특히 교직원뿐만 아니라, 재학생 및 유학생, 총장 및 보직교수(고위직)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육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지역 사립 K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성범죄 예방 교육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K대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교육일정,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육 내용 등)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학 내 성범죄의 유형과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위직 교직원, 신입 교직원, 재학생, 유학생 등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의 결과와 계획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비상대비 교육·훈련

1) 사례 1: 지역 사립 Y대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 원	예 산
교직원	국립대학은 미시행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 통상적으로 10월 ~ 11월 경 을지태극훈련을 실시하지만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은 훈련을 미시행하는 것으로 정함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 정	횟 수	인 원	예 산
교직원	을지태극훈련	1	교직원 전체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을지태극훈련	▪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기존의 전시대비연습

2) 사례 2: 지역 사립 C대

2023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비상대비 훈련요원(교육)	2023. 5. 15.(월)	2h	50명	0
구성원 전체(훈련)	2023. 5. 16.(화)	2h	구성원 전체	0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항공기, 미사일 포격 등 비상대비 발생 시 비상대피소 이동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 도로를 군 작전로 및 응급 구조 차량 등의 비상차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 통제 훈련 -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2024년 교육·훈련 계획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구성원 전체	비상대비 훈련	1	구성원 전체	0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항공기, 미사일 포격 등 비상대비 발생 시 비상대피소 이동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 도로를 군 작전로 및 응급 구조 차량 등의 비상차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 통제 훈련 -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8) 기타

1) 사례 1(자살 예방 교육): 지역 국립 C대

8. 자살 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14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상담 센터	행정주사	박성배	053-950-6540, anybiz@knu.ac.kr	주관부서
팀원		심리상담 전문경력관	홍준연	053-950-2088, jyhong@knu.ac.kr	
		상담전문직	박한나	053-950-8190, hanna8688@knu.ac.kr	
팀원	학생과	조교	채상훈	053-950-2095, nabulgom@knu.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과	행정주사보	이풍현	053-950-2513, punghyun@knu.ac.kr	
팀장	교무과	행정주사	안재홍	053-950-2032 jhan77@knu.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 프로그램: 자살예방 교육 및 자살예방 캠페인
- 기 간 : '23. 3. ~ ' 24. 2.
- 대 상 : 또래 서포터즈, 학생, 교직원

구 분	대 상	교육일	교육시간	인 원	예 산
자살예방 교육	또래 서포터즈	23. 4. 26.(수)	1시간	11명	0
		23. 10. 12.(목)	1시간	17명	0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 특강	23. 5. 30.(화)	1시간	107명	0
	학생(온라인)	23. 3. 2.(목) ~ 11. 30.(목)	52분	426명	0
	교직원(온라인)	23. 3. 2.(목) ~ 11. 30.(목)	126분	334명	0
캠페인	학생	(대구) 23. 4. 13.(목)	3시간	200명	0
		(상주) 23. 6. 8.(목)	1시간	76명	0
		(대구) 23. 10. 19.(목)	2시간	200명	0
		(상주) 23. 10. 19.(목)	2시간	200명	0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자살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자살신호 인식과 적극적 대처방법 노하우를 위한 교직원용, 학생용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 운영을 통해 대학생 정신건강 점검 및 자살예방문화 확산 - 생명존중 포토존 운영, 온라인 생명사랑서약, 자살예방홍보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 프로그램 :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예방 캠페인
- 기 간 : '24. 1학기 및 2학기
- 대 상 : 또래 서포터즈, 학생, 교직원, 기숙사 입소생

구 분	과 정	횟 수	인 원	예 산
자살예방 교육	또래 서포터즈	2회	40명	0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 특강	1회	100명	0
	학생(온라인)	1회	400명	0
	교직원(온라인)	1회	300명	0
캠페인	학생(대구 및 상주)	4회	600명	0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자살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자살신호 인식과 적극적 대처방법 노하우를 위한 교직원용, 학생용, 기숙사 신규입소 학생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 운영을 통해 대학생 정신건강 점검 및 자살예방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오스크 캠페인, 생명사랑서약, 자살예방홍보

2) 사례 2(사이버 보안 교육): 지역 국립 C대

9. 사이버 보안교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팀장	정보화본부	전산주사	서영숙	053-950-8675, ysseo@knu.ac.kr	주관부서
팀원	정보화본부	전산직	박상길	053-950-8676, fifi20@knu.ac.kr	
팀장	총무과	행정주사	손영락	053-950-2552, sony@knu.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과	행정주사보	이주형	053-950-2554, fair72000@knu.ac.kr	
팀원	교무과	행정주사보	한영빈	053-950-2033, 2008013027@knu.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 원	예 산
학생	-	-	-	-
교직원	2023.6.1.(목) ~ 2023.10.31.(화)	60분	576	-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정보보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시대 사이버보안 ▪ 다크웹과 랜섬웨어 ▪ 사이버 환경의 위협요인과 우리가 해야 할 일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 정	횟 수	인 원	예 산
학생	-	-	-	-
교직원	신규교육훈련	1회	500	-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사회, 정보보호의 중요성

○ 지역 국립 C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교육부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제시된 일곱 가지 유형의 안전 교육·훈련 사례 이외에 자체적으로 두 가지의 교육·훈련 사례(자살 예방 교육, 사이버 보안 교육)의 결과와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음.

- 필요에 따라 두 가지의 교육·훈련 사례들을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요약 및 정리

- 각 유형별 안전 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과 관련된 데이터를 포괄적으로만 작성하거나,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각 대학에서 이미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인 안전 교육·훈련 내용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존재함.
 - 각 대학에서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인 안전 교육·훈련 관련 데이터(교육 일정, 교육 시간, 교육 대상, 참석 인원, 소요 예산 등)를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안전 교육·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인 안전 교육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 안전관리계획 양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내 주요 행사 때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행사 맞춤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안전관리계획 양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각 행사별(예컨대 해외 탐방, 동아리 홍보문화제, 논술고사, 예체능 계열 실기고사, 대학 축제 등)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목록 작성 권고
- 연구실 안전교육의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서, 대학 안전관리계획 내에 연구실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이수율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감염병(식중독, 인플루엔자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교육·훈련이 제시될 수 있도록 대학안전관리계획 양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양식을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항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교육, 비상사태 교육·훈련 항목을 대학안전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대학안전관리계획이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대학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연구실 사고), 범죄(일반범죄, 성범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영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제시되어 있는 7가지 교육·훈련 유형 이외에, 자살 예방교육 및 사이버 보안교육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I. 안전관리계획 작성 실무자 심층 면담 분석

1. 수도권 사립 A대 담당자 심층 면담 분석

(1) 심층 면담 개요

- 면담 일시: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14:00 ~ 15:00 (약 1시간)
- 면담 장소: A대 시설안전팀 내부 회의실
- 면담자: 이주호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연구초빙교수; 공동연구원)
- 면담대상자: K (A대 시설안전팀 팀원; 익명처리)
- 면담 방법: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담

(2) 인터뷰 질문지(면담 전 작성)

○ Interviewee 담당 업무 소개

: 대학 안전 관리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가?

○ 소속 소개

: 대학 안전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가?

: 만약 있다면, 그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가?

: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대학 안전 관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 조직 구성, 전체예산, 각 구성원 별 담당 업무 등

: 만약 없다면, 어떠한 업무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가?

: 예산과 상황이 허용한다면 대학 안전 관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기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언제쯤 작성해서 공시하는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가?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적합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방법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총 몇 명이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여하는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효과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의무화하기 전과 비교해서 대학의 사고 예방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학교 안전사고 처리 사례

: 여러 사고 유형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

: 대학 안전사고 처리 시 잘 처리된 사례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하나씩 제시

: 어떤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가?(ex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체제 마련 미비)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 방안

: 대학안전관리계획이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기타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안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공시 이외에 실질적으로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 각 대학별 문항(A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분석)

1-1. 안전관리계획 중 대학 안전사고가 최근 3년 간 총 52건이 발생하였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었으며, 원인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2.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대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투자 계획(배상책임보험 제외)이 있는가?

2. 교육시설 안전사고가 2021년 한 건이 발생하였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3. 연구실 사고 원인은 무엇이며,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이외 다른 종류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가?

5-1. 성범죄 관련 자료는 어떻게 수집되었는가?

5-2.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시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가?

6. 2023년 10월에 열린 재난안전훈련은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했으며, 어떠한 훈련이 실시되었는가?

7. 2023년 기준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8.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은 어떻게 도출되는가?

9. 성범죄 예방교육은 교내 어느 기관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가?

(3) 인터뷰 주요 내용 발췌

○ 면담 대상자 담당 업무

저희, 주로는 이제 저희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서브로 산업안전 업무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면담 대상자 소속 부서 업무

주는 사실 시설팀의 비중이 훨씬 크죠. 사실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 22년도에는 관리자 캠퍼스 안전팀 그리고 관리자 시설팀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 3월에 다시 이제 시설안전팀으로 합쳐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이제 안전관리 부서를 따로 이제 놔두는 게 좋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같이 시설안전팀에 묶여 있는 거죠.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기

저는 이제 방학을 하면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 위주로 좀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고 또 이제 2월달 되면 이제 신입생들이 저희가 입학할 하면 또 제가 신규 교육을 집체를 이제 한 몇 천 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충돌이 되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사실 3월 개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에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2월달에 이런 걸 또 하면 또 업무가 좀 같이 겹치고 부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차라리 안전 업무 쪽을 보면 일단 방학이나 개강했을 때가 좀 가장 바빠진 해요. 왜냐하면 안내할 것도 많고 이제 개강을 하면 학생들도 변동이 되고 그리고 연구실도 변동이 되고 또 교수님들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한 4~5월쯤에 그때가 이제 사실 이제 뭔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업무는 조금 이제 가짓수가 줄어드는 느낌이죠. 그래서 3월 달쯤에 공시를 해서 4월 중에 이제 어차피 지금 보통의 대학이 3월부터 2월까지이기 때문에 대학의 실정에 맞추면 한 4월 5월쯤에 이제 제출을 해서 이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

차라리 이제 3월에 개강이니까 그때 맞춰서 교육부에서 좀 기간을 좀 넉넉하게 공문을 내려주면 이제 4월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이제 보통 이제 3월달에 이제 인사 발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때 요청을 하면 사실 그 전임자들이 일 새로 배정받은 분들이 이런 업무를 또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하는 거죠. 아마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2월이 아마 제일 바쁠 거예요. 그래서 2월달에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는 이제 좀 다들 힘들 겁니다.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방법

제가 다 작성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요청을 드려도 거기서도 이제 제가 3년 치를 요청 어쨌든 이제 1년 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 공문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다른 업무도 바쁘고 이것도 이제 요청을 하면 또 생각보다 찾는 것도 사실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부서에 저희는 이제 이런 여기 쓰는 거 같은 연구실 같은 거는 저희가 다 공문을 써요.

제가 다 작성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요청을 드려도 거기서도 이제 제가 3년 치를 요청 어쨌든 이제 1년 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 공문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다른 업무도 바쁘고 이것도 이제 요청을 하면 또 생각보다 찾는 것도 사실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부서에 저희는 이제 이런 여기 쓰는 거 같은 연구실 같은 거는 저희가 다 공문을 써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써야 될 때에는 공문으로 이제 남겨놓으면 저는 찾기가 그나마 수월한 편인데. 사실 사고 났던 거라든지 이거는 아마 제목도 다 다를 거고 이게 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공문을 남기는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딱 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공문을 톡톡톡 써서 검색하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다른 부서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 자료를 찾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법적으로 무조건 공문을 작성을 해야 돼서 남겨놓는 게 아닌 자료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힘든 것 같긴 하죠. 바쁜 와중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니 일단 서로서로 부담이 되는 거죠. [...]

다른 사실 근데 이 사고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처리 절차가 여기도 보면 이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무인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 성범죄 이런 건 이제 인권센터에서 담당을 하는데 사실 뭐 만약에 저희가 이런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다 저희 팀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이런 게 사실 부서별로도 뭔가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아마 이거 제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걸 부서를 나눠서 만든 건지 제가 모르지만 만약 이 부서도 자기들이 이걸 해야 되나 모르실 수도 있어요.

○ 대학안전관리계획 효과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올리긴 하지만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 보셨겠지만 그 안전 공지가 있어요. 사실 그게 안전 공지를 만든 이유가 제가 연구실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공계열 학생 위주로 제가 공지를 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사실 다른 학생들 이거는 사실 전체 재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학생들이 거기를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너무 쓸데없이 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너무 페이지가 많잖아요. 다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학생들이 봤을 때... 뭐 해봤자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끝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엄청 딱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요즘 애들이 뭐 이렇게 글도 잘 안 읽고. 저희가 이거를 출력을 해서 저희가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안전자료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그런 안전 자료 같은 거를 배부를 해주긴 하는데 사실 거기 훑아봐서 애들이 안 보잖아요.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그냥 PDF 파일로 있으면 사실 학생들이 전혀 보지 않으면 사실 학생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제가 작성은 하지만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그런 아니면 뭔가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뭔가 정리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해요. 그래서 실효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 방안

좀 더 뭔가 좀 간결하게 다른 그런 부처의 법이나 이런 거랑 좀 충돌이 안 되게 뭔가 딱 정확한 지침이 나와서 나오면 더 실효성 있을 것 같아요. [...]

내용 같은 것도 뭔가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좀 약간 대학에 맞게, 대학이 그런 아무래도 그 관계 법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걸리는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뭔가 좀 교육부에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고등교육법 이런 거 위주긴 한데 안전 관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구실 안전법 소방법 LMO법 교육시설법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좀 다시 좀 실효성 있게 분류를 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좋지 않을까. [...]

이게 이제 안전 담당자로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법들이 좀 충돌이 되다 보니 이게 일을 두 번 세 번 똑같은 비슷한 거를 두 번 세 번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뭔가 교육부에서 힘 있게 탁 차라리 통합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는 이것만 그럼 연구실에 거 빼고 이것만 제출할게. 과기부 건 과기부에 내’ 이렇게 하든지 약간 그런 게 뭔가 딱 교육부에서 힘 있게 뭔가를 딱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 추가 제언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전체의 회사의 다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저희 대학교에 적용시키기가 진짜 애매해요. 저희는 학생이 메인인데 이게 학생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안전법이 없잖아요. 이공계는 사실 연구실 안전법인데 만약에 문과나 예술계 애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만약에 사망을 했으면 이게 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게 법적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를 대응을 하더라도 산업안전법에 의한 현업 종사자 그리고 이제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이공계 연구 활동 종사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사실 그 이공계보다 그 밖에 학생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문과나 그런 쪽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되게 뭔가 취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

뭔가 이게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 되게 많고 저희 법인에서도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컨설팅해서 저희가 또 학교에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 위주다 보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거와 이제 대학 실정이랑은 맞지 않는다.’ 그럼 이제 ‘교육부에서 조금 이제 뭔가 대학교에 맞는 그런 자세한 법적 그런 지침을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 정말 대학 실정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뭔가 좀 실효성 있게 뭔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면 좋지 않을까.

(4) 인터뷰 내용 요약 및 정리

- 수도권 사립 A대의 경우 대학의 안전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음. 안전관리팀에서 안전 관리와 시설 관리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 대학안전관리계획을 매년 봄(약 4~5월)에 작성하는 것이 안전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및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기간을 다소 여유 있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함.
 - 현재는 매년 1~2월에 작성을 하고 있으나, 이때는 개강 직전이므로 안전 관리 업무(신규 연구실 안전 교육 등)가 평소보다 많은 시기임. 따라서 시급한 다른 안전 관리 업무 처리로 인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매년 1~2월은 대학의 안전 관리 업무 담당자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함. 만약 안전 관리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업무 담당자가 업무 파악을 할 시간도 없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촉박하게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음. 불필요한 항목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꼭 필요한 항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학안전관리계획은 11개의 항목(자연재난, 사회재난, 대학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연구실사고, 감염병 확산, 일반범죄, 성범죄, 산업재해, 중대재해, 비상사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항목을 다루는 부서가 다른 만큼 각 부서의 협조(예컨대 감염병 확산 항목은 교내 보건소, 성범죄 항목은 교내 인권센터 등)를 요청해야 하는 데, 각 부서의 업무도 많은 상황이어서 업무 협조가 어려운 상황임.
 - 대학 안전 관리자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들(재난, 대학 및 연구실 안전사고, 산업재해 등)로 대학안전관리계획의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부서

와의 업무 협조 요청 없이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음.

- 전체 분량을 줄이고,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담도록 대학안전관리계획 양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전체 분량이 너무 많은 데다 내용이 다소 장황해서, 교원, 직원, 학생을 포함한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음. 대학안전관리계획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대학의 구성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담아서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매뉴얼(연구실 안전사고 매뉴얼 등)을 일원화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실 안전사고 매뉴얼은 과기부에도 따로 제출하고 있는데, 동일한 매뉴얼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서도 이중으로 제출하고 있음.
 -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전체 매뉴얼 체계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매뉴얼의 제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예컨대 연구실 안전사고 매뉴얼은 과기부에만 제출하는 방안 등).

2. 수도권 사립 B대 담당자 심층 면담 분석

(1) 심층 면담 개요

○ 면담 일시: 2024년 8월 6일 화요일 15:00 ~ 16:00 (약 1시간)

○ 면담 장소: B대 안전관리팀 내부 회의실

○ 면담자: 박현주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연구책임자)

이주호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연구초빙교수; 공동연구원)

○ 면담대상자: D (B대 안전관리팀 과장; 익명처리)

○ 면담 방법: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담

(2) 인터뷰 질문지(면담 전 작성)

○ Interviewee 담당 업무 소개

: 대학 안전 관리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가?

○ 소속 소개

: 대학 안전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가?

: 만약 있다면, 그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가?

: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대학 안전 관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 조직 구성, 전체예산, 각 구성원 별 담당 업무 등

: 만약 없다면, 어떠한 업무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가?

: 예산과 상황이 허용한다면 대학 안전 관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기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언제쯤 작성해서 공시하는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가?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적합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방법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총 몇 명이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여하는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효과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의무화하기 전과 비교해서 대학의 사고 예방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학교 안전사고 처리 사례

: 여러 사고 유형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

: 대학 안전사고 처리 시 잘 처리된 사례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하나씩 제시

: 어떤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가?(ex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체제 마련 미비)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 방안

: 대학안전관리계획이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기타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안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공시 이외에 실질적으로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 각 대학별 문항(B대 대학안전관리계획 분석)

(예시-1) 자연재난, 교육시설 안전사고, 일반범죄 부분의 피해현황, 원인분석, 예산투자현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예시-2) 사회재난 부분에서 최근 5년 간 총 1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1,960,000,000의 재산피해가 일어났는데, 화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이 교육부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과 동일한데 학교 자체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예시-3) 대학 안전사고, 연구실 사고, 산업재해 부분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이유는?

(예시-4) 재난안전훈련 부분과 비교하여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부분이 다소 포괄적으로 작성된 이유는?

(3) 인터뷰 주요 내용 발췌

○ 면담 대상자 담당 업무

학교에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업무는 연구실 쪽 연구실 관리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환경안전이라고 대학들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이제 정화조 시설 같은 그런 환경오염시설 방지를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고 최근 한 3~4년 전부터는 캠퍼스 안전이라고 캠퍼스 폴리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안전관리팀 내에서 이제 제가 중간 위치다 보니까 연구실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면담 대상자 소속 부서 업무

근데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산업법에 대한 강화 또는 중첩법의 시행 이런 얘기 이슈들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정책기획팀하고 이제 총장님도 그때 신경을 좀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경비, 캠퍼스 폴리스에 대한 권한을 안전관리팀으로 주면서 권한도 주고 그거에 대한 관리적 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서의 좀 그렇게 만든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었고요. [...]

지금은 연구실 소관 캠퍼스 안전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학생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캠퍼스 폴리스하고 외부 업체를 같이 조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공서 대응이라든가 이제 협조해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

저희는 지금 총 7명 부장님 포함해서 있고요.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총괄 업무하시고, 제가 캠퍼스 이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실 쪽도 같이 하면서 사고 대응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연구실 전담자가 1명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하고 보건안전, 산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계시고 소방 쪽 환경 쪽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만 이제 산업법 법령에 따라 구분하지만 사실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저는 일단 저희는 전체적으로 같이 팀에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세어해서 본인의 주 업무는 있긴 하지만 사고 대응, 사고 예방 활동, 어떤 안전문화 확산 활동 여러 가지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기

제 기억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이거에 대한 전년도에 대한 평가 또는 그걸 조치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고. 이게 변경된 예시안이 1월달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좀 늦게 왔었어요. 생각보다.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방법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거 자료 토대로 조금 이제 사실 작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대충 아시죠? 모든 학교가 대부분 비슷할 것 같고 초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계획이라든가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어서, 작성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그걸 토대로 제가 만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가 다시 또 이제 맞춰서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 [...]

저도 그냥 이거 할 때 제가 작성할 수 있는 부분 작성하고요. 주로 하는 게 이제 비상 연락망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수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 기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 넣고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메일 뿌려가지고 그 부분 작성해서 회신받고, 그걸 토대로 이제 필요하다면 품의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회의록을 돌리든 뭐든 해가지고 유관 부서들 의견 수렴한 다음에, 그거 올려서 총장 결재받은 다음에, 공시하고 그 정도 업무하고 있는 거여서.

○ 대학안전관리계획 효과

어... 이제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냥 의미가 딱히 없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 저도 이거 뭐 하지만은 쓸데가 두세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성할 때 첫 번째 한 번 한 달 정도 제가 좀 신경 쓰고 나머지 이제 대학 공시 자료 올릴 때 한 번. 그 외에 12월달에 어떤 공무 한 번 할 때 그거 외에는 딱히 쓸 일이 없어요. [...]

사실은 안 돼요. 관심 없으시고 결재 누르시는 게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법상 그렇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만 말씀드리면 중첩법이 더 데미지는 있었어요. 학교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은 있었어요. 시행될 때 저희 학교 총장님들 포함해서 법인하고 긴밀하게 대응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때 좀 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안전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대학 안전관리 계획 저희가 결재해달라고 하는 내용 안 보고 그냥 결재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저도 말씀드릴 때 그냥 “교육부 예시안 보고서는 작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이라 사실 저희장 관리처의 수장분들도 관심 있게 저한테 뭔가 질문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 방안

대학 안전 관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뭐가 저희가 작성하는 담당자도 될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거기에 범죄 예방 이런 기법 같은 거 막 기재해서 레퍼런스 다 달아놓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되나 저는 싫거든요. 그냥 각각 파트별로 간결하게 우리의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작년도에 대한 평가, 작년도에 교육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올해 교육은 어떻게 시행할 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왔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해줘도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그런 안전관리 계획도 예산에 대한 걸 저희가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간결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보여주기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앞에는 시행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뒤에는 또 이제 예산 예산도 써야 되고 그런 내용들 막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전문화 확산

이런 그런 교육 실적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포맷에 맞추기에 급급하지 이걸 토대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뭔가 개선에 대한 걸 갖다가 빌드업한다? 이거는 사실 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이걸 뭘 쓰라는 건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냥 아예 차라리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은 분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주시는 게... 그리고 예시안으로서 어떤 조직에 대한 구성? 그래서 부총장이든 총장이든 이런 보고 체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저희 사실, 폭우 내리고 태풍 왔는데 저희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라 정도 지침이나 이런 걸 주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보고 체계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갖고 있으면은 사실 그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고 대응,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 태풍이 온다고 예정이 되면 그거 예방은 뭘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정도로 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비상 연락만 갖추고. 이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나무 같은 데 한번 이렇게 좀 우거지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 미리 점검 같은 거 하라고. 지침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화재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지금 잘 돼 있는... 그런 매뉴얼, 그런 게 들어가면서 체크리스트 내용도 같이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작년도의 문제점은 뭐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럼 교육에 대한 부분,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기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저희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들이 사실 교육 시설 안전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시설물에 기인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고. 연구실 안전 사고라고 하는 실험실 어떤 활동에 의한 사고, 대학 안전사고라고 하는 학생들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사실 좀 어떻게 대비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간 교육부나 과기부 이런 데서 지침을 좀 많이 쫓던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을 차라리, [...]

좀 그래서 차라리 뺄 거는 과감하게 좀 빼고, 그냥 매뉴얼 위주로 조금 내용을 기입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건지와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끔 하고. 교육을 전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총평? 또는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간단 하게 하는 게... [...]

말씀하시던 재난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재난’ 이라는 걸로 하나로 해서. 이렇게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태풍, 지진 이 정도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사실 안전사고 내에 이렇게 분류했다고 한다면 화재를 그쪽에 그냥 인입시켜가지고 같이 그냥 나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

실제로 보면은 대학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화재, 연구실, 그리고 학생 사고, 그리고 시설물 관련 사고는 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뭐 이런 부분들이라 그냥 실제로 뭔가 있을 것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담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연재해나 이런 거를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걸 예방과 예방 점검. 태풍이 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예방 점검하고 그게 정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대학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정확한 가이드와 비상 연락망 너네가 추가해라 가이드를 대학에서 그냥 쓸 수 있게끔 바로 그냥 그 담당자가 하나 쓰고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내용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실험실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액션을 할 때 애들이 하도 안 해서 저는 그냥 다 제가 점검해서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다 갖다 주고 니네가 이거 사인해 뭐라도. 지금 그렇게 돈 주고라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라, 같은 방식으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그래도 읽어볼 거잖아요. 읽어보고 뭔가를 조치하고 내거기 들어오게 만들어오면 읽어보고 거기에는 뭔가 만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좀 정말로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추려서 담당자들이 좀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주시는 게... 이게 제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저도 지금 저희도 저희 부처장님이 또 업무 지켜주신 게 있긴 한데(웃음)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렵지만 사실 그런 매뉴얼 형태로 주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 추가 제언

연구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담자 1명에 겸직자 2명 선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 선임돼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별도로 선임하고 있고 병원 쪽에 안전관리자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약간 여러 가지 법이 있다 보니까, 의과대에도 지금 저희 연구실에도 선임돼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묶을 거면 다 묶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산업 안전보건법이 교육시설도 일부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론.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제외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게 여기서도 안전관리 계획이 있고, 여기서 안전관리 계획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캠퍼스 통제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떤 지역민에 대한 개방적인 그런 의무, 사회적 의무 이런 것도 그런 데 기여도 하다 보니까 학교 개교 이래에 저희가 문을 닫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오고요. 그런 거 올 때마다 또 노숙자며, 지금도 외국인 학생 지금 여학생인데 맨날 밤에 노숙하고 있어가지고 아까도 그것도 좀 보다 왔었는데. 그런 이슈들에 대한... 웬지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것 같아서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고받는 사람들은 애가 보고를 하면 어쨌든 애네들이 관리를 주관한다 생각하시고 사고가 나도 니네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죠. 사실 주말 야간 이런 거 상관없이 상황실이야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노동자들이 독방에 올려서 좀 보고 하지만 저는 그 사고에 대해서 온전히 제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대학에는 진짜로 너무 많은 사고 유형과 그 상상하지도 못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 워낙 다양한 사고의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고.

(4) 인터뷰 내용 요약 및 정리

- 수도권 사립 B대의 경우 대학의 안전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안전관리팀)가 존재하며,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작성한 후, 2월 말 경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함.
-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예시(안) 및 과거 자료를 토대로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함. 담당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한 후, 그 부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합하는 방식으로 작성함.
- 대학안전관리계획 양식 및 내용을 간결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학안전관리계획에 작성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고, 작성해야 할 내용도 다소 장황함. 따라서 주어진 양식 내 숫자를 채워 넣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실질적인 효과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감염병, 비상사태 등 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대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재난, 화재, 학생 사고, 연구실 사고, 시설물 관련 사고 등) 중심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양식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용도 각 항목별 계획, 예산, 교육, 전년도 계획 및 교육에 대한 총평 정도로 간략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양식을 현재의 현황 중심에서 매뉴얼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특정한 사고 예방을 위한 각 대학별 체크리스트 및 비상 연락망, 그리고 특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지침을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면, 대학안전관리계획이 각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3. 지역 국립 C대 담당자 심층 면담 분석

(1) 심층 면담 개요

- 면담 일시: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16:00 ~ 17:00 (약 1시간)
- 면담 장소: C대 안전관리총괄본부 내부 회의실
- 면담자: 이주호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연구초빙교수; 공동연구원)
- 면담대상자: K (C대 안전관리총괄본부 중대재해팀장; 익명처리)
- 면담 방법: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담

(2) 인터뷰 질문지(면담 전 작성)

- Interviewee 담당 업무 소개
: 대학 안전 관리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가?
- 소속 소개
: 대학 안전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가?
: 만약 있다면, 그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가?
: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대학 안전 관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 조직 구성, 전체예산, 각 구성원 별 담당 업무 등

: 만약 없다면, 어떠한 업무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가?
: 예산과 상황이 허용한다면 대학 안전 관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기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언제쯤 작성해서 공시하는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가?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적합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방법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총 몇 명이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여하는가?

○ 대학안전관리계획 효과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의무화하기 전과 비교해서 대학의 사고 예방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학교 안전사고 처리 사례

: 여러 사고 유형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

: 대학 안전사고 처리 시 잘 처리된 사례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하나씩 제시

: 어떤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가?(ex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체제 마련 미비)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 방안

: 대학안전관리계획이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기타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안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공시 이외에 실질적으로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3) 인터뷰 주요 내용

○ 면담 대상자 담당 업무

- 건물 보수, 신축 등을 담당하는 시설과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대학 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 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 면담 대상자 소속 부서 업무

- C대에서는 2021년 대학교 안전(자연 및 사회 재난, 방사선 안전, 연구실 안전, 대학 시설 안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업무 등) 업무만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총괄본부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곳에서 대학교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안전관리총괄본부는 크게 산업 안전, 대학 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 연구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실 안전 관리 센터, 방사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사선 안전 관리 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관리총괄본부에서 재직 중인 전체 직원은 총 8명임.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기

- 일반적으로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에서 매년 2월 전후로 당해연도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함.
- 하지만 교육부의 공문과 상관없이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며, 2월 말 경에 작성 완료 후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를 함.
- 공문과 상관없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만큼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음.
- 또한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적합한 시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함. 지금처럼 매년 1~2월에 작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음.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방법

- 혼자서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모든 항목을 일일이 작성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교내 여러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 예컨대, 성범죄 관련 업무는 교내 인권센터, 학생 안전사고 관련 업무는 학생과, 학교 시설 관련 업무는 시설과, 연구실 안전 사고 관련 업무는 연구실 안전 관리 센터, 그 밖에 총무과나 정보화 본부 등과 업무 협조를 하면서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하면서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합해야 하는 만큼 자료 수합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함.

○ 대학안전관리계획 효과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면서, 교내 구성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학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 방안

- 기존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은 따로 없음.
- 다만 교내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조를 하면서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합해야 하는데, 종종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음.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항목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항목들 중 다른 정부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음. 예컨대 연구실 안전 관리 관련 항목들은 이미 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있음. 중복되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추가 제언

- 총장님께서 대학 내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따라서 대학 안전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배정되고 있음.
-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총괄본부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교육안전정책과와 교육시설과의 업무 내용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경우가 있음.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타부서와 업무 협조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많음. 특히 대학 안전 관련 업무는 총무과 및 시설과 업무와도 중복되어 있어, 타부서와의 업무 협조 없이 안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움. 안전관리총괄본부의 역할 및 기능이 확대되어서 이곳에서 대학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면, 대학 안전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인터뷰 내용 요약 및 정리

- 비수도권 국립 C대의 경우 대학의 안전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안전 관리총괄본부)가 존재하며,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현재 총장이 대학 안전 관련 업무에 관심이 많으며, 이로 인해 대학 안전 관리 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배정되고 있음.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교육부의 공문과 상관없이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에 작성한 후, 2월 말 경에 공시를 함.
 - 교육부의 공문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시간이 부족하지 않음.
- 담당자가 교내 여러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데이터를 수합하면서 대학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 교내 여러 부서(교내 인권센터, 학생과, 시설과, 연구실 안전관리 센터, 총무과 등)와 업무 협조를 해야 하는 만큼, 자료 수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음.
-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항목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게 되면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가 줄어들며, 효율적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
-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항목들 중 다른 정부 부처(과학기술부 등)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연구실 안전 관련 내용은 이미 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IV. 해외 주요 국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사례 분석

1. 일본 사례 분석

- 한국은 <고등교육법> 이라는 기준법에 따라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일본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기준법 없이, 위험요인과 관련된 주요 법을 참고로 각 대학이 계획 수립,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대응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관리체제에 의해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대학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는 ‘국립대학법인화’ 시작 시기인 2004년 4월임. 이후부터 국, 공, 사립대학 모두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대학이 안전위생관리의 주체가 되었음.
 - 단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연구 수행의 자유도와 안전관리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대학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학부·대학원)은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인해, 대학안전관리 시작이 활발하지 못했음. 초기에는 개별 대학의 학부 또는 연구실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대학 실험실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대학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小山, 2011).
- 한국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에서 구분하는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학안전관리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및 대학 환경안전보고서 작성을 통한 안전관리: 도쿄대학

- 도쿄대학은 일본의 대표 대학으로 어느 대학보다도 발빠르게 대학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였음. 도쿄대학은 총장 이하 탑다운에 의거, 대학 전체의 안전관

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환경안전본부’ (環境安全本部)를 설치하였음.

- 이는 매월 1회 개최되는 대학 전체 차원의 ‘환경안전관리실 회의’ 운영, 산업보건, 화학물질 관리, 방사선관리, 사고·재해 보고, 방화대책, 방재대책, 야외활동, 석면 대책, 시설 순시 등을 담당함.

○ 도쿄대학 안전관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대학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상당히 정비되어 있음. 도쿄대학의 안전관리 규정은 총 24개로, 목록은 다음과 같음.

- 1) 국립대학법인 도쿄대학 안전위생이념 및 기본방침
- 2) 도쿄대학 환경이념/도쿄대학 환경 기본방침
- 3) 도쿄대학 교직원의 환경안전위생관리 규정
- 4) 도쿄대학 환경안전위생관리 조직의 책임 및 권한
- 5) 도쿄대학 환경안전본부 내규
- 6) 도쿄대학 환경안전 총괄위원회 규칙
- 7) 도쿄대학 방사선장애 방지에 관한 관리규정
- 8) 도쿄대학 환경안전관리규칙
- 9) 도쿄대학 방재기본규칙
- 10) 도쿄대학 방화관리규정
- 11) 도쿄대학 화학물질관리규정
- 12) 도쿄대학 고압가스관리규정
- 13) 도쿄대학 야외 교육연구활동에 관한 안전위생규정
- 14) 도쿄대학 금연대책선언/도쿄대학 금연대책 기본방침
- 15) 도쿄대학 원자력시설 품질방침
- 16) 도쿄대학 혼고지구 사업장 안전위생위원회 규칙
- 17) 도쿄대학 고마바지구 사업장 안전위생위원회 규칙
- 18) 도쿄대학 가시와지구 안전위생위원회 규칙
- 19) 도쿄대학 가시와II지구 안전위생위원회 규칙
- 20) 도쿄대학 가미오카지구 안전위생위원회 규칙
- 21) 도쿄대학 시로가네다이지구 사업장 위생위원회 규칙
- 22)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안전위생위원회 내규
- 23) 도쿄대학 교육학부 부속중등교육학교 사업장 안전위생위원회 규칙

24)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계연구과 원자력전공 위생위원회규칙

- 둘째, 2006년부터 매년 '도쿄대학환경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고 있음. 이는 <환경정보의 제공 촉진 등에 의한 특정사업자 등의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배려촉진법)에 의거하여 작성, 공개되고 있음.
- 이 법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환경 보전에 대한 배려가 적절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사업자 등에게 환경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023년 보고서의 목차를 통해, 도쿄대학의 대학안전관리 분야를 파악할 수 있음.

1. 총장 인사말
2. 편집 방침
 - 2.1 보고 대상 범위, 보고 대상 기간, 편집 방침, 설문조사에 대하여, 도쿄대학 환경보고서 워킹그룹에 대하여
 - 2.2 도쿄대학 환경이념 · 환경기본방침
3. 도쿄대학 개요
 - 3.1 도쿄대학 거점 · 시설분포
 - 3.2 대학 활동과 환경부하(負荷) 전체상
 - 3.3 전학적 환경안전 매니지먼트 체제
 - 3.4 2022년도 목표설정 및 달성상황
4. 도쿄대학의 책임과 역할
 - 4.1 도쿄대학 행동방침
 - 4.2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도쿄대학의 책임과 역할
5. 환경안전관리 활동
 - 5.1 에너지 · 물 사용
 - 5.2 폐기물 관리
 - 5.3 환경관련 법규제 준수 상황
 - 5.4 PRTR 제도
 - 5.5 PCB
 - 5.6 석면
 - 5.7 SDGs에 대한 공헌
 - 5.8 Race to Zero에 대한 대응

6. 환경 관련 교육·연구
 - 6.1 삼림모델에 의한 세계 CO2 흡수량 평가
 - 6.2 고온고압수를 용매로 한 합성과 미이용 자원 이용
 - 6.3 지진관측 데이터 유통과 실시간 지진해석 시스템
 - 6.4 가스 폭발 재해 리스크 절감을 위한 현상 밝힘
 - 6.5 환경문제, 재해와 집합현상연구의 왕래
 - 6.6 백신으로부터 지구의 건강을 고찰하다: 이타적 과학과 디자인의 근미래
7. 환경 관련 학생 활동
 - 7.1 도쿄대생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의식 조사 2022
 - 7.2 지속가능한 도쿄대를 함께 창조하기 위한 UTokyo Sustainable Network의 궤적
8. 지역과의 공생, 협동
 - 8.1 지역 해양 마이크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 연구
9. 다양성 관련 활동
 - 9.1 배리어프리 지원실
 - 9.2 장애인 고용 활동
 - 9.3 남녀공동참가
10. 캠퍼스 안전위생
 - 10.1 안전위생순찰
 - 10.2 총장의 안전위생 순찰
 - 10.3 사고재해보고
 - 10.4 안전의 날 강연
 - 10.5 2022년도 도쿄대학 본부방재훈련
11. 환경보고서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 11.1 제3자 의견
12. 마치며

○ 목차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도쿄대학의 환경부하에 관한 데이터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배려, 지속가능성, GX(Green Transformation) 및 환경안전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임.

- 특히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포용성에 대한 내용(9장)도 포함됨.

(2) 재난(자연재해) 대응 체계: 도호쿠대학

- 1990년대 이후 발생하여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지진은 ‘1995년 효고현 남부 지진(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 ‘2024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 등으로 모두 지진 규모인 매그니튜드 7 이상의 강진이었습니다.
-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과 관련해서 큰 피해를 입은 미야기 현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도호쿠대학’ (東北大學)의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안전관리, 즉 다른 대학에서도 구축하고 있는 대학안전관리체계와 함께, 특화된 안전관리(지진 중심)를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4월 1일 현재 도호쿠대학은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위생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학 전체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는 ‘환경·안전 추진 센터’ 로, 이는 노동안전위생실, 환경·안전추진실, 환경 매니지먼트 추진실의 3개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실의 구성과 담당 업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법률
노동안전위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과학연구소(대학원) 산업의학분야 산업의 7인 ■ 대학 구성원 건강상담, 건강진단 결과를 통한 채용관정 등 지도, 산업위생 및 공중위생 등의 보급과 계발 활동
환경·안전추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동과: 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안전유지, 노동재해 보상, 특정화학물질등의 관리, 그 외 안전위생관리 관련 사항 ■ 연구컴플라이언스추진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에 관한 허가신청제출 및 방사선장애 예방, 유전자 재조합 실험의 승인 신청 등, 동물실험의 승인신청 등에 관한 사항
환경매니지먼트 추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환경과 : 환경보전 및 안전위생관리 상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공사 실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또한 재난(지진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재해대책추진실(災害対策推進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교훈을 살려, 대학 전체의 재해대책에 관한 체제 강화 및 종합적 재해대책의 추진을 위해 2013년 설치되었습니다.

- 재해대책추진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도호쿠대학의 재해 대책 매뉴얼에 해당하는 ‘본부사업기구 방재·업무계속계획’ (약칭, 본부 BCP)을 제작, 배포하는 것임. 이는 2016년 3월 24일 처음 발간된 이후 10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가장 최신판은 2023년 5월 1일에 발간(개정 제10판)되었음.

1. 총칙

1.1 기본방침

2. 계획·문서체계

2.1 계획·문서의 위치

2.2 적용 범위

2.3 문서관리 및 게시범위

3. 상정하는 위기사항

3.1 상정하는 위기사항

4. 위기사항 발생 시 대응체제

4.1 재해대책본부

4.2 중요업무일람 및 역할분담

5. 초동대응

5.1 재해대책요원 집합(参集)

5.2 피해상황 수집

5.3 안부 확인

6. 액션 파일(Action file)

6.1 액션 파일이란

6.2 액션 파일 사용법

6.3 발생이 예상되는 진행형 재해 대응 타임라인에 대하여

7. 사전대책의 실시계획

7.1 본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전대책

8. 본부 BCP의 유지 개선(업무 지속 매니지먼트: BCM)

8.1 업무 지속 매니지먼트(BCM) 추진체제

8.2 본부 BCP에 기반한 훈련 실시

8.3 유지·개선 계획

첨부 자료

○ 위 자료는 개정 제10판 ‘본부사업기구 방재·업무계속계획’ (약칭, 본부 BCP)의 목차로, 도호쿠대학 재해대책추진실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함. 외부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제1장부터 제8장의 내용만 공개하고 있음.

(3) 야외활동, 학외활동, 실험실활동 안전관리: 규슈대학

○ 규슈대학은 야외활동, 학외활동, 실험실활동으로 교육·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매뉴얼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

구분	정의
야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외를 불문하고, 자연환경 하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나 제1차산업(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과 관련된 야외나 생산현장(비닐하우스, 축사, 선박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함
학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외에서 실시하는 정규 수업과목의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함. 대인·사회관계 관련 교육활동, 교육현장에서의 이동·조사, 체재(해외도항 조사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함. 구체적으로 인터뷰 조사, (참여)관찰, 실측, 임상실습, 임지실습, 인턴십 등이 해당함
실험실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이나 연구에 있어 실험실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함

○ 야외활동의 경우, 2016년 9월 6일 대학 종합과목인 ‘필드과학 입문: 야쿠시마 프로그램’ 실시 기간 중 문학부 학생이 강에서 익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규슈대학은 이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이후 교육기획위원회에 ‘수업실시에서의 안전관리검토 워킹그룹’ (授業実施における安全管理検討WG)을 설치, 학외활동 매뉴얼을 작성하였음.

- 현재 가장 최신판은 2021년 10월 발생한 것으로, 목차는 아래와 같음.

제1장 야외활동 실시를 위한 기본 주의사항

제2장 야외활동의 전후(前後)

2.1 사전조사와 마음가짐

2.2 안전관리체제와 야외활동계획

2.2.1 학내관리체제

2.2.2 야외활동계획

2.2.3 야외활동 계획·실시 관련 신고

(1) 교육에서의 야외활동 실시계획서·실시 신청서 신고

1) 교육에서의 야외활동 실시계획서 신고

2) 교육에서의 야외활동 실시 신청서 신고

(2) 학생주체의 야외연구활동 관련 신고

2.2.4 야외활동의 실시여부

2.2.5 야외활동 실시 후의 활동

2.2.6 보험

양식 1 교육에서의 야외활동 실시계획서

양식 1 교육에서의 야외활동 실시계획서 기입 예시

양식 2 교육에서의 야외활동 실시 신청서

양식 2 교육에서의 야외활동 실시 신청서 기입 예시

양식 3 (참고) 학생주체의 야외연구활동 사전 신청

양식 4 사고, 사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불안정보

양식 4 사고, 사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불안정보 기입 예시

제3장 야외활동 안전대책

3.1 전반적 안전대책

3.1.1 계획입안 시 안전대책

3.1.2 활동실시 전 안전대책

3.1.3 활동개시 시 안전대책

3.1.4 활동개시 중 안전대책

3.1.5 활동실시 후 안전대책

3.2 활동별 안전대책

3.2.1 육지

(1) 삼림, 산악

(2) 농지

(3) 초지, 들판

(4) 지질조사

(5) 화산조사

(6) 임업활동

(7) 농업활동

(8) 축산활동

3.2.2 수역(水域)

(1) 수역 전반

(2) 계류(溪流), 하천

(3) 해역, 호수·늪지

(4) 상선(船上) 활동

(5) 잠수 활동

제4장 위해 동물, 식물 등 대책

4.1 육지

4.1.1 절지동물

(1) 벌

(2) 참진드기

4.1.2 파충류, 양서류

(1) 뱀

4.1.3 포유류

(1) 곰

(2) 멧돼지

(3) 원숭이

4.1.4 기타

(1) 거머리

(2) 포낭충

4.1.5 수목

(1) 옷나무류

4.2 수역

4.2.1 어류

(1) 지느러미에 독선을 가진 쏘종개 등

(2) 꼬리에 독이 있는 홍어 등

(3) 상어류

4.2.2 해파리류

(1) 등해파리

(2) 고갈해파리

4.2.3 기타

- (1) 꽃계류
- (2) 긴 가시 성계
- (3) 푸른점문어
- (4) 영원(蝶鰓)

제5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

5.1 사고발생 시 현지에서의 참여자의 대응

5.1.1 사고상황의 파악과 대처

- (1) 사고상황의 파악
- (2) 참여자의 안전확보, 안부확인
- (3) 구호자의 안전확보
- (4) 피해자에의 접근
- (5) 구호자, 피해자의 안전확보
- (6) 피해자의 부상 상황 확인
- (7) 119 통보 또는 의료기관에의 이송
- (8) 구급 소생(응급처치, 일차 구급처치)

5.1.2 대학으로의 연락, 현지에서의 사고 후 대응

5.2 사고발생부터의 대학의 대응

5.2.1 첫 연락을 받은 이후

5.2.2 대책반 설치

5.2.3 기타

제6장 구급 소생

6.1 구급 소생의 기본

6.2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체위

6.3 응급처치

6.3.1 찰과상, 베인 상처

6.3.2 출혈

6.3.3 염좌, 타박상, 골절

6.3.4 열사병

6.3.5 화상

6.3.6 동상

6.3.7 익수

6.3.8 아나필락시스

6.3.9 기타

6.4 일차 구급처치

6.4.1 심폐소생 순서

- (1) 안전 확보
- (2) 반응 확인
- (3) 119 통보 및 AED 준비
- (4) 호흡 관찰
- (5) 흉골 압박 실시

6.4.2 AED 사용 순서

- (1) AED 지참
- (2) AED 준비
- (3) 전원 입력
- (4) 전원 패드 붙이기
- (5) 심전도 해석
- (6) 전기 충격을 통한 심폐소생 재개
- (7) 심폐소생과 AED 순서 반복
- (8) 구급대에 인계

6.5 구급용품

6.6 심리적 일차 구급처치

○ 학회활동의 경우, 현재 가장 최신판은 2021년 10월 발행한 것으로, 목차는 아래와 같음.

- 학외활동에는 제3장의 3.6에서와 같이 ‘해외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규슈대학은 ‘규슈대학 7단계: 학생 해외 도항에 관한 전학적 위기관리체계 정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이는 문부과학성이 2017년 3월 발표한 ‘대학의 해외유학에 관한 위기관리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한 것임.

제1장 학외활동 실시를 위한 기본 주의사항

제2장 학외활동의 전후(前後)

2.1 사전조사와 마음가짐

2.2 안전관리체제와 야외활동계획

2.2.1 학내관리체제

2.2.2 학외활동계획

2.2.3 학외활동 계획·실시 관련 신고

(1) 교육에서의 학외활동 실시계획서·실시 신청서 신고

- 1) 교육에서의 학외활동 실시계획서 신고
- 2) 교육에서의 학외활동 사전 신고 제출

(2) 학생 팀 학외연구활동 관련 신고

- 1) 교육에서의 학외활동 실시계획서 신고
- 2) 학생 팀 학외연구활동 실시 신고 제출

(3) 학생주체의 학외연구활동 관련 신고

2.2.4 학외활동의 실시예

2.2.5 학외활동 실시 후의 활동

2.2.6 보험

양식 1 교육에서의 학외활동 실시계획서

양식 1 교육에서의 학외활동 실시계획서 기입 예시

양식 2 교육에서의 학외활동 실시 신청서

양식 2 교육에서의 학외활동 실시 신청서 기입 예시

양식 3 학생 팀 학외연구활동 사전 신고

양식 3 학생 팀 학외연구활동 사전 신고 기입 예시

양식 4 (참고) 학생주체의 학외연구활동 사전 신고

양식 4 (참고) 학생주체의 학외연구활동 사전 신고 기입 예시

양식 5 사고, 사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불안정보(학외활동)

양식 5 사고, 사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불안정보(학외활동)

기입 예시

제3장 야외활동 안전대책

3.1 전반적 안전대책

3.1.1 계획입안 시 안전대책

3.2 활동 실시 전 안전대책

3.2.1 실시 전 신고

3.2.2 복장

3.2.3	일반 장비 준비
3.2.4	특수 장비 준비
3.2.5	컨디션 관리
3.2.6	구급 준비
3.3	활동개시 시 안전대책
3.3.1	연기, 변경, 중지, 지각, 결석 등에 대한 연락
3.3.2	교원-학생 간 연락
3.3.3	현지 안전확인
3.4	활동실시 중 안전대책
3.4.1	컨디션 관리
3.4.2	과목 책임자-학생 관계
3.4.3	학생-대상지 관계
3.4.4	대인 리스크
3.4.5	대사회 리스크
3.4.6	관계 관리
3.4.7	외부로의 연락
3.5	활동실시 후 안전대책
3.5.1	귀착(歸着) 중
3.5.2	귀착(歸着) 보고
3.5.3	개선점 공유
3.5.4	사후관리
3.6	해외에서의 학외활동에 관하여
3.6.1	활동실시 전 안전대책
3.6.2	활동실시 중 안전대책
3.7	학외활동 안전대책 체크리스트
제4장	사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4.1	사고, 사건 발생 시 현지에서의 참여자 대응
4.1.1	사고, 사건 상황 파악과 대처
4.1.2	대학에의 연락, 현지에서의 사고 후 대응
4.2	사고, 사건 발생부터 대학의 대응
4.2.1	첫 연락을 받은 이후
4.2.2	대책반 설치

4.2.3 기타

제5장 구급 소생

5.1 구급 소생의 기본

5.2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체위(일본구급의료재단 심폐소생법 위원회, 2015)

5.3 응급처치(일본구급의료재단 심폐소생법 위원회, 2015)

5.3.1 찰과상, 베인 상처

5.3.2 출혈

5.3.3 염좌, 타박상, 골절

5.3.4 열사병

5.3.5 화상

5.3.6 동상

5.3.7 익수

5.3.8 아나필락시스

5.3.9 기타

5.4 일차 구급처치

5.4.1 심폐소생 순서

5.4.2 AED 사용 순서

5.5 구급용품

5.6 심리적 일차 구급처치

자료 학외활동 관련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모음집: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실험실활동의 경우, 현재 가장 최신판은 2021년 10월 발행한 것으로, 목차는 아래와 같음.

- 내용 중 제3~11장, 제14~15장은 규슈대학 대학원 종합이공학부의 ‘안전 방침’을 옮겨 기재한 것임. 이처럼, 대학에서 관련 학부 또는 대학원에 관련 자료/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한 것이 특징임.

제1장 실험실활동 실시를 위한 기본 주의사항

제2장 실험실활동의 준비와 실시

2.1 사전조사와 마음가짐

2.2 안전관리체제와 실험실활동계획

2.2.1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2.2.2 실험실활동 준비에 대하여

2.2.3 실험실활동 실시에 있어

2.2.4 보험

양식 1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정보

양식 1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정보 기입 예시

제3장 실험실 활동 시작 전: 연구실에서의 위험성 인식과 대책(리스크 평가)

제4장 화학 약품의 안전한 취급

4.1 일반적 주의

4.2 화재 예방: 소방법 위험물에 대하여

4.2.1 자연발화성물질

4.2.2 금수성물질(禁水性物質)

4.2.3 저온착화성물질

4.2.4 강산화성물질

4.2.5 산화성액체

4.2.6 폭발성물질 및 자기반응성물질

4.2.7 인화성물질

4.3 유독성물질

제5장 배출수와 폐기물 처리

5.1 들어가며

5.2 폐기물 분류와 폐기·처리방법 개요

5.3 규슈대학의 폐기물 처리

5.4 규슈대학 안전관리 센터에 대하여

5.5 배출수 수질관리와 물 순환이용

5.5.1 배출기준

5.5.2 규슈대학의 물 순환이용

5.6 실험계 폐기물 처리

5.6.1 무기계폐액(無機系廢液)

5.6.2 유기계폐액

5.6.3 산·알칼리폐액

5.6.4 폐약품

5.6.5 합수은폐기물

5.6.6 감염성의료계폐기물

5.6.7 유해물질 함유 고형폐기물(진흙형 폐기물 등)

5.6.8 실험계 분류 쓰레기

5.7 생활계 쓰레기 처리

5.7.1 사업계 일반 폐기물

5.7.2 폐지

5.7.3 병, 음료수 캔, 페트병

5.7.4 발포 스티로폼

5.7.5 폐형광관 등

5.7.6 폐건전지, 배터리

5.7.7 스프레이 캔

5.7.8 금속 부스러기

5.7.9 대형쓰레기

5.7.10 규슈대학 web 재활용 시스템

제6장 고압 가스 및 위험가스의 안전한 취급과 고압·진공 실험 등의 주의

6.1 고압가스 용기(бом베)의 취급

6.1.1 표시

6.1.2 운송상 주의

6.1.3 설치·보관상 주의

6.1.4 사용상 주의

6.2 위험 가스 취급

6.3 고온, 저온실험 주의

6.3.1 고온실험

6.3.2 저온실험

6.4 고압, 진공실험 주의

6.4.1 고압실험

6.4.2 배관

6.4.3 진공실험

제7장 기계류의 안전한 취급

7.1 일반적 주의사항

7.2 공구

7.3 공작기계

7.3.1 주의사항

7.3.2 선반

7.3.3 드릴 프레스

7.3.4 프레이즈반

7.3.5 그라인더

7.3.6 핸드 드릴

7.3.7 고속절단기

7.4 용접

7.4.1 주의사항

7.4.2 가스용접

7.4.3 전기용접

7.5 운반작업

7.5.1 주의사항

7.5.2 수레를 사용하는 운반작업

7.5.3 크레인, 휘스트를 사용하는 운반작업

7.5.4 와이어로프로 짐을 감거나 운반 신호를 하는 작업

제8장 전기 안전대책

8.1 감전과 대책

8.1.1 옥내배전선, 전기기기, 누전에 의한 감전과 대책

8.1.2 고전압기기에 의한 감전과 대책

8.1.3 전자, 정보기기에 의한 감전과 대책

8.1.4 잘못하기 쉬운 배선, 사용 예시

8.2 OA기기 사용상의 주의

8.3 휴지기 재사용 시 주의

8.4 과열에 의한 화재와 대책

8.5 전기 불꽃에 의한 가연성 가스 등의 착화

8.6 사고방지를 위한 점검항목

8.7 전기와 관련된 규격 등

제9장 빛과 방사선 안전대책

9.1 자외선 및 레이저 빛

9.1.1 자외선

9.1.2 레이저 빛

9.2 방사선 안전대책

9.2.1 방사선 · RI ·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의

9.2.2 방사선 · RI 사용에 있어

9.2.3 방사선 방호의 원칙

9.2.4 X선 발생장치 및 인증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9.2.5 교내외의 방사선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9.2.6 참고 자료

제10장 계산기의 안전관리 및 네트워크 보안

10.1 계산기 하드 취급 시 주의

10.2 PC 이용 시 주의

10.2.1 이용의 기본

10.2.2 저작권 침해

10.2.3 전자 메일 사용 시 주의

10.2.4 www 브라우저 사용 시 주의

10.2.5 보안 대책

10.3 서버를 일반 이용자로써 이용시 주의

10.4 관리자로서의 주의

제11장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용 미생물의 취급 및 동물실험

11.1 들어가며

11.2 유전자재조합실험

11.3 연구용 미생물의 취급

11.4 동물실험

11.5 문의처

제12장 사고가 발생하면

12.1 사고 발생 시 대응

12.1.1 사고상황의 파악과 대처

12.1.2 대학에의 연락, 현지에서의 사고 후 대응

12.2 사고 발생으로부터의 대학의 대응

12.2.1 첫 연락을 받은 이후

12.2.2 대책반 설치

12.2.3 기타

12.3 긴급시 수칙

- 12.4 출화(出火)시 처치
- 12.5 가스 중독 사고 시 처치
- 12.6 응급처치
 - 12.6.1 가스 중독
 - 12.6.2 유해물질을 마신 경우
 - 12.6.3 열상(화상)을 입은 경우
 - 12.6.4 부상을 입은 경우
- 12.7 피난
 - 12.7.1 화재의 경우
 - 12.7.2 지진의 경우

제13장 구급 소생

- 13.1 구급 소생의 기본
- 13.2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체위
- 13.3 응급처치
 - 13.3.1 찰과상, 베인 상처
 - 13.3.2 출혈
 - 13.3.3 염좌, 타박상, 골절
 - 13.3.4 열사병
 - 13.3.5 화상
 - 13.3.6 동상
 - 13.3.7 익수
 - 13.3.8 아나필락시스
 - 13.3.9 기타
- 13.4 일차 구급처치
 - 13.4.1 심폐소생 순서
 - 13.4.2 AED 사용 순서
- 13.5 구급용품
- 13.6 심리적 일차 구급처치

제14장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표 작성 예시

- 14.1 화학·재료계 학생의 리스크 평가 사례
- 14.2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학생의 리스크 평가 사례
- 14.3 전기계 학생의 리스크 평가 사례

- 14.4 물리·응용계 학생의 리스크 평가 사례
- 14.5 기계계 학생의 리스크 평가 사례
- 14.6 시뮬레이션 연구 종사 학생의 리스크 평가 사례
- 14.7 생물계연구 종사 학생의 리스크 평가 사례

제15장 사고 예시

- 15.1 감전사고
- 15.2 인화사고
- 15.3 플루오르화 수소산에 의한 약상(葉傷)
- 15.4 안구 부상
- 15.5 샌들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실험
- 15.6 액체질소로 인한 피부염증
- 15.7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실험
- 15.8 단파장 자외선에 의한 폭로(短波長紫外線による暴露)

(4) 일본 대학안전관리의 특징 및 시사점

- 첫째, 한국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과 같은 공통 매뉴얼이 없음. 일본은 2004년 4월 국립대학법인화 이후 국, 공, 사립대학 모두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안전(위생)관리의 주체가 대학이 되었음.
 - 대학이 자율적으로 각 대학 상황에 맞게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문부과학성에서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안전관리’ 정책을 관할하고 있으나, 대학의 안전관리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담당하며, 문부과학성의 관할 범위가 아님.
- 둘째, 대학 본부에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설치하고, 국가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을 참고하며, 각 대학의 상황에 맞는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가장 기본 법령은 앞서 제시한 <노동안전위생법>이며, 안전관리 영역은 크게 노동안전위생,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 소방, 수질오염, 작업환경, 폐기물, 방사선·핵원료물질·규제물질, 노동기준 등임. 한국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의 위험요인 구분과는 크게 차이가 있음.

- 안전관리 총괄 부서로 앞서 살펴본 도쿄대학 ‘환경안전본부’ (環境安全本部) ‘, 도호쿠대학 ‘환경·안전 추진 센터’ 는 본부 설치 부서이며, 규슈대학은 별도 부서 없이 대학 내 전문가(교수)로 이루어진 워킹 그룹(WG: Working group)을 설치하였음.
- 한편 앞서 살펴본 3개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법인임.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총괄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이 많고, ‘사립대학환경보전협의회(私立大学環境保全協議會)’ 라는 사립대학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이는 1985년 ‘사립대학환경대책협의회’ 로 발족하고 1999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음. “대학의 사회적인 책임을 자각하고, 교육·연구·의료활동에 의한 환경부하 경감을 목적으로 한 대학의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폐기물 대책 및 처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각종 관련 조직·시설의 운영·관리의 원활화, 교직원·학생에게의 환경안전교육 실시 등, 널리 지구환경의 보전까지도 염두에 둔 활동” 을 하고 있음.
- 셋째, 대학 안전관리 관련 자료는 대부분 학내 전용 비공개 자료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안전관리 체제를 갖추고, 안전관리 영역에 실험실사고(한국의 연구실사고) 관련 내용이 핵심이며, 관련자의 개인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학내 전용 자료로만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와 같은 내용을 찾고자 각 대학의 자료를 검색하면 바로 학내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처음부터 ‘학내전용’ 으로 표시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웠음.
- 넷째, ‘안전관리’ 보다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라는 이름으로 대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및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대학 위기관리 매뉴얼’ 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 많음.
- 규슈대학의 경우 <국립대학법인규슈대학위기관리규칙>에 의거, 대학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있음. 이에 따르면 위기는 “재해, 테러, 심각한 감염증, 중대한 정보사고 등의 발생 및 기타 중대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직원 및 학생 등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본교의 조직, 재산이나 명예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건 및 상태” 로 안전관리의 영역을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정의임.

- 고베대학의 경우 <국립대학법인고베대학위기관리규칙>에 의거, 마찬가지로 대학 위기관리 매뉴얼(고베대학위기관리기본매뉴얼)을 갖추고 있음. 특히 고베대학은 위기(crisis)와 리스크(risk)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해당 매뉴얼에서 각각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관리하는지를 설명함. 그리고 특별한 위기 유형이나 해당 위기를 유발한 대학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개별 매뉴얼을 갖추고 있음. 고베대학이 갖춘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은 ‘고베대학 위기관리 기본매뉴얼’, ‘위기유형별 매뉴얼(지진, 풍수해, 화재, 사건사고, 교통사거, 감염증, 도난·파손·범죄 포함)’, ‘고베대학 학생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코로나19 대응매뉴얼’, ‘국제교류 위기관리 대응매뉴얼’ (일본어, 영어) 등임.

○ 다섯째,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국립대학법인법>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 ‘중기 목표’ (국립대학법인이 6년간 업무운영과 관련하여 달성해야 하는 목표)(박지숙 외, 2021)의 ‘기타’ 영역에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중기목표의 영역은 크게 I. 교육연구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II. 업무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III. 재무내용의 개선에 관한 사항, IV. 교육 및 연구, 조직 및 운영 상황에 대해 자기검정 및 평가, 해당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V. 기타(그 외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로 나뉘지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V. 기타 항목에서 포함함.

- 예컨대 도쿄대학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1) 안전위생관리체제의 강화

- 구성원을 위한 각종 강습회 등을 이용한 교육 등에서, 각종 법령이나 규칙, 학내 규정의 주지 등을 통해 안전 위생 관리에 관한 지식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내의 환경 안전 관계 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함

(2) 방화·방재 등의 재해관리 체제의 정비

- 재해시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본부 및 각 부국과의 연락 체제를 강화해, 심화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통보 연락 체제나 현장 대응, 교육 연구 체제에
서의 재해 대응을 한층 더 정비해 구성원의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함

(3)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추진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진단
업무 전체의 시스템화 및 그 향상을 도모함. 또한 사전 건강교육과 사후 보
건지도 등 질병 발견 및 예방에 힘씀

· 감염증 대책으로 발생 상황의 모니터링, 컨디션 불량자 등의 건강 상담,
진료를 실시하는 동시에 신형 감염증에 관한 정보 수집과 조기 대책 입안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VPD(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접종 상황이나 항체 검사 등을 조합해 감염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대책을
추진함

- 도호쿠대학의 경우 다음과 같음.

(1) 환경보전·안전관리 문화의 조성과 사고 방지를 위해 ①각종 안전교육 교
재 등의 정비, ②안전교육 강습회의 충실화, ③화학물질 등의 적정 관리나 전
도 방지, ④사고 정보를 활용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을 대학 전체적·조직
적으로 추진한다.

(2) 직장에서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 ②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 ③정신건강 등을 포함한
심신의 건강 유지 증진, ④쾌적한 작업환경 정비를 위한 대응을 대학 전체
적·조직적으로 추진한다.

(3) 노동안전위생법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화·작업 부담의 경감을 위해 ①법
령·매뉴얼 등의 영어판 자료의 정비, ②법령상 필요한 각종 신고 등의 작성
에 이바지하는 정보제공 툴의 정비를 추진한다.

- 규슈대학의 경우 “본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 재해 등에 있어서의 안
전을 확보해, 사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학내 규정 및 매뉴
얼 등의 정비 및 운용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연구 등의 활동
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정신건강관리나 건강증진을 위한 대응을 실시한다” 라고 되

어 있음. 앞서 살펴본 도쿄대학이나 도호쿠대학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략히 서술되어 있음.

- 분량에 관계없이 각 국립대학법인이 6년이라는 중·장기 계획 및 목표에 대학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단 안전관리는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중기목표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아닌 것은 사실임.

2. 미국 사례 분석

- 미국 내에서 체계적인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사항을 대학 웹사이트에 게시한 대학은 다음과 같음.
 -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 서던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코네티컷 대학(University of Connecticut), 애머스트 콜리지(Amherst College), 베이츠 컬리지(Bates College) 등
- 이 중 프린스턴 대학과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충실하며, 여러 방면의 대학 안전을 폭넓게 다루고 있음. 따라서 두 대학의 안전관리계획을 미국 대학의 대표 사례로 선정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였음.

(1) 미국 프린스턴 대학

- 프린스턴 대학의 각종 정책을 모아놓은 웹사이트에서 안전 및 보안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중 대학안전정책(University Safety Policies)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안전정책은 일반 방침, 환경 관련 방침, 실험실 안전 방침, 코로나-19 관련 방침 등 총 네 가지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음. 각 주제별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제1장. 일반 방침

- 1.1 전염병
- 1.2 위급상황 및 기타 상황 시 필수 서비스
- 1.3 규제 점검에 따른 벌금
- 1.4 화재 위급상황
- 1.5 응급처리
- 1.6 건강, 안전 및 환경

- 1.7 신분증 관련 방침
- 1.8 우편 취급
- 1.9 개인 전기 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
- 1.10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관련 방침
- 1.11 장난 전화 및 거짓신고
- 1.12 잠재적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 1.13 호흡기 보호
- 1.14 지붕 관련 안전
- 1.15 여가 목적의 스케이팅보드 이용
- 1.16 학부생 기계 이용 실습 관련 방침
- 1.17 드론(sUAS) 사용 관련 방침
- 1.18 건물 위에 오르기 위한 대학 구조물 이용
- 1.19 단독 작업
- 1.20 작업장 건강, 안전 정책 및 책무

제2장 환경 관련 방침

- 2.1 화학 폐기물의 폐수 처리
- 2.2 살충제 사용

제3장 실험실 안전 방침

- 3.1 화학 폐기물의 폐수 처리
- 3.2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에서의 취식
- 3.3 실험실 보안
- 3.4 실험실 교육
- 3.5 아동·청소년의 실험실 이용
- 3.6 실험실에서 개인 보호용구 사용
- 3.7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룰 때 보호복 착용
- 3.8 방사성동위원소 보안
- 3.9 호흡기 안전
- 3.10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에서 실험실 교육
- 3.11 대학 실험실 간 방사성 물질 운반
- 3.12 학부생 기계이용 실습 관련 방침
- 3.13 단독 작업

제4장 코로나-19 관련 방침

4.1 전염병

4.2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

4.3 모임, 미팅, 이벤트 가이드라인

제5장 해외 여행 안전 방침

○ 각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 전염병

: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관한 방침으로서 스크리닝, 백신 접종, 개인 보호 용구 착용, 검역 및 격리 등에 관한 방침 적용 가능성을 서술함.

- 1.2 위급상황 및 기타 상황 시 필수 서비스

: 일과 스케줄 변경, 필수 서비스 인력 운용, 위급상황 보고, 이동 금지, 건물 폐쇄, 수업 중단 등 위급상황 시 방침, 상황전달, 원격 근무, 업무 중단 등 위급상황에 따른 절차에 대해 서술함.

: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서술함.

- 1.3 규제 점검에 따른 벌금

: 규제 위반 시 벌금 부과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서술함.

- 1.4 화재 위급상황

: 화재 위급상황 시 신고 및 소화기 사용 등 상황대처 절차, 소화기 사용 훈련, 위급상황대처계획 수립의 의무에 대해 서술함.

- 1.5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받는 방법, 의무실로 환자 이송 방법,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 보고, 응급처치 도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상황을 명시함.

: 각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술함.

- 1.6 건강, 안전 및 환경

: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구성원 교육, 적절한 조치 실행, 의사결정에서 안전 및 환경 요인 고려 등 대학안전정책의 전반적 목적을 서술함.

- 1.7 신분증 관련 방침

: 대학 안전 및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중 초청한 부서의 대리인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방문증을 보여주거나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한 허가를 받아야만 공적 사용이 불가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음.

: 대학 기숙사를 포함한 생활공간에 입장할 시에도 방문증을 지참해야 함.

- 1.8 우편 취급

: 대량 우편 취급 담당자의 경우 우편 취급 교육을 이수해야 함.

- 1.9 개인 전기 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

: 개인 전기 이륜차,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개인 전기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의 캠퍼스 내 사용, 정차,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페달 보조 모드의 전기자전거의 사용은 인도가 아닌 캠퍼스 내 도로에서만 허용됨.

: 개인 전기 이륜차 관련 화재 안전 요구사항, 주차 요구사항, 금지사항, 전기 충전 관련 제한사항, 압수 및 벌금 등에 관한 규정 등도 상세히 서술함.

- 1.10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관련 방침

: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학 구성원의 보호를 받아야 함.

: 개인 레슨, 튜터링, 스포츠 캠프, 리서치 인턴십 등에서 대학 구성원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대학에 등록되어야 하고, 스태프의 신상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등 세부사항을 서술하고 있음.

: 아동이 학대받는 경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함.

: 그 밖에 관련된 용어 정의와 함께 해당 방침이 대학 내 어느 프로그램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함.

- 1.11 장난 전화 및 거짓신고

: 장난 전화 및 거짓신고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함.

- 1.12 잠재적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 위법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행위부터 벌금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까지라고 규정함.

: 교수진과 대학 직원에게 잠재적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의 의무, 심각한 위협이 의심되는 범죄행위 및 기타 잠재적 위법행위에 따라 신고해야 할 부서 및 신고 절차 등을 명시함.

: 이와 함께 관련된 학내 규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함.

- 1.13 호흡기 보호

: 대학 구성원 호흡기 보호의 필요성 평가, 대학 호흡기 보호 교육 프로그램 등록, 인공호흡기 사용, 선택적 호흡기 보호에 관한 각 세부사항을 서술함.

: 관련된 대학 각 부서 및 구성원의 책임에 대해서도 서술함.

- 1.14 지붕 관련 안전

: 개인적, 사교적 목적의 지붕 사용은 대학에서 금지되어 있으나, 연구, 교육, 보수 목적의 사용은 허가될 수 있음.

: 시설 관련 부서 및 환경안전 부서와 사전연락을 해야 지붕 사용이 가능함.

- 1.15 여가 목적의 스케이드보드 이용

: 주로 위험한 동작을 수반하는 여가 목적의 스케이드보드 이용은 캠퍼스 내 모든 곳에서 금지되어 있으나, 통학 목적으로는 이용 가능함.

: 이를 위반할 시의 처벌 조항도 서술함.

- 1.16 학부생 기계 이용 실습 관련 방침

: 기계 실습실(프레싱 기계, 톱,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는 실습실), 지정된 감독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서술함.

: 지정된 감독자가 허가할 경우에만 학부생의 실습실 입장이 허가된다는 점, 실습실 내에서 학부생의 활동에 대한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다는 점, 학부생은 대학 차원에서 실시되는 기계 실습실 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되며 실습 시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학부생의 실습실 내 작업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감독자의 감독 하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자가 학부생에게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실습 관련 방침을 상세히 서술함.

- 1.17 드론(sUAS) 사용 관련 방침

: 드론, 드론 금지 구역, 미국 연방 항공청 등에 관한 용어 정의를 서술함.

: 드론 운용은 기본적으로 연방 항공청 규정을 따르며, 대학 교수진, 연구자, 학생의 교육 및 연구 목적의 드론 사용이나 공공안전 목적의 드론 사용은 허가될 수 있으나, 일반 대중의 취미 목적 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드론 운용이 불가함.

: 공공안전 목적이 아닌 경우, 캠퍼스 내 드론 사용에 대한 사전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점과 및 관련된 상세한 절차를 서술함. 이 방침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서술함.

: 캠퍼스 내 드론 운용과 관련된 문서, 사전허가 양식, 관련 정책을 열어볼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함.

: 드론 운용과 관련된 학내 부서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서술함.

- 1.18 건물 위에 오르기 위한 대학 구조물 이용

: 건물 보수 목적이 아닌, 여가, 사교 목적에서 대학 건물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경우 담당 부서의 건물안전 사전 평가가 필수적임.

- 1.19 단독 작업

: 생물학적 작용제, 위험 화학 물질, 위험 작업, 위험 평가, 안전 모니터링 등의 용어 정의와 함께 대학 연구시설에서 실험 활동을 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의 경우 단독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단독 작업을 명시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단독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 모니터링 등과 같이 단독 작업 시 꼭 따라야 할 안전 절차에 대해서 서술함.

: 규정 위반에 따른 법 집행 및 연구인력, 학생,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각 학과, 대학 환경안전 부서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서술함.

: 관련된 규정에 대한 외부 링크도 제공함.

- 1.20 작업장 건강, 안전 정책 및 책임 사항

: 대학 환경안전 방침의 전반적인 목적을 서술함.

: 대학안전방침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화재 위급상황, 응급처치 등 학내 근로자에 대한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방침을 명시적으로 제시함.

: 특별히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각 학과와 학과 산하 실험실 및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에 적용됨.

: 감독자, 대학 직원, 각 학과의 안전 관리자, 위급상황 담당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학내 6개 세부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안전 정책의 꾸준하게 관리함.

: 안전 관련 우려 수준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한 각 구성원 및 부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시해두었으며, 작업 관련 부상 및 질병과 관련된 처리 규정, 주요 기관 연락처 등을 기재함.

- 2.1 화학 폐기물의 폐수 처리

: 위험폐기물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계약 하에서 화학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

: 업체와의 계약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함.

: 프린스턴 대학이 소속된 화학 폐기물 처리 당국의 규정을 따라야 함.

: 폐기물 처리에 관한 상세 규정에 대해 문의가 필요할 경우, 당국에 직접 연락해볼 것을 권고함.

- 2.2 살충제 사용

: 대학과 계약 맺은 업체의 해충 관리 사실을 명시함과 동시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대학 내 살충제 사용을 제한함.

: 대학 내 거주자의 거주 공간 내 사용, 대학 환경안전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실험실 내 사용, 직접적인 감독 하에 살충제 작업이 가능하며 주 정부에 등록이 된 대학 직원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3.1 화학 폐기물의 폐수 처리

: 위험폐기물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계약 하에서 화학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

- : 업체와의 계약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함.
- : 프린스턴 대학이 소속된 화학 폐기물 처리 당국의 규정을 따라야 함.
- : 폐기물 처리에 관한 상세 규정에 대해 문의가 필요할 경우, 당국에 직접 연락해볼 것을 권고함.

- 3.2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에서의 취식

- :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 내 지정된 장소이거나 방사성동위원소 보관실과 최소 1.5 미터 이상 떨어졌으며 적절한 차단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실험실 내 취식을 허가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취식을 불허함.

- 3.3 실험실 보안

- :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실 구성원 모두에게 승인받지 않은 사람의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것을 요구함.
- : 수상한 사람이 출입했을 경우 공공안전 부서로 신고할 것, 일과시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모든 실험실을 잠가둘 것, 일과시간 중에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실험실을 잠가둘 것 등을 권고함.
- : 건물 출입문 관리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보안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함.

- 3.4 실험실 교육

- : 프린스턴 대학 내에서 일하는 모든 교수진, 스태프, 학생 및 방문자는 환경 안전 부서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 연구 책임자를 포함하여 실험실 감독자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실험실 감독자 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3.5 아동·청소년의 실험실 이용

- : 모든 고등학생의 실험실 연구 활동은 뉴저지주 법에 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며, 뉴저지 주 노동부 표준에 따라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은 실험실에서 일하도록 고용될 수 없음.
- :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교육 목적의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3.6 실험실에서 개인 보호 용구 사용
 - : 개인 보호 용구, 안구 및 안면 보호, 위험 작업, 위험 화학물질, 생물학적 작용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 교수진, 스태프, 학생 및 방문자의 연구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 보호 용구의 착용, 유지보수에 관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개인 보호 용구 및 복장 표준을 제시함.
 - : 연구 스태프 및 학생,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학과, 환경안전 부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시함.
- 3.7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룰 때 보호복 착용
 - : 방사성동위원소 일정량 이상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는 장갑, 다리까지 보호하는 실험복, 앞이 막힌 신발의 착용을 의무화함.
- 3.8 방사성동위원소 보안
 - : 모든 방사성동위원소 물질은 사용하지 않을 시 안전한 용기 및 보안이 되어있는 저장 장소에 보관되어야 함.
- 3.9 호흡기 안전
 - : 모든 대학 교수진,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위험 물질에 호흡기가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대학 내 호흡기 보호의 필요성 평가, 프린스턴 대학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절차, 방독면 관리 및 사용, 호흡기 보호가 불필요한 경우를 서술함.
 - : 각 부서의 역할 및 책임과 함께 호흡기 안전과 관련된 외부 문서 및 기타 방침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함.
- 3.10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에서 실험실 교육
 - : 방사성동위원소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연구자는 두 차례에 걸친 방사성 물질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직접 다루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해당 실험실에 소속된 경우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 봉인된 방사성동위원소 물질만을 다루는 연구자의 경우 한 차례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됨.

- 3.11 대학 실험실 간 방사성 물질 운반

: 대학 실험실 간 방사성 물질 운반을 위해서는 환경안전 부서의 허가서가 필수적임.

: 해당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에 해당 물질을 이전하고자 하는 연구실의 권한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은 환경안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사용기록부에도 운반 사실을 기록해두어야 함.

- 3.12 학부생 기계 이용 실습 관련 방침

: 기계 실습실(프레싱 기계, 톱,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는 실습실), 지정된 감독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서술함.

: 지정된 감독자가 허가할 경우에만 학부생의 실습실 입장이 허가된다는 점, 실습실 내에서 학부생의 활동에 대한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다는 점, 학부생은 대학 차원에서 실시되는 기계 실습실 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되며 실습 시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학부생의 실습실 내 작업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감독자의 감독 하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자가 학부생에게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실습 관련 방침을 상세히 서술함.

- 3.13 단독 작업

: 생물학적 작용제, 위험 화학 물질, 위험 작업, 위험 평가, 안전 모니터링 등의 용어 정의와 함께 대학 연구시설에서 실험 활동을 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의 경우 단독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단독 작업을 명시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단독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 모니터링 등과 같이 단독 작업 시 꼭 따라야 할 안전 절차에 대해서 서술함.

: 규정 위반에 따른 법 집행 및 연구인력, 학생,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각 학과, 대학 환경안전 부서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서술함.

: 관련된 규정에 대한 외부 링크도 제공함.

- 4.1 전염병

: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관한 방침으로서 스크리닝, 백신 접종, 개인 보호 용구 착용, 검역 및 격리 등에 관한 방침 적용 가능성을 서술함.

- 4.2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

: 2022년 3월 14일부터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주 정부 및 지역 커뮤니티에서 요구할 경우나 코로나-19 양성 반응 및 밀접 접촉에 따라 학내 관련 부서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 일회용 마스크가 섬유로 만들어진 마스크보다 더 안전하나요?” 등 캠퍼스 내 마스크 착용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도 제공함.

- 4.3 모임, 미팅, 이벤트 가이드라인

: 코로나-19와 관련된 모임 및 미팅 제한은 없으나, 대학 방문자 중 코로나-19 검사 양성이거나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및 뉴저지 보건국의 가이드를 따라야 함.

- 5. 해외 여행 안전 방침

: 프린스턴 대학의 해외 여행 안전 방침(Global Safety & Security Travel Policy)은 여행자 및 여행 매니저와 여행 책임자의 이해를 도와 구성원의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학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진, 연구진 등이 대학 및 대학 유관 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여행을 “University Travel”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회 참여를 위한 여행, 학점 이수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여행, 학생회, 동아리, 스포츠팀 차원의 여행, 안식년을 포함한 교수진의 여행 등을 대표적인 사례임.

: “University Travel”의 경우 사전에 대학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할 것 등을 요구하는 여행 방침, 여행 등록 절차의 구체적인 방법, 대학 내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함.

: 그 밖에 “University Travel”과 관련된 다양한 리소스도 제공함.

(2)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각종 정책을 모아놓은 웹사이트가 존재함.

- 이 중 건강 및 안전 관련 방침(Health and Safety Policies)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안전정책은 총 20개의 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방침의 목적, 방침의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방침 세부내용, 시행 절차, 책임 부서와 같은 문서 형식을 공유함. 20개의 방침은 다음과 같음.

1. 지붕 접근 방침
2. 드론 사용 관련 방침
3. 연구자 안전
4. 아동·청소년의 실험실 및 실습실 사용 관련 방침
5. 부상 및 질병 예방 방침
6. 위험폐기물 관리 방침
7. 의무보고자 방침
8. 서비스견 및 안내견 관련 방침
9. 아동·청소년 보호 방침
10. 마스크 착용 방침
11. 자동차 및 운전자 준수 사항
12. 테일게이팅 관련 방침
13. 금연 방침
14. 위급상황 관리 방침
15.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16. 코로나-19 검사 방침
17. 캠퍼스 출입 관련 방침
18. USC 마약 금지 방침
19. 폭력 없는 캠퍼스 및 일터 관련 방침
20. 대학 소유 건물 애완동물 출입 방침

○ 각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지붕 접근 방침

- : 모든 대학 구성원과 대학 소유 및 임차 건물에서 일하도록 계약된 작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건물의 지붕 위로 올라가는 행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방침임.
- : 현재 시설계획관리 부서, 정보기술서비스 부서, 환경안전 부서에만 지붕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대학 소유 및 임차 건물에서 일하도록 계약된 작업자 개인의 경우 대학 환경안전 부서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 : 지붕 접근과 관련된 시설계획관리 부서, 정보기술서비스 부서, 환경안전 부서, 지붕 접근 TF팀, 대학 구성원 및 방문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함.

- 2. 드론 사용 관련 방침

- :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연방항공청의 규정, USC 무인 항공 시스템 심의위원회에 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해당 방침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서술함.
- : 대학 및 대학 유관 기관 건물에서의 안전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대학 구성원 및 방문자의 드론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 예외적인 경우에도 USC 무인 항공 시스템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 이용이 가능하며, 이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학 차원에서의 처벌이 가능함.
- : 화재 안전 및 위급상황계획 부서, USC 무인 항공 시스템 심의위원회, 드론 사용자, 학내 구성원의 책임도 각각 서술함.
- : 해당 방침과 관련된 외부 접속 링크도 제공함.

- 3. 연구자 안전

- : 대학 교수진, 박사 후 연구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침임.
- : 실험실에서의 안전한 작업 수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위험 환경에서의 교육과정 내외 활동에 관해서는 감독자, 강사 등에게 책임을 부과함.
- : 실험실, 워크샵, 고위험 환경, 코어 랩 등에 관한 용어 정의도 서술함.
- : 해당 방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대학 조항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
- : 대학 환경안전 부서, 부총장, 학장, 학과장, 디렉터, 작업장이나 실험실의

감독자 및 매니저, 기타 학내 구성원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

: 해당 방침과 관련된 학내외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외부 링크도 제공함.

- 4. 아동·청소년의 실험실 및 실습실 사용 관련 방침

: 방사성 위험 물질, 생물학적 위험 물질, 위험 화학물, 위험한 장비 등을 다루는 실험실이나 실습실에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방문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 및 대학 정책을 준수해야 함.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대학 실험실이나 실습실 출입이 금지되며, 대학이 승인한 투어나 프로그램, 학과 차원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함.

: 14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동의서 작성을 완료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하며 가능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함.

: 실험실 및 실습실 투어와 교육 활동 사례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험실 구성원이 관련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는 점과 사례에 따라 실험실 감독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안전 관련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함.

: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서술하고 있으며, 동의서 양식도 제공함.

: 대학 환경안전 부서 및 실험실 및 실습실 감독자와 매니저의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함.

: 해당 방침과 관련된 학내외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외부 링크도 제공함.

- 5. 부상 및 질병 예방 방침

: 감독자와 매니저는 직원, 학생, 계약업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위험과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법에 관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함.

: 학과 책임자, 학장 및 행정가 등은 감독자들이 안전 및 건강 관련 위험에 관해 잘 인지하고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감독자와 매니저는 직원, 학생, 계약업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직무 관련 건강 및 안전 절차 등과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각 감독자와 매니저는 자신의 작업장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장 내 모든 사람은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됨을 인지한 경우 감독자와 환경안전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대학 구성원의 부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해 감독자와 매니저가 문서화해야 할 서류의 종류(세이프티 미팅 회의록, 안전하지 않은 환경 및 위험에 관한 직원 보고서, 사고, 부상 및 질병 조사 보고서 등)를 명시함.

: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서는 대학 환경안전 부서로 이어지는 외부 링크를 제공함.

: 환경안전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 책임자, 연구 책임자, 감독자와 매니저, 기타 대학 구성원, 대학 안전 위원회, 대학 위험관리 부서가 지니는 책임에 대해서도 서술함.

- 6. 위험폐기물 관리 방침

: 위험폐기물, 화학 폐기물, 생의학적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등에 관한 용어 정의를 제공하고 있음.

: 단과대학, 학과 및 개인 차원에서 대학 환경안전 부서의 도움을 받아 위험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위험폐기물의 독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함.

: 위험폐기물을 처리할 시 적절한 용기에 담을 것과 명확한 표기 및 문서화가 요구됨.

: 위험폐기물은 정기적으로 또는 요청이 있을 시 평시 48시간 이내에 수집됨

: 환경안전 부서 및 연구 책임자 및 학과장, 감독자 등의 책임을 명시함.

- 7. 의무보고자 방침

: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지정된 의무보고자는 알려지거나 의심된 아동, 노인,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학대 및 방임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방침은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의무보고자, 아동·청소년, 노인, 보호가 필요한 성인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공함.

: 아동, 노인,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학대 및 방임, 화기 공격 및 폭행에 따른

부상에 관한 방침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과 함께 서술함.
: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의무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보고 절차 및 처벌 내용에 관해서도 명시함.
: 의무보고와 관련된 여러 양식도 제공함.

- 8. 서비스견 및 안내견 관련 방침

: 서비스견, 안내견, 애완동물, 장애인에 관한 용어 정의를 제공함.
: 연방법에 따라 안전 문제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 내 서비스견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안내견 또한 주인의 거주 구역 내 출입은 허용되고 있음.
: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견 및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
: 교내 신분제에 따른 서비스견 및 안내견의 등록 절차도 서술함.
: 해당 업무 담당 부서와 서비스견 및 안내견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함.

- 9. 아동·청소년 보호 방침

: 캘리포니아 주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아동 학대 및 방임 시 보고 의무를 포함하여 아동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 의무가 대학 모든 직원과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활동, 프로그램, 이벤트의 스태프에게 요구됨을 명시함.
: 아동 학대 및 방임의 보고 내용, 보고 절차, 보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활동, 프로그램, 이벤트의 경우 사전에 시행 책임 부서가 청소년 보호 및 프로그래밍 부서에 해당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함.
: 프로그램 스태프의 경우 범죄 조회 등 사전 스크리닝을 거쳐야 함.
: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규정도 서술함.
: 아동·청소년의 활동 시 상황에 따른 구체적 지침(아동·청소년의 인원수에 따른 스태프 인원, 일대일 의사소통, 전자 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 밤샘 및 숙박, 교통편 이용 등)을 정해놓고 있으며, 위급상황 시 지침과 아동·청소년의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아동·청소년의 포함된 활동에 관한 각 부서(프로그램 책임자, 시행 부서, 스태프, 대학 청소년 보호 및 프로그래밍 부서)의 책임 사항도 서술함.

: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에 관한 내용도 정리하여 제시함.

- 10. 마스크 착용 방침

: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지역사회 조항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요구될 때 이에 따라야 하며, 높은 방역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11. 자동차 및 운전자 준수 사항

: 모든 대학 구성원은 위험관리 및 예방 부서에서 사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소유의 차량을 개인이 운전하거나 대학 운영을 위해 직원이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위험관리 부서, 학과 차량 관리자, 대학 직원의 책임도 명시함.

- 12. 테일게이팅 관련 방침

: 캠퍼스 내에서 테일게이팅 하는 모든 단체는 게임 당일로부터 최소 3주 전 온라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테일게이팅을 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는 USC 팬 행동수칙을 따라야 함.

: 주중 게임의 경우 테일게이팅이 불가하고 토요일 경기에만 테일게이팅이 가능하며 테일게이팅은 게임 시작 6시간 이전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없음.

: 또한 대학 내 분수 및 동상 위로 올라가는 것과 드론 이용은 금지됨.

: 그 밖에 음주, 바베큐 그릴 사용, 발전기 사용, 텐트 설치, 쓰레기 처리, 소음, 주차 등의 항목에 대한 자세한 방침이 제시됨.

- 13. 금연 방침

: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학 소유 및 임차 건물 안팎 또는 대학 유관 행사 및 활동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할 것을 명시함.

: 연구 목적, 행사 목적, 공연 목적으로는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음.

- 14. 위급상황 관리 방침

- : 자연 재난 및 인재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대학 차원의 프로토콜, 계획,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해당 방침의 목적임.
- : “모든 위험”을 고려한 위급상황 관리, 국가사고관리시스템, 사고명령체계, 대학 위급상황대책센터에 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의 큰 틀을 서술함.
- : 재난 이후 신속한 업무 복귀와 정보기술 관련 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목표로 한다는 점도 명시함.
- : 대학 총장, 선임 행정가, 학장, 부총장, 단과대학 및 학과 리더십 팀, 업무 연속성 추진 위원회, 위기관리팀, 화재 안전 및 위급상황 계획 부서의 책임 사항도 명시함.
- : 관련 부서의 웹사이트도 제시되어 있음.

- 15.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 :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권고하는 횟수만큼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을 대학 차원에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 : 대학 병원에 근무하거나 건강 전문가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미국 영토 밖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백신 권고 수준이 다를 수 있음.

- 16. 코로나-19 검사 방침

- : 2022년 8월 12일부로 코로나-19 일반 표본감시는 대학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유효하며, 이 사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또는 그 이후로도 유효할 것임.
- : 관련 부서 및 구성원의 책임도 서술함.
- : 법적 예외를 제외하고 대학 구성원은 코로나 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점, 캠퍼스 내 검사 장소 및 일정, 코로나-19 핫라인에 대해서도 서술함.

- 17. 캠퍼스 출입 관련 방침

- : 유니버시티 파크 캠퍼스는 대학 구성원에게만 접근이 제한되며 등록된 방문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접근할 수 있음.
- : 승인되지 않은 요식판매업자, 상품판매자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 등의

경우 대학이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음.

- 18. USC 마약 금지 방침

: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술 및 마약 복용은 교육 및 연구 증진에 큰 해가 되므로 대학 구성원의 마약 남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음.

: 마약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절차로 마약 금지 작업장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절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의료적, 행동적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방을 위해 전 영역에 걸친 건강 증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 술 및 마약 남용 위험이 있다고 진단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불법적인 마약 제조, 유통, 소지, 사용 등에 관한 대학 자체 평가를 진행하는 것 등을 대학 차원의 노력으로 언급함.

: 알콜, THC 및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담배 등을 남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건강 문제를 자세히 소개함.

: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와 웹사이트 주소도 제공하고 있음.

: 알콜 및 마약 남용과 관련된 대학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지도 서술함.

: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차원의 처벌 내용을 서술함.

- 19. 폭력 없는 캠퍼스 및 일터

: 모든 대학 캠퍼스 및 시설, 대학이 후원하는 학외 행사나 이벤트에서 사람 및 소유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 직접적, 간접적, 조건적 가해 등을 포함한 모든 행동 등을 포함한 모든 폭력 및 위협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폭력 및 위협 행위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폭력이나 위협을 받은 대학 구성원은 대학 공공안전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함.

: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보고해야 할 기관(대학 공공안전 부서 및 경찰)을 구분하며, 폭력 행위 보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함.

: 대학 각 부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함.

- 20. 대학 소유 건물 애완동물 출입 방침

: 캠퍼스 내 강의실, 작업 공간, 연구 공간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은 대학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대학 건물 내부로의 애완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3) 미국 대학안전관리의 특징 및 시사점

○ 첫째, 대학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전관리계획과 주 정부 법 또는 연방법의 연관성을 강조함.

- 미국의 경우 한국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과 같은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학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대학이 어느 주(state)에 위치하고 있는지, 특정 주 내에서 어느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위치하고 있는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대학 구성원 및 방문자의 어떠한 활동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대학 환경에 알맞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안전관리계획 내에 특정 방침과 주 정부 법 및 연방법의 연관성을 서술하여 해당 방침의 법적 근거를 강조하거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관련된 직무 유기가 발생했을 시 처벌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강조함.

○ 둘째,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이 공개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함.

- 안전관리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대학 웹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경우, 많은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 있었음.

: 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살펴본 프린스턴 대학,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코넬 대학,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코네티컷 대학, 애머스트 컬리지, 베이츠 컬리지와 같이 모든 종류(사립, 주립 및 공립, 리버럴아츠컬리지)의 대학에서 각 대학의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

음.

- 미국 대학의 경우 필요할 때마다 안전관리계획의 방침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세부 내용을 꾸준히 개정해 오고 있음.

: 프린스턴 대학과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안전관리계획 문서를 열람해보면 각 방침마다 신설된 날짜가 상이하며, 개정된 날짜 및 연도가 여럿인 것을 통해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밖에 드론 사용, 개인 전기이륜차 사용, 코로나-19 관련 방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신설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을 볼 수 있음.

: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안전 및 건강 위협 요소에 대응하여 대학 안전관리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하고 있음.

○ 셋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에 주목하며, 구성원의 보고 의무를 강조함.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두 대학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라는 용어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며, 구성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위험 및 위급상황 예방과 같은 표현이 더욱 자주 등장함.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또는 인적재난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경향도 거의 없음.

: 오히려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안전사고와 이러한 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일상 속 위험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캠퍼스 내 드론 사용, 개인 전기 이륜차 사용, 스케이트보드 이용 관련 방침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드론, 스케이트보드 등의 이용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늘 존재하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험하게 사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큰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큰 위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항목에도 안전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지붕 접근이나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한 규제도 대학 구성원, 특히 학부생의 일상에서의 안전을 고려한 방침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 및 대학 구성원의 개인적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교직원, 행정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대학 안전을 저해하는 사건 및 잠재적 위협 보고를 권고 또는 의무화하고 있음.

: 아동 학대 및 방임 등 아동·청소년이 위기에 처한 경우, 노인이나 보호가 필요한 성인이 연관된 사건의 경우 보고의 의무가 더욱 강화됨.

: 이 경우에는 의무보고자를 따로 지정하여 보고의 책임을 더욱 크게 부과함.

: 아동·청소년, 노인 및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경우 학대와 방임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대학 차원에서는 이러한 위협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차원에서 의무 신고자를 지정해둠으로써 관련 주 정부 법 및 연방법의 연장선상에서 특정 개인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 이러한 학대 및 방임을 비롯하여 사적인 관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같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협 요소 및 잠재적 위협 행위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고의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학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어 보임.

- 안전사고 및 위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보고하지 않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 벌칙 조항이 있음.

: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우 주 정부 법의 연장선 상에 있는 아동·청소년 학대 및 방임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보고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주 정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학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경우에도 주 정부 법에 의한 처

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법적 처벌과 같은 엄중한 수준의 처벌이 아니더라도 대학 차원에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 해당 방침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실험실,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 기계를 이용하는 실습실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늘 존재하므로 작업장의 안전을 매일 점검해야 할 의무, 이상징후 감지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무(예: 안전 교육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대학 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 목적 여행에 관한 방침도 따로 마련되어 있음.

: 프린스턴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해외 여행 안전 정책은 대학안전방침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대학 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 목적의 국내외 여행 시에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여 여행 사전에 구체적인 여행 내용을 대학에 보고하도록 한 점은, 구성원이 대학 캠퍼스에 부재한 경우라도 대학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대학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대학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해석됨.

○ 넷째, 필수 안전교육 및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통한 위험 및 사고 예방을 강조함.

- 대학 차원에서 실험실 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의무화함.

: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자 및 연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험실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 실험이나 실습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 대학 실험실에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실험실 책임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험한 기계 및 장비를 다루는 실습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습 이전

에 학부생이 관련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것을 요구하며 감독자의 안전 지도하에서만 실습할 것을 명시함.

: 실험실이나 실습실에서 연구자가 안전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감독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 대학에 방문하게 될 경우 연령에 따른 주 정부 법을 고려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있었음.

: 같은 맥락에서 우편 취급 관련 방침에서도 우편 취급 담당자의 관련 교육 이수를 요구하여 실험실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 전반적으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과 관련된 방침이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연구실 및 연구자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일반 실험실과 차별화된 구체적인 방침을 서술하고 있었음.

: 일반적인 실험실에 적용되는 안전 방침에 더해 특성화된 안전교육 이수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관리 절차를 의무화하는 각 방침은 안전교육 및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됨.

- 총장, 부총장, 각 부서, 단과대학, 학과, 실험실, 개인의 단위에서 학내 안전에 대한 의무 및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감독자 없이 혼자 실험실, 실습실 등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단독 작업의 경우에도 대학 규정으로 정해진 안전 모니터링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학 구성원의 술, 마약 복용 및 남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줌.

: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약 금지 방침에는 술, 마약 복용에 관해 대학 차

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술, 마약 복용 및 남용에 관한 대학의 적극적 개입은 중독 증세를 보이는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 개인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주위 사람의 안전 및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섯째,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 구성원 및 방문자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있음.

- 캠퍼스 출입 방침, 신분증 관련 방침, 서비스건 및 안내건의 건물 출입 및 허가, 일반 애완동물의 건물 출입 방침, 해외 여행 안전 정책 등은 대학 구성원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나 안전관리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쉬운 상황에 관한 방침임.

: 이러한 방침을 통해 방문자의 대학 건물 출입이나 서비스건 및 안내건, 일반 애완동물의 대학 건물 출입에 관한 제한사항이나 대학 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 목적 여행의 사전 및 사후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이 학내 안전에 관한 인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대학 캠퍼스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광범위한 요소를 점검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 및 방문자의 안전 인식의 제고를 통해 사안 발생 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안전관리계획과 같이 테일게이팅을 안전하게 즐기 기 위한 음주, 바베큐 그릴 사용, 발전기 사용, 텐트 설치, 쓰레기 처리, 소음, 주차 등의 세부 방침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캠퍼스 방문자의 관련 안전 인식 제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테일게이팅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시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관련 방침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유사하게 서비스건 및 안내건 관련 방침을 통해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은 일반 애완동물과 달리 개인 및 단체의 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동물의 경우 대학의 안전관리 방침을 바탕으로 동물의 대학 건물 내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었는데, 이 방침을 바탕으로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시 의사소통을 통한 조정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독일 사례 분석

- 독일에서 대학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사고 예방에 책임을 지니며, 일련의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법(Präventionsgesetz)과 연방 차원의 대학 안전 권고에 기초함.
- 본 장에서는 독일의 대학 세 곳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쾰른 독일 체육 대학교(Deutsche Sporthochschule Köln), 마부르크 필립스 대학교(Philipps-Universität Marburg), 브레멘 대학교(Universität Bremen)

(1) 쾰른 독일 체육 대학교(Deutsche Sporthochschule Köln)

- 쾰른 독일 체육 대학교 대학 안전관리 계획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위험 및 위기 대응

- 1.1 일반적인 긴급 상황
- 1.2 화재
- 1.3 유해 물질 사고
- 1.4 강도
- 1.5 기물 파손
- 1.6 폭행
- 1.7 차별, 성희롱, 괴롭힘 및 스토킹
- 1.8 살인 광란(Amok)
- 1.9 폭발물 장치
- 1.10 전화 폭탄 위협
- 1.11 인질 납치
- 1.12 심각한 기술적 오작동

제2장 개인적 갈등 및 위기 대응

- 2.1 자살 위험(자살 행동)
- 2.2 직원을 위한 중독 상담 센터
- 2.3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 각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 일반적인 긴급 상황

: 긴급 상황 발생 시 112의 소방서로 신고할 때의 유의 사항 안내: 누가 신고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가? 어디에서 위험이 발생했는가? 소방관의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응급 처치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사고 현장을 보호할 것, 부상자에 대한 치료, 안내 사항 준수하기.

: 추가 대응 방안: 기타 신고 대상자인 부서장, 응급처치사에게 알리기, 병원 응급실의 연락처 기재, 구급차 대기 요령 및 사고 현장의 구경꾼에 대한 대처 등 안내하기.

- 1.2 화재

: 긴급 상황 발생 시와 같이 112의 소방서 신고 유의 사항 안내: 누가 신고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가? 어디에서 위험이 발생했는가? 소방관의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도하기, 화재 진압 시도에서 인근의 소화기 또는 벽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

: 추가 대응 방안: 대피로 및 구조로를 활용하여 건물 빠져나오기, 창문과 문은 닫으나 잠금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인근 근무자에게 상황 알리고 건물 대피 요구하기, 대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기,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기.

- 1.3 유해 물질 사고

: 긴급 상황 발생 시와 같이 112의 소방서 신고 유의 사항 안내: 누가 신고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가? 어디

에서 위험이 발생했는가? 소방관의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추가 대응 방안: 유해 물질의 범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 및 건물에서 대피 요구, 전기와 가스 연결 잠금, 이산화탄소 제거기, 분말 제거기, 차단 담요 등을 사용하여 유해 물질의 차단 시도, 대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기,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기, 유해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에 관련 전문의 소개, 유해 물질에 노출된 공간은 해당 물질의 영향이 분명히 제거되기 전에는 출입 불가.

- 1.4 도난

: 긴급 상황 발생 시와 같이 110 경찰 신고 유의 사항 안내: 누가 신고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다쳤는가? 경찰의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추가 대응 방안: 사건 현장의 물건을 옮기거나 손을 대지 않기, 지체하지 않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제출할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물품의 목록 작성하기

- 1.5 기물 파손

: 긴급 상황 발생 시와 같이 110 경찰 신고 유의 사항 안내: 누가 신고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다쳤는가? 경찰의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추가 대응 방안: 기물의 파손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인식할 것, 위험 요소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을 종료하지 말 것, 기물 파손에 사용한 도구를 위험을 감수함 없이 경찰에 전달하기, 사진이나 증언 기록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문서화하기, 사건 현장 격리하기, 목격자 목록 작성, 물품의 상황을 기록으로 작성, 극단적인 내용의 텍스트나 문양을 스스로 삭제하지 말 것.

- 1.6 폭행

: 긴급 상황 발생 시와 같이 110 경찰 신고 유의 사항 안내: 누가 신고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다쳤는가? 경찰의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추가 대응 방안: 성별, 연령, 체격, 머리카락 길이와 색상, 방언 사용 여부, 옷차림, 문신, 장신구 등 폭행 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기록, 칼이나 총

등의 폭행에 사용한 무기, 도보/자전거/자동차 등의 달아나는 데에 사용한 교통 수단 등의 세부 정보 기록하기, 폭행 이후에 사건 현장 보호하기.

- 1.7 차별, 성희롱, 괴롭힘, 스토킹

: 피해자 대응 방안: 사고 발생 상황에서 가능한 한 가해자에게 상황의 행위나 표현을 원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밝히기, 이전의 사건과 가능한 목격자 확보하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49 221 4982 2400(24시간 연락 가능)에 신고하기, 폭력과 희롱의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 110에 신고하기, 심하게 농락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Spoho-Cafeteria의 ‘EDELGARD 보호소’에서 지원받기(소장 Giuseppina Schieffer).

: 조력자 대응 방안: 차별, 성희롱, 스토킹의 모든 요소를 진정성 있게 인식하기, 이전의 사건과 가능한 목격자 기록하기,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심각한 폭력과 희롱의 경우 내부자 의무 신고보다 앞서 경찰 110에 신고하기.

- 1.8 살인 광란(Amok)

: 긴급 상황 발생 시와 같이 110 경찰 신고 유의 사항 안내: 누가 신고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다쳤는가? 경찰의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전반적인 대응의 순서: 침착한 마음 갖기 > 해당 공간에 머무르기 > 문을 잠그고 바리케이트로 막기 >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닫아 창문을 어둡게 하기 > 창문과 문에서 멀리 떨어지기 > 휴대전화의 발신음을 무음으로 변경하고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만 사용하기 > 바닥에 엎드리기 > 조용히 하기 > 경찰에 의한 대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다리기 >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근 공간에서 피난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르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탈출 등의 유연한 조치 취사 선택하기.

- 1.9 폭발물 장치

: 긴급 상황 발생 시와 같이 110 경찰 신고 유의 사항 안내: 누가 신고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다쳤는가? 경찰의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대응 방안: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나 장치를 발견한 장소에 그대로 두기, 물건을 만지거나 들어 올리지 말 것, 대상물로부터 거리를 두어 자신과 주변인을 보호, 상황이 자신에게 안전하다면 접근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경고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 환기,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실수로 폭발물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장치를 들어 올렸을 때 던지는 형식으로 내려놓지 않고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놓기.

- 1.10 전화 폭탄 위협

: 대응 방안: 주의 깊게 듣기, 말을 가로막지 않기, 즉시 메모하기, 정보 취득하기, 계속해서 말하도록 유도하기.

: 기록할 내용: 날짜, 시간, 발신자의 전화번호, 통화 시간, 위협의 문구 표현.

: 질문 내용: 폭탄은 언제 폭발하는가? 폭탄은 어떻게 발화하는가? 폭탄의 위치는 어디인가? 발신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폭탄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폭탄인가? 폭탄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밖에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사용 언어, 성별, 추정 연령, 방언이나 말의 속도 말투 등의 언어적 특징, 배경 소음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 1.11 인질 납치

: 긴급 상황 발생 시와 같이 110 경찰 신고 유의 사항 안내: 누가 신고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다쳤는가? 경찰의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행동 방안: 경찰의 지시에 따르기, 물건보다는 인명 보호 우선, 불필요한 위험 행동하지 않기, 주변인 안정시키기, 인질범과 독자적으로 소통하거나 협상하지 않기, 가해자가 원하는 대화는 지속하고 먼저 연락을 끊지 않기.

- 1.12 심각한 기술적 오작동

: 기술적 오작동 연락처 3170에 신고할 때 유의 사항: 누가 신고하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일인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질문을 기다리고 이에 답하기.

: 기타 신고 대상: 부서장, 안전 책임자, 유해 물질 담당자, 환경보호 담당자

: 주요 신고 번호: 건물 관리자 3950, 전기 부서 3110, 상하수도 및 난방

3100, 냉방 시설 2710, 경찰 110, 소방서 112

- 2.1 자살 위험

: 자살 시도에 대한 대응: 자살에 대한 암시적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대화 제안하기, 자살에 관한 생각이나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직접 치료사가 될 필요는 없음, 전문적인 도움을 권유하고 연락처 알려주기, 심각한 경우 정신과 응급 의사 진료를 받도록 동행하기, 심각한 자살 암시를 한 이후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때 즉시 경찰이나 구조대에 신고하기.

: 대학 담당 의사 방문: 크noop-부쉬 의학 박사(Frau Dr. med. Knoop-Busch) 전화 +49 221 6699 0260 이메일 arbeitsmedizin-k@medical-gmbh.de

: 대학 심리 상담사 내담: 안나 히제(Anna Heese) 전화 +49 221 4982 3912 이메일 a.heese@dshs-hoeln.de

: 전화 상담: 천주교 심리 상담: +49 800 1110222, 개신교 심리 상담 +49 800 1110111, 구조대 110 또는 112

- 2.2 직원을 위한 중독 상담

: 직장 생활에서의 중독은 중독 위험에 처해 있거나 중독으로 고통받는 직원은 물론 상사와 동료들도 중독에 대처하는 지원과 상담이 필요함. 대학의 직장 내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대상은 당사자, 동료, 상사임.

: 상담사 클로에 셰르메트 박사(Dr. Chloe Chermette): 전화 +49 221 4982 5741 이메일 c.chermette@dshs-koeln.de

- 2.3 학생을 위한 중독 상담

: 심리 상담 서비스는 쾰른 독일 스포츠 대학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학업 관련 어려움 및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제공: 시험에 대한 두려움, 학업의 어려움, 동기 부족 문제, 스트레스 대처, 급성 위기, 자존감 문제, 가족에 대한 부담감, 이성 관계 문제, 우울감, 불안 장애, 섭식 장애, 중독 문제, 통증 장애, 부상에 대한 대처, 심리 치료에 관한 질문 등.

: 일대일 상담의 목적은 특정 문제를 개별적으로 적절히 해결하고 학생들이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심리 상담은 비밀이 보장

되며 무료임. 초기 상담은 일반적으로 긴 대기 시간 없이 진행하며, 간단한 상담은 최대 5회의 개별 세션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장기 상담 세션도 가능. 심리 상담을 통해 외래 심리 치료사나 정신과 전문의 등의 다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연결 지원 등.

(2) 마부르크 필립스 대학교(Philipps-Universität Marburg)

○ 마부르크 필립스 대학교의 대학 안전 핸드북(Handbuch für Arbeitssicherheit und Umweltschutz) 중 4, 6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일반적인 안전 조치

- 1.1 일반적인 위험 판단 및 예방 조치
- 1.2 임산부 및 모유 수유자를 위한 위험 판단
- 1.3 기구 및 기기 정기 점검

제2장 위험 물질별 조치

- 2.1 유해 물질
- 2.2 생물학적 물질

○ 각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 일반적인 위험 판단 및 예방 조치

: 과정 중심의 위험 판단은 사고와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임. 사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대학의 모든 업무와 영역별 실험 과정 등은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전달되고, 기록되고, 후속 안내되어야 함.

: 보호 조치는 그 효과와 연동하여 재검토되고, 실천되고, 추후의 요구에 맞추어 조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새로운 보호 조치로 전달되어야 함.

- 1.2 임산부 및 모유 수유자를 위한 위험 판단

: 책임자는 임산부 및 모유 수유자가 자신의 상황을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즉시 해당 교직원이 업무 절차, 업무 여건, 업무 시간, 화학적 유해 물질, 생물학적 물질 또는 물리적 영향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학생

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수강하는 강의의 담당자에게 위험 판단 및 보호 조치가 전달되어야 함.

: 해당 위험 판단의 목표는 임신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위험 없이 모든 활동과 학업이 실행되는 것임.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강의실 환경의 변경이나 강의 절차의 변경을 통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임신부 및 모유 수유자의 위험 판단 문서는 수강하는 모든 강의의 담당자 및 학생들이 서명한 후 학교로 전달되어야 함.

: 학과의 담당자는 임신부 및 모유 수유자의 위험 판단 보고를 종합하여 대학의 중앙 안전담당 부서에 전달. 중앙 안전담당 부서는 보성보호법 (Mutterschutzgesetz, MuSchG) 27조에 의거 라인란트-팔츠 주의 기센 (Giessen) 소재 대학안전 부처에 마부르크 필립스 대학의 임신부 및 모유 수유자 현황 및 관련 조치를 보고해야 함.

- 1.3 기구 및 기기 정기 점검

: 사다리와 디딤대: 대학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다리와 디딤대가 사용됨. 잘못된 사용으로 지지 역할을 못 하는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상해를 유발하는 사고로 이어짐. 이에 모든 사다리와 디딤대는 외견 및 기능을 연 1회 점검해야 함. 점검의 실시와 기록은 매뉴얼의 양식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련 점검이 가능한 담당자가 수행함.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폐기함.

: 이동 가능한 전자 기기: 대학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기기를 사용함. 잘못된 사용으로 안전 기능에 손상이 있는 기기 또는 케이블 선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전선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학의 각 영역은 부서에서 적절한 점검을 실시함.

: 눈과 신체의 비상 세척 시설: 실험실, 작업장 또는 기기 작동과 관련된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비상시의 샤워 시설 설치. 시설의 항시적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눈 세척의 경우 분당 6L, 몸 전체의 경우 분당 30L의 물이 나오는 수도 시설의 점검 월 1회 실시함.

: 실험실 흡입기, 안전 캐비닛: 유해 물질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실험실 흡입기와 안전 캐비닛 설치. 해당 설비는 연 1회 기능과 작동 여부를 확인함. 이 과정은 마부르크 대학이 자체 개발한 점검 프로토콜을 활용.

: 원심분리기: 실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크기와 성능의 원심분리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점검은 제조사 또는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사용자 그룹이나 담당자는 해당 점검을 위한 계약을 추진함. 약학 대학의 경우 미하엘 코흐(Michael Koch) 학장이 이를 계획함.

- 2.1 유해 물질

: 보관: 유해 물질은 기술적 통풍이 가능하고 관련자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 또는 안전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야 함. 산성 또는 알칼리성 물질 또는 화기성 물질 등은 해당 물질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안전 캐비닛에 보관. 실험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용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액체 유해 물질의 경우 최대 2.5L까지만 사용 가능. 독성 또는 암 유발 물질은 최대한 작은 가스 유리병 또는 밀폐 가스 용기에 담아 이동함.

: 흡입기 사용: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 업무의 경우 점검을 마친 기능이 작동하는 흡입기를 반드시 사용할 것. 흡입기의 사용은 화재 등을 유발하는 등의 유해 물질이 연구실 공기에 위험 수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

: 측정 대장 작성: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한 측정 대장을 작성할 것. 마부르크 대학의 경우 어느 부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측정 대장을 제공함. 추가적인 정보는 크레킥 씨에 문의할 것(krekic@staff.uni-marburg.de).

			
Explosionsgefährlich	Leicht- / Hochentzündlich	Brandfördernd	Unter Druck stehende Gase
			
Ätzend	Giftig / Sehr Giftig	Reizend	Gesundheitsschädlich
			
Umweltschädlich			

<유해 물질 픽토그램>

: 표기 의무: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실험용 용기는 물질을 표기해야 함. <그림 1>의 물질명, 위험을 상징하는 문양의 픽토그램(Piktogramme) 등을 통해 설명되어야 함. 특히 누전이나 용기 교체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유해 물질 안전 점검표를 활용해야 함.

유해 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 조치 및 효과 확인을 위한 문서 양식	
부서:	날짜:
질문	안전 조치
1. 모든 유해 물질이 등록부에 기록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관련 안전 자료를 부서의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확인합니까?	
2. 모든 유해 물질 및 혼합물에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된 픽토그램 및 위험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3. 인화성 유해 물질 취급 시	
3.1.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해 어떻게 보관합니까?	
3.2. 실험 취급 시 필요한 기술적 환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3.3. 활동 후 기술 환기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다시 전환되도록 어떻게 확인합니까?	
3.4. 안전 캐비닛에서 충전 및 재충전 작업과 실험 절차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3.5. 안전 캐비닛 작업이 안전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어떻게 확인합니까? 모든 직원과 학생이 대학의 운영 지침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3.6. 올바른 PPE를 착용하도록 어떻게 확인하는가? (어떤 PPE를 착용해야 하는지 명시할 것).	
3.7. 피부 및 흡입 노출이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4.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 취급 시	
4.1 올바른 보관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4.2 필요한 기술 환기를 통해 환풍 후드 아래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4.3 어떤 PPE를 착용해야 합니까?	
4.4 피부 및 흡입 노출이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5 부식성 유해 물질 취급 시	
5.1 올바른 보관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5.2 올바른 취급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5.3 피부 및 흡입 노출이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5.4 어떤 PPE를 착용해야 합니까?	
6. 폭발성 유해 물질 취급 시	
6.1 올바른 보관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6.2 올바른 취급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7. 가스 취급시	

7.1 올바른 보관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7.2 올바른 취급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타	
8. 직원에게 어떤 산업 보건 관리를 제공해야 합니까? 이 제공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9. 어떤 유해 물질에 대해 물질 검사를 실시했나요? 결과는 어떻게 실행되나요?	
10. 응급 처치: 교육을 받은 회사 응급 처치 요원이 응급 상황에서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응급 처치 재료를 항상 구비하고 있는지 어떻 게 확인하는가?	
11. 눈 세척과 전신 샤워 시설에 대해 어떻게 월별로 확인합니까?	
12. 안전 캐비닛의 연간 점검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13. 유해 물질이 혼동될 수 있는 식품 용기에 담겨 활 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확인합니까?	
14. 유해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 및 폐기를 어떻게 확 인합니까?	
15. 숙소 보호 계획의 이행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16. 모든 직원, 신규 연수생, 학사 및 석사 학생들에 게 유해 물질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급에 대한 교 육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17. 필요한 모든 작동 지침이 최신 상태이며 직원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알려지도록 확인합니까?	
18. 귀사의 측정실, 기능실 또는 보관실 중 기술 공기 교환이 없거나 줄어든 곳은 어디입니까? 유해 물 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보관 은 이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른 방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2.2 생물학적 물질

: 생물학적 물질은 감염, 감염 관련 질병, 독소 형성 등을 통해 인간에 위협이 되는 유전자 변형을 포함한 인체 병원성 미생물, 세포 배양체, 기생충 등을 의미함. 미생물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곰팡이 등 유전 물질을 번식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개체를 의미함. 대학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물질을 모두 취급함.

: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산업 보건 및 안전 조치: 곰팡이가 핀 책을 복원하거나 옮길 때, 폐수관 수리 작업을 수행할 때, 덩불 지역에서 야외 작업을 수행할 때, 특정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할

때, 혈액에 포함된 생물학적 물질을 대상으로 실험이 아닌 인간 혈액 샘플로 실험할 때 생물학적 물질과의 접촉 발생. 안전 조치는 기록 및 문서화되어야 함. 추가적인 보호 조치에는 마스크와 보호 장갑 등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거나 팔과 다리를 덮는 의복을 착용 등이 있음.

: 안전 조치 요건: 미생물이나 세포 배양과 같은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는 실험은 대상 활동으로 분류됨.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기술 규칙(TRBA) 460~468에 근거, 곰팡이의 위험 그룹 분류는 TRBA 460, 바이러스는 TRBA 462, 기생충은 TRBA 464, 세균은 TRBA 466, 세포주 또는 세포 배양 활동은 TRBA 468로 분류하며, 작업에 대해 위험 그룹을 기재해야 함. 산업 보건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생물학적 물질과 실험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경우 제공되어야 함.

: 아래와 같은 생물학적 물질 안전 점검표를 활용해야 함.

생물학적 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 조치 및 효과 확인을 위한 문서 양식	
부서:	날짜:
질문	안전 조치
1. 세포 배양 및 미생물의 위험군 소속 물질을 확인하고,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 목록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2.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실험에서 사람의 혈액 또는 조직 샘플을 다루는 작업이 레벨 2 안전 조치로 수행되도록 어떻게 확인합니까?	
3. 보호 수준 2의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 질문에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감염 위험이 낮은 생물학적 물질이나 실험 절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대체 실험을 문서화하십시오.	
4. 피부 접촉 또는 흡입 노출 방지:	
4.1 작업 공간을 어떻게 청결하게 유지합니까?	
4.2 어떤 실험 작업을 미생물 안전 캐비닛 아래에서 수행할지 결정했나요? 직원과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이행하도록 확인합니까?	
4.3 안전 작업대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4.4 반드시 글리토 단백질 항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항원의 올바른 사용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4.5 피부 보호 계획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모든 직원과 학생에게 알릴 수 있도록 어떻게 확인합니까?	
5. 생물학적 물질과 실험 폐기물의 비활성화 및 폐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고압 증기 소독 처리를 해	

야 합니까? 올바른 폐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5.1 고압 증기 소독기의 올바른 작동과 정기적인 테스트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6 직업 보건 예방 조치 확인하기 : 6.1 사용되는 생물학적 물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예방 접종이 가능한지, 어떤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무적인 직업 건강 검진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2 그 밖에 어떤 안전 조치를 제공하거나 마련해야 합니까? (예: 폐쇄성 보호 장갑을 하루 2시간 이상 착용하는 경우).	
7. 생물학적 물질의 올바른 보관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8. 모든 직원, 신규 교육생, 학사 및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물질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급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9. 필요한 운영 지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직원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10.1 위험 그룹 2의 생물학적 작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은 공간 및 인력 측면에서 다른 작업과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어떻게 확인합니까?	
10.2 실험실 공간에 어떤 기술적 공기 교환 장치가 제공되거나 사용 가능한가요?	
10.3 미생물학적 안전 조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10.4 모든 폐기물이 적절하게 고압 멸균 처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10.5 생물학적 물질 또는 인체 조직 샘플의 보관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어떻게 확인합니까?	
10.6 어떤 영역에 생물학적 위험을 표시해야 합니까?	

(3) 브레멘 대학교(Universität Bremen)

○ 브레멘 대학교의 대학 안전 핸드북(Handbuch für Arbeitssicherheit Universität Bremen) 중 1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제1장 개요

1.1 안전 업무 및 담당자

1.2 관련 업무 부서

제2장 긴급 상황 대처

2.1 화재 대응

2.2 응급 처치

2.3 안전 사고

2.4 자동심장충격기(AED)

제3장 위험요인별 안전 대책

3.1 위험 판단

3.2 안전교육 의무

3.3 사무실 및 컴퓨터 작업실의 안전

3.4 사다리 및 디딤대 안전

3.5 모성 보호

3.6 의료 지원

3.7 조직 건강 관리 계획

○ 각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 안전 업무 및 담당자

: 안전 담당자의 업무는 작업 조건과 영역의 평가 및 검사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모든 작업 영역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항의 개선과 통합, 안전 관련 결함의 제거, 시설 및 장비의 계획 및 유지보수, 작업 장비 및 자재의 조달 및 테스트, 작업 매뉴얼의 작성, 운영 지침의 준비, 개인 보호 장비의 선택 및 효과 확인 등의 사용상의 안전 보장 등

: 대학 안전 담당자는 직원 협의회, 장애인 대표 등의 이해관계자, 대학 의료진, 안전 책임자, 기타 안전보건 관계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함. 이들은 직장 내 사고를 조사하고, 보건 및 안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학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함. 이들은 안전 관련 전문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받지 않으며, 대학의 경영진으로부터 대학의 모든 구역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안전 담당자는 대학 경영진이 서면으로 임명하며, 사고, 업무 관련 질병 및 건강 위험을 예방함에 있어 (네 개의 눈은 두 개 이상의 것을 본다)는 motto 하에 대학 경영진, 관리자, 산업안전 전문가, 대학 의료진을 지원함. 대학 안전 책임자는 정기적인 교육 및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 사회적, 방법론적 기술을 향상함.

- 1.2 관련 업무 부서

: 다음 부서의 전화번호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함.

: 생물학적 안전, 유해 물질, 방사선 관련 담당자, 폐기물 관리 책임자, 유해 물질 등록 담당관, 화재 방지 책임자, 대학 의료 담당자, 직원 협의회, 여성 대표, 중증 장애인 담당자, 브레멘 대학 사회 상담부, 차별 및 폭력 방지 센터, 전문성 및 갈등 상담, 중독 예방 센터, 학생 심리 상담 센터, 브레멘 학생 연합, 소재지 경찰서 등.

- 2.1 화재 대응

: 화재 예방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화재 진압을 위한 전제 조건임. 화재 예방은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의미함. 브레멘 대학교는 화재 예방 규정에서 모든 조직적, 기술적 화재 예방 조치를 규정하며, 소방 안전 책임자의 업무를 “북방 화재예방계획 제공업체에 할당함. 업체는 건축 및 개조 조치에 관여하고 대학 경영진 및 대학 안전 부서와 함께 조직적 화재 안전을 기획함.

: 브레멘 대학의 경영진은 화재 안전을 지원하는 소방 안전 보조원을 임명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 부서장은 대학이 교직원 이외에 학생들도 재학하며 상주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인 직원의 10%를 해당 구역의 소방 안전 보조원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음.

: 화재 발생 시 소방 안전 보조원은 대피 대상자(교직원, 방문자, 학생)에게 대피를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의 대피를 지원함. 권한은 소방 안전 보조원의 배치 구역과 즉각적인 대피 상황에 제한함.

- 2.2 응급 처치

: 브레멘 대학의 모든 직원은 응급 처치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사로 임명됨. 응급처치사의 명단과 응급 처치실의 위치는 대학 건물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된 비상 알림에 기재함.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응급 처치자, 응급 처치실 및 비상 호출 시트의 내용에 대해 안내함. 응급처치사는 생명에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훈련된 일반인을 의미함.

: 응급 처치에 사용되는 구급함의 조달 및 유지 관리와 구급실 관리는 각 부서 및 기타 모든 부서 단위의 책임임. 위험 평가에 따라 기본 응급 처치 장비 외에 추가 응급 처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비치해야 함. 응급 처치 재료(DIN 13157 및 DIN 13169)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주문함.

- 2.3 안전 사고

: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반드시 보고되어야 함. 대학의 소속 구분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짐. 공무원의 경우 업무 관련 사고에 대해 상사에게 알려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21번 부서를 통해 대학 행정부에 보고해야 함. 사고 보고 양식은 21번 부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21과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

: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상사에게 안전 사고에 대해 보고해야 함. 직원은 <직원 및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고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상사의 서명을 받은 후 사고 보고서를 02번 부서로 전달함. 공무원 및 학생이 아닌 직원은 법정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사고 부상으로 인해 사고 당일 이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치료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치료 또는 보조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고로 인해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상해 보험 의사와 상담해야 할 의무를 지님.

: 학생의 경우 <학생용 사고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학과장의 서명을 받음. 부서장은 사고 보고서를 02번 부서로 전달하며, 이후 브레멘 자유 한자 시 사고 보험 기금에 통보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짐. 통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은 <통학 중 사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사고 보고서와 함께 제출함.

- 2.4 자동심장충격기(AED)

: 호흡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면 응급 구조대에 알리고 즉시 심장 마사지를 시작해야 함. 건물이나 근처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 다른 구조자가 가져와 즉시 사용하도록 함. AED는 일반인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음성 안내와 함께 사용법이 설명되어 있음. 캠퍼스에서 사용

되는 AED는 일반적으로 다국어 사용 설명서가 있음.

: 다음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음: 체육관 장비 대여실, NW1 S 1240, AG 카민스키, NW1, IUP, U2115호실 앞, IMSAS, O 2090호실 앞, NW2, 블록 B로 통하는 통로, 에너지 센터, Geo 건물 1층 1190호실 앞, Marum 건물 0200호, SFG건물 3060호실, GW1 건물 1층, GW2 건물 특별실 옆, SuUB 건물 셀프 체크 아웃 시스템 근처, Ecotec 5 건물 E 입구 E, Glashalle 건물 총학생회 입구 인근 등.

- 3.1 위험 판단

: 위험 판단은 대학 안전의 핵심 요소이며 작업 과정과 작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계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함. 모든 법적 근거는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식별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출하는 데 기반함.

: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업무와 학업 중 사고 및 건강 위험을 최소화(작업 조건을 평가하여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하고, 대학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책임자와 교직원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임.

: 위험 평가는 다음의 7단계로 구성됨: (1)활동 정의, (2) 위험 요소 결정, (3) 위험 평가, (4) 구체적인 안전 조치 정의, (5) 안전 조치의 실천, (6) 조치의 효과 확인, (7) 위험 평가 개선

: 대학 안전의 핵심 요소인 위험 평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대학의 경영진은 위험 평가의 실천을 감시할 책임을 지님. 각 부서의 관리자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을 지님. 관리자가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안전 전문가 또는 대학 의료 서비스의 조언을 구할 의무가 있음. 교직원은 위험성 평가 준비에 협조함.

- 3.2 안전 교육 의무

: 브레멘 대학의 각 학과장은 교직원과 학생의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님. 교직원과 학생들은 직업 생활과 학업 중 발생하는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교육은 위임할 수 있으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학과장에게 있음. 예를 들어, 교육은 일반적인 부서 회의나 팀 회의에 통합될 수 있고, 위험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교육 시기는 특정 업무의 시작 전, 이후 최소 1년에 한 번, 업무 영역에 변화가 있는 경우(예: 새로운 장비 또는 유해 물질의 도입, 활동 변경 등)임. 교육은 직원과 학생의 활동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두로 실시되어야 함.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외국어로도 실시해야 함.

: 교육 주제는 위험 판단의 결과에서 도출함. 업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이 교육 주제가 될 수 있음. 안전사고의 가능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지침에 포함시켜야 함.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로 작성된 업무 지침은 업무 도구 및 장비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책임자가 서면으로 제공함. 유해 물질, 기기 작동, 비상시 대책, 폐기물, 청소, 소독 및 유지보수, 서비스 및 수리 시의 업무 규칙이 포함됨.

: 교육은 실제 시연, 실습 및 업무 관련 성과 검토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함. 교육 내용 및 참여 여부는 확인 양식에 문서화해야 하고, 교육 증명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함.

- 3.3 사무실 및 컴퓨터 작업실의 안전

: 사무실 및 컴퓨터 활용 책상은 신체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체공학적으로 조정된 것이어야 함. 업무 공간은 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사무실 및 컴퓨터 활용 책상의 위험 판단을 수행하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이며, 이는 업무로 타인에 위임할 수 있음. 사무 업무 환경의 지원과 자체 평가에는 <DGUV 정보집 215-410>을 참고할 것을 권장함.

: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직업 건강 검진 프로그램인 <VDU work - G37>을 제공함.

- 3.4 사다리 및 디딤대 안전

: 사다리와 디딤대의 적절한 사용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사고 없는 업무 환경을 보장함. 관리자는 적합하고 테스트를 거친 사다리와 계단을 제공할 책임을 지니며, 사다리와 디딤판이 적절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

해 정기적으로 검사(육안 및 기능 검사)를 실시할 책임을 지님.

: 개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매번 사다리와 디딤판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

: 사다리와 디딤판 검사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확인할 것: 사다리와 디딤판이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가? 사다리는 사용 전에 육안으로 검사했는가? 안전한 설치를 위한 준비를 취했는가? 단일 사다리의 정확한 경사각이 준수되는가? 설치하려는 공간의 지반이 충분히 안정적인가? 사다리가 미끄러짐, 넘어짐을 방지하도록 고정되어 있는가? 사다리와 디딤판을 옮길 때 적절한 용기가 있는가? 사용자는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는가? 사다리는 단기간의 임시적인 작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가?

- 3.5 모성 보호

: 모성 보호법 개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됨. 브레멘 대학교의 구성원인 모든 임산부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자 및 제2부서에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함. 모성 보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학과장은 모성 보호를 위한 위험 판단을 수행함.

: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위험 판단을 재실시하고, 해당 교직원 또는 학생과 상의해야 함. 그 결과에 따라 활동에 대한 모든 조정,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여타의 직업적 불이익은 보상받아야 함.

: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학생은 브레멘 대학교 가족 서비스 사무실에 문의하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시작하게 됨. 실습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은 <소방 안전 교육>을 수강한 후 실험 실습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임신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 3.6 의료 지원

: 교직원의 건강 검진은 예방 조치로 직업 건강 검진에 관한 조례 (ArbMedVV)에 따라 직업병을 포함한 업무 관련 질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브레멘 대학은 교직원을 위한 건강 검진을 외부 의료 서비스에 위탁함.

: 건강 검진은 필수 검진과 선택 검진이 있으며, 필수 검진은 업무의 필수 요건이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함. 선택 검진은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함.

: 방사능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는 경우, 법에 따라 매년 방사선 방호 검사를 받아야 함. 대학의 관리자는 위험 평가에 따라 필요한 산업 보건 검진을 실시하거나 직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음. 검진 후 직원과 고용주에게 건강검진 증명서가 발급됨.

- 3.7 조직 건강 관리 계획

: 브레멘 대학의 조직 건강 관리 계획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사고 예방 측면에서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업무와 성과, 동기 부여 및 직무 만족도를 지원하고 개선하는 것임.

: 브레멘 대학은 조직 건강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안전 보건 관리자 직책을 신설함. 안전 보건 관리자는 안전 보건 관리를 조정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새로운 산업보건 관리 프로젝트는 보건 관리자가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함. 이는 브레멘 주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직장 건강 증진 지침에 기반.

(4) 독일 대학안전관리의 특징 및 시사점

○ 첫째, 연구 공간으로서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 다수 제시되어 있음.

- 대학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유해 물질(Gefahrstoffe)과 생물학적 물질(Biostoffe)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됨. 독일 대학의 안전관리 사례는 이러한 유해 물질의 보관, 취급, 대장 작성, 점검 체크리스트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사고의 발생 이후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물론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 유해 물질과 생물학적 물질의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의 경우 안전 여부의 기계적 확인에 머물지 않고 담당자가 해당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묻고 있음. 이는 안전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제가 되고 있음.

-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에서 안전사고의 <연구실 사고>는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 등의 13개 사고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나 각각의 사고 유형이나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p. 26, 27). 연구와 관련하여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별 예방,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있어 독일의 문건 사료를 참고할 수 있음.

○ 둘째, 심리·정서적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항목이 존재하고 있음.

- 학업 관련 어려움 및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하고 있음. 대학 구성원이 갖는 심리·정서적 특수성은 청년기에 있는 학생의 학업 부담임, 시험에 대한 공포감, 학업 자체의 어려움, 학업 동기의 부족, 스트레스 대처, 급성 위기, 자존감 문제, 가족에 대한 부담감, 이성 관계 문제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감, 불안 장애, 섭식 장애, 중독 문제, 통증 장애 나아가 자살 시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심리·정서적 위험에 대한 예방을 대학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함.

○ 셋째,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 성평등 및 모성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차별, 성희롱, 스토킹 등의 젠더 갈등을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함. 국내 대학에서 성희롱과 관련 살인 사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내용을 대학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모성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임신부와 모유 수유자에 대한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활동의 제한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의 담당자, 학과장 등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지원과 배려를 할 수 있음.

○ 넷째,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사무실과 컴퓨터 활용 책상은 대학에서 일반적인 업무 환경임. 독일의 대학에서는 인체공학적 설계의 사무 가구를 비치함으로써 장시간 업무로 인한 간접적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 사다리과 디딤판은 건물이나 설비의 수리 등에 흔히 사용되는 기구로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독일의 대학안전 핸드북은 이러한 기구의 정기적인 기능 점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상의 유의점을 안내함으로써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함.

○ 다섯째, 독일 또는 유럽 사회의 특수성에 기반한 위험을 대비하고 있음.

- 독일 또는 유럽 사회에서 발생하는 살인 광란(Amok), 폭탄 설치 위협 등의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처에 대한 안내 및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대학안전관리계획에 기재함.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흔하지 않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 여섯째, 안전 담당자의 책임 소자와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음.

- 대학에서 특정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기재함. 이는 책임 여부를 분명히 하여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학안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나 안전 조치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

V.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선 방안

1.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 내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 조정

(1)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 통합

- 기존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중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은 총 11개의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자연재난, 사회재난, 대학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연구실 사고, 감염병 확산, 일반범죄, 성범죄, 산업재해, 중대재해, 비상사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대학의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운용 담당자는 11개 유형별로 각각의 세부 항목들(피해현황, 원인분석,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등)의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함.
- 이로 인해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커다란 업무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질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 각 대학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의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의 통합안은 다음과 같음.
 - : ‘2. 안전사고’ 내 대학 안전사고와 교육시설 안전사고 부분 통합
 -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부분 통합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통합안)

1. 재난

- ① 자연재난
- ② 사회재난

2. 안전사고

- ①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 ③ 연구실사고

3. 감염병 확산

-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 범죄

- ① 일반범죄
- ② 성범죄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② ~~중대재해~~

6. 기타

-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 기존 11개 유형에서 2개 유형을 통합하여 총 9개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으로 간소화

: ① 자연재난, ② 사회재난, ③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④ 연구실사고, ⑤ 감염병 확산, ⑥ 일반범죄, ⑦ 성범죄, ⑧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⑨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2)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 삭제

- 기존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내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 내 11개(통합 후 9개)의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 중에서, 현재 대학 안전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각 대학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운용 담당자와의 업무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세부 유형이 존재함.
- 각 대학의 대학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은 업무 중요도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에 대한 각각의 세부 항목들(피해현황, 원인분석,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모두 작성해야 함.
- 이로 인해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에 커다란 업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 대학별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 내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 중 대학 안전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세부 유형을 삭제하고, 오늘날의 대학 현실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세부 유형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재난 및 사고 세부 유형 삭제안은 다음과 같음.

- ① 감염병 확산: 2023년 5월 11일 정부에 의해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코로나-19 종식)가 선언된 이후, 현재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감염병 관련 업무는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운용 담당자가 아닌, 주로 각 대학의 보건 관련 부서(보건소 등)에서 담당하고 있어 대학 안전관리 업무와의 연관성도 다소 떨어짐.
- ②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접경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상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임. 또한 비상사태 관련

업무는 대학안전관리계획 담당자가 아닌, 주로 각 대학의 군 관련 부서(예비군 연대 등)에서 담당하고 있어 대학 안전관리 업무와의 연관성도 다소 떨어짐.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통합안 및 삭제안)

1. 재난

- ① 자연재난
- ② 사회재난

2. 안전사고

- ①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 ③ 연구실 사고

3. ~~감염병 확산~~

-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 범죄

- ① 일반범죄
- ② 성범죄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② ~~중대재해~~

6. 기타

- ① ~~비상사태(전서, 침투·도발 등)~~

※ 정리: 기존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에서는, 오늘날 대학 안전관리 업무와의 관련성이 다소 낮은 감염병 확산과 비상사태 등 총 2가지의 재난 및 사고 유형을 삭제하고, 안전 관리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① 자연재난, ② 사회재난, ③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④ 연구실 사고, ⑤ 일반범죄, ⑥ 성범죄, ⑦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등 총 7가지의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개선안 1)

1. 재난

- ① 자연재난
- ② 사회재난

2. 안전사고

- ①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 ② 연구실 사고

3. 범죄

- ① 일반범죄
- ② 성범죄

4.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5. 기타: 대학별 자율 기술)

2.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시후조치’ 부분 내 세부 항목 예시 서식 및 내용 변경

○ 기존 대학안전관리 II장 내 각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피해현황
- 원인분석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총 6가지의 세부 항목 중에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등 2가지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세부 항목의 예시 서식 및 내용(예시 양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1) 피해현황 부분 예시 서식 변경

○ 기존 피해현황 예시 서식은 다음과 같음.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예시 서식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2	3	2	3	2	2	
재산피해(백만원)	5	5	4	5	4	4	
인명피해	사망(실종)	2	1	2	1	2	1
	부상	3	4	3	4	3	4
	계	5	5	5	5	5	5

- 고등교육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대학안전관리계획은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때 상세한 피해 현황은 재난 및 사고 예방 및 관리 계획 작성 시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 피해 현황 데이터 자체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럼에도 기존 피해현황 예시 서식은 연도별(최근 5년 간) 각각의 재난 및 사고 발생 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등 피해 현황에 대한 상세한 피해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음.
- : 이로 인해, 대학별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운용 담당자들은 재난 및 사고의 상세한 피해 데이터를 타 부서로부터 수합 및 정리하는 데 커다란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각 대학에서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표와 같은 특정한 양식 없이 각 대학에서 피해 현황 부분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피해현황 예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해현황 (예시안 1-1)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현황(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을 기술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예시 서식

- 00 재난/사고
 - 피해 일시:
 - 피해 장소:
 - 피해 상황(가능할 시 사진 활용):
 -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

(2)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부분 통합

○ 기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예시 내용(자연 재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예시 내용 ☞

- 00소방서, 00경찰서 및 00지자체 합동조사 결과
 - 태풍 '000'의 내습에 따른 초속00m/s의 강풍과 00mm/h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주요원인으로 연도별 피해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예시 내용(1) ☞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기존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는 원인분석과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부분이 서로 구분되어 있어, 재난 및 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간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져 있음.
-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 부분을 서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내 재발방지 대책의 예시 내용은 각 대학에서 발생했던 구체적인 재난 및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과는 무관한 매우 포괄적인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음.

: 각 대학에서 기존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예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

○ 재발방지 대책의 예시 내용을 삭제하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부분을 통합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예시 서식은 다음과 같음.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예시안 1-2]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일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예시 서식

○ 00 재난/사고

- 원인 분석(대학 자체 조사 결과 또는 관련 기관 조사 결과):
- (대학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

○ 피해현황,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예시안 2]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현황(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 피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일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예시 서식

○ 00 재난/사고

- 피해 일시:
- 피해 장소:
- 피해 상황(사진 첨부 권고):
-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 원인 분석(대학 자체 조사 결과 또는 관련 기관 조사 결과):
- (대학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

(3) 대학별 재난 및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항목 신설

- 기존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내에서는 각 재난 및 사고별 피해현황, 원인분석,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순으로 세부 항목이 구성되어 있음. 즉 각 대학에서 특정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 그 피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순서대로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세부 항목이 구성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각 대학에서 특정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작성을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 : 본 연구의 II장에서 실시한 대학안전관리계획 실태 분석 결과,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제시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예시 내용이 대학별 대학안전관리계획에서 그대로 활용된 경우가 상당수임.
 - : 특히 재난 및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각 대학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 제시된 경우가 거의 없어,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운용의 기본 취지를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적인 활동 계획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 이때 각 대학에서 재난 및 사고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대학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통해 예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체크리스트 방식의 예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안전관리계획 담당자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음.
-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작성 예시(자연재난 기준)는 다음과 같음.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예시 서식 ☞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학교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교내 자연 재난 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교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교내 자연재난 취약시설 파악 및 수시 안전점검	
교내 자연재난 취약시설 보수 및 보강	
재난 피해 예방 대피로 및 대피집결지 점검 및 보수	
자연재난 피해 예방 관련 교육(교직원 및 학생 대상)	
재난대응훈련(대피 훈련 등)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내 홍보활동 (재난 예방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기타 대학 자체 위기관리 활동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던 위기관리 활동 내역 중 주요 사항(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활동 시 소요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기술

예시 서식 ☞

- 교내 자연재난 취약시설 파악 및 수시 안전점검
 - 교내 자연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일시 및 장소:
 - 안전점검 결과:
 - 안전점검 이후 후속조치 계획:
 - 안전점검 시 소요 예산 등:

○ 추가적으로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던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및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각 대학의 자체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음

(4)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항목 삭제

○ 기존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예시 서식은 다음과 같음.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예시 서식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사업	10	10	10	30	
○○○사업	10	10	10	30	
○○○사업	10	10	10	30	
○○○사업	10	10	10	30	
계	40	40	40	120	

-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통해, 재난 및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 대학에서 시행했던(또는 시행 예정 중인) 사업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등 예산 관련 데이터가 연도별로 구분되어서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함.
- 예산 규모는 안전관리를 위한 각 대학의 노력을 추상적으로 보여줄 뿐, 상세한 예산 규모 데이터 자체가 대학안전관리계획 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럼에도 각 대학의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운용 담당자들은 상세한 예산 관련 데이터를 타 부서로부터 수합 및 정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커다란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항목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서 삭제하고, 각 대학이 신설된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항목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리: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 중, 기존 6개 세부 항목에서 3개 항목(피해현황, 원인분석,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을 1개 항목으로 통합하고, 1개 항목(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을 신설하며, 1개 항목(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을 삭제하여 총 4개의 세부항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개선안 2)

1. 재난

① 자연재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존과 동일)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기존과 동일)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1개 항목으로 통합)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신설)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삭제)~~

② 사회재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2. 안전사고

①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상동)

② 연구실 사고(상동)

3. 범죄

① 일반범죄(상동)

② 성범죄(상동)

4.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상동)

(5. 기타: 대학별 자율 기술)

3.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부분 수정

(1) Ⅳ장 삭제 후 Ⅱ장과 Ⅳ장의 내용 통합

○ 기존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의 ‘Ⅱ.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과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Ⅱ.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① 자연재난, ② 사회재난)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③ 연구실사고)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4. 범죄 (① 일반범죄, ② 성범죄)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② 중대재해) 6. 기타 (① 비상사태)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4. 연구실 안전교육 5. 감염병 예방교육 6. 성범죄 예방교육 7. 비상대비 교육훈련

○ Ⅳ장과 Ⅱ장의 내용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Ⅳ 장	Ⅱ 장
Ⅳ-1. 재난안전훈련	Ⅱ-1. 재난 (① 자연재난, ② 사회재난)
Ⅳ-2. 대학안전사고 예방 교육	Ⅱ-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IV-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II-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② 중대재해)
IV-4. 연구실 안전교육	II-2. 안전사고 (③ 연구실사고)
IV-5. 감염병 예방교육	II-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IV-6. 성범죄 예방교육	II-4. 범죄 (② 성범죄)
IV-7. 비상대비 교육훈련	II-6. 기타 (① 비상사태)

○ 이러한 IV장과 II장 간의 긴밀한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학안전관리 계획 내에서는 II장과 IV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II장과 IV장의 각 내용 간 연계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임.

: II장에서 제시된 피해현황, 원인분석,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체크리스트 및 세부 활동 주요 내역에 이어서, 곧바로 각각의 재난 및 사고와 관련된 안전교육·훈련 계획이 제시되어야 각 세부 항목 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부각될 수 있음.

○ 따라서 IV장의 내용이 II장의 내용 안에 포함되도록, IV장을 삭제하고 II장에 IV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II장과 IV장의 통합안은 다음과 같음.

<p>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예시-자연재난)</p> <p>1. 재난</p> <p>① 자연재난</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및 담당자</p> <p><input type="checkbox"/> 재난유형별 위험요인</p> <p><input type="checkbox"/>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p> <p><input type="checkbox"/>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p> <p><input type="checkbox"/> <u>안전교육·훈련 계획 (신설)</u></p>
<p>IV. 안전인식 재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삭제)</p> <p>1. 재난안전훈련 (삭제)</p>

(2) IV장의 세부 항목 예시 서식 변경

- IV장 내 각각의 안전교육·훈련 유형별 기존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음.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총 3가지의 세부 항목 중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2가지 세부 항목의 예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기존 2023년 교육·훈련 결과 및 2024년 교육·훈련 계획 예시 서식(재난안전훈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2023년 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i>학생</i>				
<i>교직원</i>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i>대학 재난안전훈련</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2024년 교육·훈련 계획

예시 서식 ⇨

※ 금년도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방향 및 계획에 대해 기술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교직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전년도(2023년) 교육·훈련 결과는 이미 시행했던 교육·훈련 결과의 제시를 목적으로 삼는 만큼 가급적 간략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예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반면 금년도(2024년) 교육·훈련 계획은 앞으로 시행할 교육·훈련 계획의 제시를 목적으로 삼는 만큼 더욱 상세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예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전년도(2023년) 교육·훈련 결과 부분은, 하나의 표를 통해 교육·훈련 날짜(시간)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내용, 기타 항목 등 교육·훈련 결과만 간략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예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표 하나로 예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전년도(2023년) 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 안전교육·훈련 결과 (예시안 1-1)

예시 서식 ⇨

※ 전년도 안전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교육·훈련 명	교육·훈련 날짜(시간)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기타 (소요 예산 등)

- 금년도(2024년) 교육·훈련 계획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교육·훈련 일시 및 시간, 장소, 대상 및 인원, 목적 및 주요 내용, 기타(소요 예산 등)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기존 표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금년도(2024년) 교육·훈련 결과 계획 예시 서식은 다음과 같음.

○ **금년도 안전교육·훈련 계획 (예시안 1-2)**

※ 각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안전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장소, 대상,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기술

예시 내용 ⇨

- **00 안전교육·훈련**
 - 교육·훈련 일시 및 시간:
 - 교육·훈련 장소:
 -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 교육·훈련 목적 및 주요 내용:
 - 기타(소요 예산 등):

※ 정리: 대학안전관리계획 내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교육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항목을 II.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부분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3개 세부 항목 중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항목을 삭제하고, 전년도(2023년) 교육·훈련 결과와 금년도(2024)년 교육·훈련 결과의 예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II. 재난·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 및 안전교육·훈련 계획 (개선안 3)

1. 재난

① 자연재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안전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안전교육·훈련 결과
 - 금년도 안전교육·훈련 계획

2. 안전사고

- ①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상동)
- ② 연구실 사고(상동)

3. 범죄

- ① 일반범죄(상동)
- ② 성범죄(상동)

4.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상동)

(5. 기타: 대학별 자율 기술)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VI. 개선방안을 반영한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 본 자료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학교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예시(안)입니다.

❖ 학교에서는 이 예시계획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학교의 고유 환경과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 권고사항

- 효율적인 대학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필요
- 효율적인 계획시행을 위해 예산확보 및 소요 시설·장비·물자 등 확충 필요
- 위험별 상황관리 담당자 및 유관 기관간 협의회 운영 활성화 필요
-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범 례

- 예시 내용 ▶ 세부내용 예시
- 예시 서식 ▶ 실적 집계표, 보고 서식 등의 예시
- 참고자료 ▶ 참고자료

2024. 12.

교 육 부
(교육안전정책과)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1. 목표 및 기본방향
-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① 자연재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안전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안전교육·훈련 결과
 - 금년도 안전교육·훈련 계획

② 사회재난

2. 안전사고

①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② 연구실사고

3. 범죄

① 일반범죄

② 성범죄

4.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5. 기타

목 차

-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I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V.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별도) 》

- 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3)
-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3)
- 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 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 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 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 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4)
- 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9.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3)
- 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 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12.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13.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여성가족부, 2023)
- 1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2)
- 15.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예시 내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예시 내용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예시 내용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예시 서식 ☞

학교명	○○대학교	설립 구분	국립/사립
주소			
전화	000-000-000	FAX	000-000-000 홈페이지
총장	000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000 (직책 :)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예시 서식 ☞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예시 서식 ☞



2 조직체계 현황

예시 내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아래 예시 서식 및 참고자료 참조)

예시 서식

□ 담당부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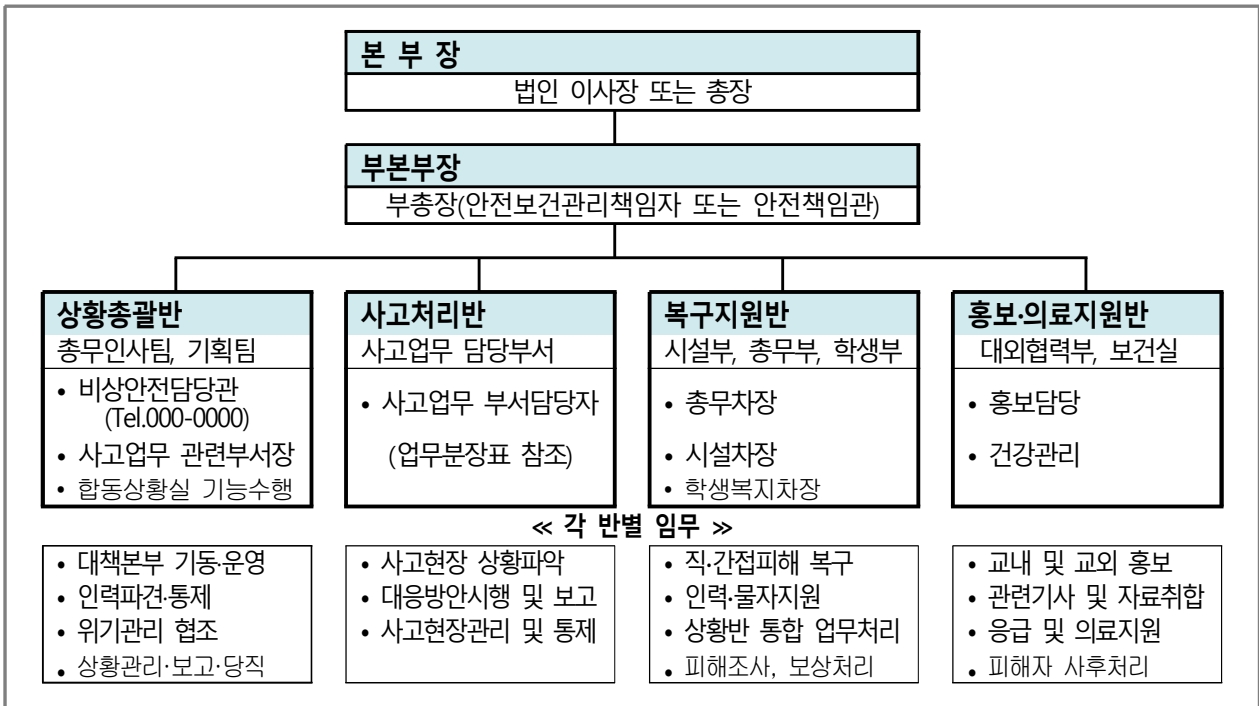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대학본부	관계 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총무과	시설과
	사회재난	총무과	시설과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과	
	연구실 사고	연구지원과	
3. 감염병	교육시설안전	시설과	
	코로나 19	건강과	
4. 범죄	성범죄	학생과	
	일반범죄	학생과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지원과	
6. 기타	비상사태	비상안전담당과	

□ 비상 연락망

예시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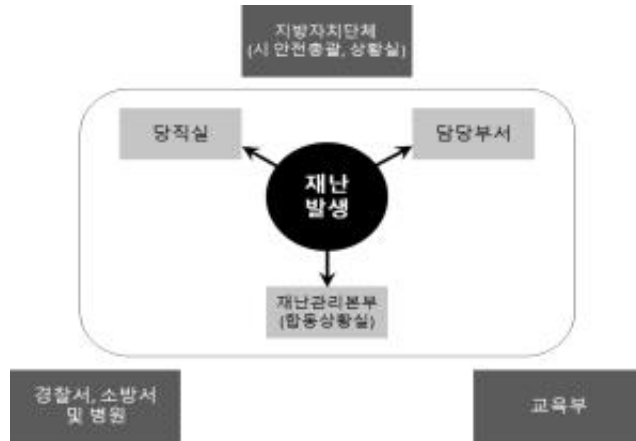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총장실	총장	000	00-000-0000	010-0000-0000
부총장실	부총장	000	00-000-0000	010-0000-0000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입학본부				
대학(학과/부)				
일반대학원				

참고 자료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례



참고 자료 ☞ 비상연락망 구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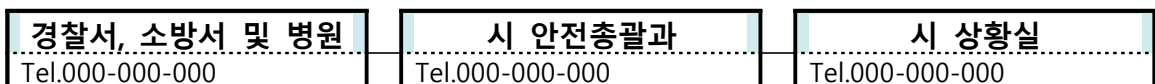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 재난 심각단계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예시 서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팀장					협조부서
팀원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예시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현황(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 피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일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예시 내용

○ 00 재난/사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예시 서식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자연재난 대비 학교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교내 자연 재난 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교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교내 자연재난 취약시설 파악 및 수시 안전점검	
교내 자연재난 취약시설 보수 및 보강	
재난 피해 예방 대피로 및 대피집결지 점검 및 보수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자연재난 피해 예방 관련 교육	
재난대응훈련 (지진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대피 훈련 등)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내 홍보활동 (재난 예방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기타 대학 자체 자연 재난 대비 위기관리 활동	

참고 자료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교육부, 2024)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교육부, 2024)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교육부, 2023)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던 위기관리 활동 내역 중 주요 사항(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활동 시 소요 예산 등)을 상세하게 기술
-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연 재난 피해 방지 매뉴얼(홍수 피해 방지 매뉴얼 등) 첨부

예시 내용

○ 교내 자연재난 취약시설 파악 및 수시 안전점검	
안전점검 일시 및 장소	
안전점검 내용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계획	
기타(소요 예산 등)	

□ 안전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자연재난 대비 안전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전년도 자연재난 대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교육·훈련 명	교육·훈련 날짜(시간)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기타 (소요 예산 등)

○ 금년도 자연재난 대비 안전교육·훈련 계획

※ 각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자연재난 대비 안전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장소, 대상,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

예시 내용

○ 00 안전교육·훈련	
교육·훈련 일시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교육·훈련 주요 내용	
기타(소요 예산 등)	

2 사회재난

예시 서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팀장					협조부서
팀원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예시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현황(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 피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일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예시 내용

○ 00 재난/사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예시 서식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사회재난 대비 학교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교내 사회 재난 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교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및 기타 화재 취약시설 점검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점검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대피 집결지 점검 및 보수	
교내 건물 정기 안전점검	
붕괴 취약 시설 파악 및 보수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 점검 및 보수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사회재난 피해 예방 관련 교육	
재난대응훈련 (화재 등 사회 재난 발생 시 대피 훈련 등)	
사회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내 홍보활동 (재난 예방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기타 대학 자체 사회 재난 대비 위기관리 활동	

참고 자료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교육부, 2024)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교육부, 2024)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교육부, 2023)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던 위기관리 활동 내역 중 주요 사항(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활동 시 소요 예산 등)을 상세하게 기술
-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회 재난 피해 방지 매뉴얼(화재 방지 피해 매뉴얼 등) 첨부

예시 내용

○ 교내 건물 정기 안전점검	
안전점검 일시 및 장소	
안전점검 내용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계획	
기타(소요 예산 등)	

□ 안전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사회재난 대비 안전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전년도 사회재난 대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교육·훈련 명	교육·훈련 날짜(시간)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기타 (소요 예산 등)

○ 금년도 사회재난 대비 안전교육·훈련 계획

- ※ 각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회재난 대비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장소, 대상,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

예시 내용

○ 00 안전교육·훈련	
교육·훈련 일시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교육·훈련 주요 내용	
기타(소요 예산 등)	

2. 안전사고

①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예시 서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팀장					협조부서
팀원					

□ 위험요인

예시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현황(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 피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일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예시 내용

○ 00 재난/사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예시 서식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교내 대학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교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교내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내도로 유지관리 - 도로 내 장애물 및 시야 방해물 제거 - 도로 내 배수시설 설치 -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 - 적절한 바닥표시 및 안내판 설치 - 충분한 밝기의 조명 설치 - 경사 도로 내 미끄럼방지 및 과속방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 적절한 규정속도 마련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 등	
대학 생활 안전 확보 - 교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 체육시설, 운동 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내 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예시 서식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규모 행사 계획 수립 시 「행사 안전계획서」 작성 후 제출 - 행사 시설 사전 안전점검 - 행사와 관련한 서비스 업체 상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비상 탈출구, 화재경보기 확인 및 비상 집합장소 지정 - 행사 장소 내 안전요원 및 의료진 배치 등	
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 행사 전 답사 실시 (행사 장소 사전 안전 점검) -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 이동 수단 안전 확인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집단연수에 대한 보험 가입 확인 (별도 보험 가입 검토) - 참가 학생에 대한 사전 사고 예방교육 실시 -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교직원 동행 필수 -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등	
현장실습 안전 확보 - 현장실습 이전 안전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 - 현장실습 참여 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활동 실시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예방 -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 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기회 제공	
대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매뉴얼 작성 및 운용	
교육시설안전 인증 적기에 취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 실시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 평가 실시	
교직원 및 학생 대상 대학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대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내 홍보활동 (재난 예방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기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 자체 위기관리 활동	

참고 자료

-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교육부, 2024)
-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교육부, 2024)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교육부, 2023)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3)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던 위기관리 활동 내역 중 주요 사항(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활동 시 소요 예산 등)을 상세하게 기술
-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대학 안전 관리 매뉴얼(대규모 행사 매뉴얼, 학생 집단 연수 운영 매뉴얼 등) 첨부

예시 내용 ▣

○ 교내 도로 유지 관리	
유지 관리 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내용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기타(소요 예산 등)	

□ 안전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 전년도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교육·훈련 명	교육·훈련 날짜(시간)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기타 (소요 예산 등)

○ 금년도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계획

※ 각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장소, 대상,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

예시 내용 ▣

○ 00 안전교육·훈련	
교육·훈련 일시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교육·훈련 주요 내용	
기타(소요 예산 등)	

2 연구실사고 ※ 연구실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별도 관리 시 주요사항 요약작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예시 서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팀장					협조부서
팀원					

□ 위험요인

예시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현황(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 피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일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예시 내용

○ 00 재난/사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예시 서식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연구실 사고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교내 연구실 사고 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교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누출·접촉·화재·폭발 등) 예방 활동 실시 -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 다량의 인화물질 보관을 위한 별도 장소 마련 등	
가스 관련 사고(가연성 가스 누출·폭발, 독성 가스 누출 등) 예방 활동 실시 - 가스용기 옥외장소(실린더 캐비닛 내) 설치 - 가스설비, 가스 배관 및 가스누출경보장치의 주기적 점검 - 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 호흡용 보호구 비치 및 관리 등	
기계분야 사고(끼임 및 절단 등) 예방 활동 실시 - 기계 안전장치(방호 덮개, 비상 정지 장치 등) 설치 및 점검 - 기계별 방호조치 수립 - 기계 사용 시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시 서식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p>전기 관련 사고(감전, 전기화재 등) 예방 활동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표지 부착 -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 전기기기 사용 시 접지 의무화 - 개인보호구 보유 및 착용 의무화 - 누전차단기 등 보호 장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자동심장제세동기 비치 및 관리 -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 전열기 근처 가연물 방치 금지 - 결함이 있는 전기설비 전문가에게 즉시 수리 의뢰 또는 교체 	
<p>생물분야 사고(병원성 물질 유출, 동물 물림 등) 예방 활동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에 승인 받은 자만 출입 및 출입문을 항상 닫아둠 - 연구실 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 구비 -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체계 구축 - 생물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확인 - 생물실험 시설 주변에 대한 소독 등 감염방지 대책 시행 - 생물 실험 후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적정한 폐기 대책 수립 - 생물 실험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 검진 조치 등 	
<p>화상, 상처 및 출혈 사고 예방 활동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 연구실 내 고온, 저온 발생장치에 대한 수시 점검 - 전문병원 연락처 확보 등 	
<p>유해광선 접촉 사고 예방 활동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의 격리 및 차폐 - 차광보호구 구입, 비치 및 차광 장치 설치 - 실험 중 차광보호구 착용 의무화 - 차광, 차폐장치 이상 여부 수시 점검 등 	
<p>교직원 및 학생 대상 연구실 안전 교육</p>	
<p>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내 홍보활동 (재난 예방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p>	
<p>기타 대학 자체 연구실 사고 예방 위기관리 활동</p>	

참고 자료

-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교육부, 2024)
-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교육부, 2024)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교육부, 2023)
-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던 위기관리 활동 내역 중 주요 사항(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활동 시 소요 예산 등)을 상세하게 기술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연구실 사고 예방 매뉴얼 첨부

예시 내용 ▷

○ 전기 관련 사고 예방 활동	
사고 예방 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내용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기타(소요 예산 등)	

□ 안전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연구실 사고 예방 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 전년도 연구실 사고 예방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교육·훈련 명	교육·훈련 날짜(시간)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기타 (소요 예산 등)

○ 금년도 연구실 사고 예방 교육·훈련 계획

※ 각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연구실 사고 예방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장소, 대상,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

예시 내용 ▷

○ 00 안전교육·훈련	
교육·훈련 일시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교육·훈련 주요 내용	
기타(소요 예산 등)	

3.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 서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팀장					협조부서
팀원					

□ 위험요인

예시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현황(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 피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일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예시 내용

○ 00 재난/사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예시 서식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일반범죄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일반범죄 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범죄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교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활동 강화 -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외부인 교내 출입 철저한 관리 - 교내 일반범죄 취약지역 파악 및 개선 - 교내 CCTV,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 - 야간 시간 교육시설 개방 및 접근 철저한 관리 등	
교내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대한 규제 대책 마련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상시 운용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교직원 및 학생 대상 범죄 예방 교육	
일반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홍보활동 (일반범죄 예방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기타 대학 자체 일반범죄 피해 예방 위기관리 활동	

참고 자료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교육부, 2024)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던 위기관리 활동 내역 중 주요 사항(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활동 시 소요 예산 등)을 상세하게 기술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일반범죄 예방 매뉴얼 첨부

예시 내용

○ 교내 일반범죄 취약시설 점검	
점검 활동 일시 및 장소	
점검 활동 내용	
점검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기타(소요 예산 등)	

□ 안전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일반범죄 예방 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전년도 일반범죄 예방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교육·훈련 명	교육·훈련 날짜(시간)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기타 (소요 예산 등)

○ 금년도 일반범죄 예방 교육·훈련 계획

※ 각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일반범죄 예방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장소, 대상,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

예시 내용

○ 00 안전교육·훈련	
교육·훈련 일시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교육·훈련 주요 내용	
기타(소요 예산 등)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예시 서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팀장					협조부서
팀원					

□ 위험요인

예시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현황(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 피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일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예시 내용 ☞

○ 00 재난/사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예시 서식 ☞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성범죄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인권센터 등 교내 성범죄 사건 전담기관 운영 (범죄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교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외부인 교내 출입 철저한 관리 - 교내 성범죄 취약지역 파악 및 개선 - 교내 CCTV,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 - 야간 시간 교육시설 개방 및 접근 철저한 관리 등 	
성범죄 발생 시 사건 처리를 위한 대학 자체 매뉴얼 제정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홍보활동 (성범죄 예방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기타 대학 자체 성범죄 피해 예방 위기관리 활동	

참고 자료 ☞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교육부, 202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교육부, 2023)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던 위기관리 활동 내역 중 주요 사항(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활동 시 소요 예산 등)을 상세하게 기술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성범죄 예방 매뉴얼 첨부

예시 내용

○ 교내 성범죄 취약시설 점검	
점검 활동 일시 및 장소	
점검 활동 내용	
점검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기타(소요 예산 등)	

□ 안전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성범죄 예방 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전년도 성범죄 예방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교육·훈련 명	교육·훈련 날짜(시간)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기타 (소요 예산 등)

○ 금년도 성범죄 예방 교육·훈련 계획

※ 각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성범죄 예방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장소, 대상,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

예시 내용

○ 00 안전교육·훈련	
교육·훈련 일시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교육·훈련 주요 내용	
기타(소요 예산 등)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예시 서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팀장					협조부서
팀원					

□ 위험요인

예시 내용 ☞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최근 5년간 교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현황(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등), 피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일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예시 내용

○ 00 재난/사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및 주요 활동 내역

○ 대학별 위기관리 활동 내역 체크리스트

예시 서식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교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작업환경 상시 점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상시 확인 -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통한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등) 노출수준 확인 - 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통한 직업병 발생 예방 	
안전시설 및 보호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된 위험의 종류를 파악한 후 적절한 보호구 선정·지급 -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 상시 파악 -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 관리 실시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산업재해 통계기록 관리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예시 서식

위기관리 활동 내역	실시 여부 (✓)
안전보건에 관한 대학종사자 의견 상시 청취 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	
대학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내 홍보활동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기타 대학 자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위기관리 활동	

참고 자료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교육부, 2024)
2023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 (교육부, 2023)

○ 대학별 위기관리 주요 활동 내역

- ※ 각 대학에서 시행하였던 위기관리 활동 내역 중 주요 사항(활동 일시 및 장소,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활동 시 소요 예산 등)을 상세하게 기술
-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첨부

예시 내용

○ 작업환경 상시 점검	
점검 활동 일시 및 장소	
점검 활동 내용	
점검 활동 결과	
후속조치 계획	
기타(소요 예산 등)	

□ 안전교육·훈련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전년도 안전보건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교육·훈련 명	교육·훈련 날짜(시간)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기타 (소요 예산 등)

○ 금년도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훈련 계획

※ 각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안전보건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장소, 대상,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

예시 내용

○ 00 안전교육·훈련	
교육·훈련 일시 및 장소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목적	
교육·훈련 주요 내용	
기타(소요 예산 등)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예시 서식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유·초·중·고	17개 시·도공제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예시 서식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건수	금액	물적 건수	금액	
2022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1-03-01 2022-02-28	5	20,000	100,000	20	50,000	5	35,000	수학여행 담보 외국인학생 담보
2023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2-03-01 2023-02-28	5	20,000	100,000	-	-	-	-	수학여행 담보 외국인학생 담보

□ 보상한도

예시 서식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350,000	2,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2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예시 서식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1-03-01 2022-02-28	5	20,000	100,000	20	50,000	5	35,000	신체손해배 상금 신청
2023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2-03-01 2023-02-28	5	20,000	100,000	-	-	-	-	재난복구비 신청

□ 보상한도

예시 서식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치료비	10,000	1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입원급여	10,000	10,000	
수업료 손실 지원금	한도	1,000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한도	300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예시 서식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1-03-01 2022-02-28	5	20,000	100,000	20	50,000	5	35,000	수학여행 담보 외국인학생 담보
2023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2-03-01 2023-02-28	5	20,000	100,000	-	-	-	-	수학여행 담보 외국인학생 담보

□ 보상한도

예시 서식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치료비	10,000	1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입원급여	10,000	10,000	
수업료 손실 지원금	한도	1,000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한도	300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조직 현황

예시 서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팀장					협조부서
팀원					

□ 지원 내용

예시 서식

구분	추진 내용
OO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구성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I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예시 내용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예시 서식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소방안전본부			재능대응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한국전력공사			
지역 병원			응급실
지역 보건소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예시 서식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소속기관 소속단체,대학(교)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예시 서식 ☞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소방안전본부			재능대응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한국전력공사			
지역 병원			응급실
지역 보건소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예시 서식 ☞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소속기관 소속단체, 대학(교)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예시 서식 ☞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법무부 스마일센터			
검찰			
경찰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해바라기센터			

2) 상황실 운영 시

예시 서식 ☞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소속기관 소속단체, 대학(교)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예시 서식 ☞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소방안전본부			재능대응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한국전력공사			
지역 병원			응급실
지역 보건소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예시 서식 ☞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소속기관 소속단체, 대학(교)

※ 학교별 현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시(안) 외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

1. 역할과 임무

예시 내용 ☞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예시 내용 ☞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예시 내용 ☞

※ BCP 가이드라인 배포('22.)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예시 내용 ☞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 재난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협조부서
	② 사회 재난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협조부서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협조부서
	③ 연구실 사고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협조부서
3. 범죄	① 일반 범죄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협조부서
	② 성범죄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협조부서
4.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협조부서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협조부서
5. 기타		팀장	총무과	사무관	000	044-203-0000, abcdefg@korea.kr	주관부서
		팀원					협조부서
		팀장					
		팀원					